

KP 연구 2020-04

연구
과제
명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and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 system

2
0
2
0
·
1
2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기범

2020.12.

안 내 문


한
국
저
작
권
보
호
원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제 출 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최종본)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 주관연구수행기관명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김기범 교 수 (성균관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형규 교 수 (경찰대학)
- 공동연구원 : 표선영 교 수 (경찰대학)
- 연 구 원 : 박현민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 연 구 원 : 문현지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수행사의 의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KP연구 2020-04	연구기간	2020년 6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정책과제명	(한글)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영문) The study on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and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 system				
연구책임자 (주관연구수행 기관)	김기범 교수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 연구원수	총 5명	연구 용역비	20,000 천원
요약				면수	180면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5가지 대응역량 강화방안 제안 1. (특사경의 위상제고와 직무범위 확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특사경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이 부여된 만큼 주도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사경 직무는 게임산업법의 일부범죄까지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저작권수사 전담조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수사과를 신설하고, 경찰관을 파견 받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사경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 수사에 집중하고, 지역거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처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사·교육·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특사경을 경력경쟁 방식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수사·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수사·포렌식 교육훈련에 대한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고,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인터폴 교육훈련과정 커리큘럼도 제시하였다. 특사경과 저작권보호원 담당자가 저작권 포렌식 석사과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온라인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하여 해외 피의자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강화해야 한다. 5.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인터폴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저작권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 인터폴에 수사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8가지 착안사항도 제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국내 방문하는 외국경찰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색인어	한글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저작권 수사			
	영어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Crime Investigation			

- 목 차 -

1. 서론	1
가. 연구 목적	1
나. 연구방법 및 범위	2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사례분석	4
가. 온라인 저작권 피해 현황	4
1)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	4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	5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	7
1) 콘텐츠 유형별 침해현황	7
2) 플랫폼 유형별 침해현황	14
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사례 분석	20
1) 밤토끼 사이트 단속사건	20
2) IPTV 저작권 침해사건	21
3) 토렌트 사건	22
3.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법제와 문제점	24
가. 행정법적 대응조치	24
1)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삭제·차단	24
2) 문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등 수거·폐기·삭제	25
3) 문체부장관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령	26
4) 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및 명령요청	30
5) 법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령	31
나. 민사법적 대응조치	33

1) 불법 전송 차단 기술조치 요청	33
2) 불법 복제 전송 중단 요구	34
다. 형사법적 대응조치	42
1)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몰수	43
2)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44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적용	46
4) 소송제기 목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50
라. 문제점	52
4.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실태와 한계점	55
가. 대응조직과 교육훈련	55
1) 대응조직	55
2) 선발 및 교육훈련	59
나. 특사경 단속 활동과 직무범위	61
1) 특사경 단속 활동	61
2)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62
3) 특사경의 수사개시·진행권	64
다. 저작권 침해 수사·포렌식기술	66
1) 저작권 침해 추적 기술	66
2) 저작권 침해 포렌식기술	68
라. 불법 온라인 저작물 삭제·차단	68
1) 자체 모니터링 운영 및 삭제·차단	68
2) 플랫폼 삭제차단	70
마. 저작권 피해 해외소송 지원	70
1) 지원체계와 내용	70

2) 해외소송 사례	72
바. 한계점	75
5.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협력과 시사점	76
가. 저작권 보호 국제협력 활동	76
1) 저작권범죄 대응 국제협력	76
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한 국제협력	77
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협력	78
나.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 수사절차	79
1) 국제공조 방식 분류	79
2) 국제공조 방식 세부내용	80
3) 국제공조 증거법적 쟁점	87
4) 평가	90
다. 인터폴 국제협력과 적색수배	90
1) 인터폴의 국제협력	90
2) 인터폴 적색수배 제도	92
라. 인터폴 프로젝트와 공조수사	94
1) 프로젝트 추진절차	94
2) 우리나라 프로젝트 공여 현황	95
3)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공여 현황	96
마. 시사점	98
6.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설계	100
가. 조직진단과 환경분석	100
나. SWOT 분석과 전략적 과제 도출	100
1) 분석방법	100

2) SWOT 분석	101
3) 전략적 과제 도출	110
다. 기능·조직 진단 및 재설계	111
1) 필요성	111
2) 기능체계 분석	112
3) 실태조사 분석	117
4) 기능 재설계를 위한 내부 인식조사 결과	134
5) 기능 재설계안 제시	136
라. 조직편제의 효율성 분석	137
1) 통솔범위의 적절성	137
2) 조직편제 효율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139
3) 조직 효율성 평가 시사점 정리	141
마. 유사기관 벤치마킹	142
1)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대응조직	142
2) 미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144
3) 시사점	150
바. 전담조직 설계 방안	151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 “과” 단위 부서 신설	151
2) 분산되어 있는 기능의 통합 및 합리적 직무 배분	151
3) 조직 재설계 안	151
7.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154
가. 특사경 위상 제고 및 직무범위 확대	154
1)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인한 위상제고 및 후속조치 이행	154
2) 특사경 직무범위를 게임산업법위반 사건까지 확대	155

나. 저작권수사 전담조직 신설과 운영	155
1) 전담 수사조직 신설	155
2)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역할 분담	157
3)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특사경 장기근속 체계 마련	158
4) 수사·포렌식 전문가 특별채용 제도 도입	158
5) 경찰청 수사관(분석관) 파견 발령	159
다. 수사·포렌식 교육훈련 체계 확립	159
1) 수사·포렌식 교육훈련 전담인력 지정	159
2) 수사·포렌식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160
3) 저작권 포렌식 맞춤형 석사과정 교육기회 부여	161
라.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 강화	162
1) 해외 대규모 사이트 중점단속	162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 정례화	162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 및 범죄수익 몰수 강화	163
4) 기타 경찰청과 협력사항	163
마.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164
1) 인터폴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164
2) 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167
3) 다양한 국제협력활동 추진	167
8. 결론	169

- 표 목 차 -

[표 1] 콘텐츠사업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2018년 기준)	4
[표 2]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연도별)	5
[표 3] 온라인 불법 복제물 전체 이용량	6
[표 4]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자의 주 이용경로	7
[표 5] 주요 웹 사이트별 한국 콘텐츠 업로드 현황	10
[표 6] 중국의 무료 온라인 영상 사이트 리스트	10
[표 7] 한국 최신 드라마 치엔쑤(千寻影视)(2020.10.12.기준)	11
[표 8] 토렌트에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 유형	15
[표 9] 불법 유통을 위한 기기 및 활용	22
[표 10] 저작권보호과 조직 구성 및 인원 현황	56
[표 1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업무내용	58
[표 12]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교재 세부내용	60
[표 13] 특사경의 기획수사 단속실적	62
[표 14]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의 사물관할 확장 대상 법률 현황	64
[표 15] 최근 국내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현황	68
[표 16] 국제공조 방식 재분류	80
[표 17] 글로벌 인터넷기업과 국제협력 방식	86
[표 18]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예산편성 현황	95
[표 19] 해치 작전 관련 사업별 주요 내용	96
[표 20] 주요국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현황	98
[표 21]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수요 증가 여부	102
[표 22] 특사경 업무에 대한 기관장 및 국민들의 관심 부족	104
[표 23] 특사경 법집행에 대한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에 대한 어려움 수감 여부	104
[표 24] 저작권보호과의 강점	105
[표 25] 저작권보호과의 저작권 침해 예방업무에 있어 효과적 대응 여부	106

[표 26] 특사경 인력운용상 한계	108
[표 27] SWOT 분석 결과	110
[표 28] 저작권보호과의 현 기능체계 분석	113
[표 29] 특사경의 현재 업무 비율 및 적정 업무 비율	118
[표 30] 특사경 월 평균 송치사건 수	119
[표 31] 특사경의 행정부서 대비 업무 부담 정도	119
[표 32] 행정업무로 이동 희망 여부	120
[표 33] 행정업무로 이동 희망 이유	120
[표 34] 특사경 지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	121
[표 35] 특사경 지명기준	121
[표 36] 특사경 보상의 적절성	121
[표 37] 특사경 적정 업무 담당기간	122
[표 38] 특사경 업무 선호도 및 만족도	123
[표 39] 특사경 직무만족도 향상 방법	123
[표 40] 특사경 업무 홍보 정도	124
[표 41] 특사경의 업무 활용 정보	125
[표 42] 특사경 정보체계 평가	126
[표 43] 특사경 업무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정도	126
[표 44] 특사경 업무수행 위한 장비 구비 여부	127
[표 45] 특사경 피단속자 저항 시 대응방안	128
[표 46] 특사경에 대한 법률자문	128
[표 47] 외부 법률전문가 상주 필요성	129
[표 48] 특사경과 일반경찰 업무분장 명확성	129
[표 49] 특사경 사건 후속 결과 인지 여부	130
[표 50] 특사경 범죄자 전과조회 필요 유무	130
[표 51] 특사경 역량강화 위해 필요한 과제	131
[표 52] 특사경 외부교육 평가	132

[표 53] 특사경 업무교육 실태	133
[표 54] 특사경 전문 지식의 출처	134
[표 55] 기능 재설계 안	137
[표 56] 저작권보호과 조직 효율성 평가	139
[표 57] 저작권 보호과 조직구조 개편 방향	141
[표 5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조직 및 업무분장	143
[표 59]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 정리	153
[표 60] 저작권수사과 사무분장(안)	157
[표 61] 특사경 수사활동비 지급현황 비교	158
[표 62] IIPCIC 교육과정(입문-중급-고급)	160

- 그림 목 차 -

[그림 1] 1-3월 영화 개봉작 및 극장 관객 수	12
[그림 2] Directory Listing 영상 유출	17
[그림 3] RUTO 토렌토 페이지 링크 공유	18
[그림 4] PGP 인증을 통해 접근가능한 사이트	18
[그림 5] hidden wiki, Links 페이지를 통한 접속	19
[그림 6] 플래시 게임 제공 화면	19
[그림 7] 게임 프로그램 설치 파일 공유 화면	20
[그림 8] 인터폴 수배 종류별 구분	92
[그림 9] 저작권보호과 기능 수행 정도	135
[그림 10] 향후 저작권보호과 강화 기능에 대한 인식	135
[그림 11] 저작권보호과 기능 및 인력 확대 필요성 인식	136
[그림 12] 저작권수사 전담조직(안)	152
[그림 13] 저작권수사 전담조직(안)	156

1. 서론

가.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한류의 확산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성장은 영화와 음악에서 시작하여 방송, 웹툰 등으로 다양해지고 성장세도 빠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류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2018년에 10조원을 돌파하였고, 이때 전체 산업 수출이 2017년 대비 5.4% 증가하는 동안에 콘텐츠 산업은 무려 9.1% 증가하였다.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그 자체의 성장도 있지만, 식품,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에서 의료, 관광까지 전체 서비스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9년에 발표한 ‘K-콘텐츠 미국 시장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자가 무려 77%에 이른다.²⁾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저작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는 특히 온라인에서 심각하다. 실제 2015년 이후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오프라인에서 저작권 침해에 비해 약 8배를 상회하면서 콘텐츠 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 온라인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³⁾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설 서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TV패드를 이용하여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무단 시청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서버 구축뿐만 아니라 SNS, 도메인 등록, 결제를 모두 해외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경유지(Proxy) 서버나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암호화페 사용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자금세탁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2018년부터 경찰청과 협력하여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였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5.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
2)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2019.12.27.), “‘K-콘텐츠 미국시장 소비자 동향조사’ 국산 콘텐츠 美시장 내 경쟁력 확인”, (2020.12.20. 최종확인)
3) 오마이뉴스 보도(2018.05.23.), “웹툰업계 2천억 피해, ‘밤토끼’ 이렇게 검거했다”, (2020.12.18. 최종확인); 불법 웹툰을 서비스하는 ‘밤토끼’ 사이트의 경우, 한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면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가운데 13위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해외에 소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논문, 보고서, 부처의 백서, 사건기록과 판례, 언론보도 등 문헌연구와 전문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저작권 협·단체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폴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인터폴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해서 조직을 진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 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대부분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협력과 공조수사에 대한 대응정책이 다소 부족하고, 행정법적·민사법적 정책에 비해 형사법적 대응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간 이슈가 되지 않았던 다크웹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법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행정법적, 민사법적 그리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민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많은 만큼, 형사법적 대응에 방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실태와 한계점을 분석한다.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특사경의 단속 활동과 직무범위, 수사·포렌식기술, 저작물 삭제·차단, 해외 소송지원 등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저작권법에서 게임, 출판, 비디오, 영화, 콘텐츠 등과 관련된 법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특사경에게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과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협력 실태, 경찰청의 국제협력과 공조수사 채널 현황,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방안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인터폴에 특별기여금을 공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직을 설계한다. 현재의 조직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전담조직의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강화방안을 제시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수사, 형사법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사례분석

가. 온라인 저작권 피해 현황

1)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

2018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사업체는 10만 5,310개로 종사자는 66만 7,437명, 매출액은 119조 6,066억 원에 이르렀다.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8년에 961만 5,036달러(한화 약 10조원)⁵⁾를 차지하였다. 전체 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5.4% 증가한 반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무려 9.1%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⁶⁾

[표 1] 콘텐츠사업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2018년 기준)

구분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원)	수출액(천달러)
출판	24,995	184,554	20,953,772	248,991
만화	6,628	10,761	1,178,613	40,501
음악	35,670	76,954	6,097,913	564,236
게임	13,357	85,492	14,290,224	6,411,491
영화	1,369	30,878	5,889,832	41,607
애니메이션	509	5,380	629,257	174,517
방송	1,148	50,286	19,762,210	478,447
광고	7,256	70,827	17,211,863	61,293
캐릭터	2,534	36,306	12,207,043	745,142
지식정보	9,724	86,490	16,290,992	633,878
콘텐츠 솔루션	2,120	29,509	5,094,913	214,933
합계	105,310	667,437	119,606,635	9,615,036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보고서, 2020, 3면)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0, 3면

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5.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

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5.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저년 대비 9.1% 증가”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플랫폼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쉬워져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불법복제가 계속되고 있다.⁷⁾ 2019년 저작권보호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온라인 유통량은 89.4%로 오프라인 유통량 10.4%에 비해 약 9배 가량 높다.⁸⁾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2014년 20억 2,423만개에서 2015년 18억 8,132만개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21억 4,810만개로 다시 증가하였다.⁹⁾ 이후 2018년에 17억 6,347만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7억 개를 상회하는 수준이다.¹⁰⁾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 역시 2014년 235억 2천만원에서 2017년 334억 2,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 252억 1,400만원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¹⁾

[표 2]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연도별)

연도	유통량(천개)	금액(백만원)
2014	2,204,229	23,520
2015	1,881,319	22,426
2016	2,148,104	22,950
2017	1,876,741	33,426
2018	1,763,469	25,214

(출처: 201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154면)

2019년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음악이 919,812개(6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방송 461,748개(31.5%), 영화 53,952개(3.7%), 출판 21,948개(1.5%), 게임 9,482개(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²⁾

7) 박경자,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15, 490면

8)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154면

9)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154면

10)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154면

11)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154면

12)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69면

[표 3] 온라인 불법 복제물 전체 이용량

(단위: 건·%)

구 분	이용량	비중(%)
전체	1,466,942	100.0
음악	919,818	62.7
영화	53,952	3.7
방송	461,748	31.5
출판	21,948	1.5
게임	9,482	0.6

(출처: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69면)

불법복제 콘텐츠는 음원,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으로 다양하고, 유통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28.9%로 가장 높고, 이어 ‘SNS’ 18.2%, ‘웹하드·P2P’ 13.1% 순으로 나타났다.¹³⁾ 웹툰 공유사이트, 게임 사설서버 등 콘텐츠별로 새로운 불법복제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¹⁴⁾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한 경로를 살펴보면, 음악은 ‘무료 음악 전용 온라인 서비스’가 38.0%, 영화는 ‘UCC 사이트(비제휴)’가 29.6%, 방송은 ‘SNS’가 31.6%, 출판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34.3%, 게임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⁵⁾

1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83면

1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2021년 소요정원 요구서」, 2020;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와 관련해서는 김기범,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의 범죄실태와 형사정책 개선방안”, 법학연구 19(2), 2019, 29-52면

15)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83면

[표 4]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자의 주 이용경로

(단위 : %)

이용경로(%)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	0.8	-	-	-	-	7.0	
	웹하드·P2P(비제휴)	13.1	8.4	16.1	10.5	11.1	24.5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28.9	25.2	18.8	31.2	34.3	45.6	
	토렌트	9.7	6.5	15.2	9.2	5.8	10.9	
	무료 음악 전용 온라인 서비스	9.2	38.0	-	-	-	-	
	UCC 사이트(비제휴)	7.8	2.3	29.6	-	-	-	
	SNS	18.2	17.9	8.9	31.6	18.1	9.4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6.9	-	10.9	16.8	-	-	
	온라인 전체	94.6	98.2	99.5	99.3	69.3	97.4	
오프라인	노점상(비정품)	0.7	1.8	0.5	0.7	-	-	
	실물 온라인·오프라인 매장(비정품)	0.3	-	-	-	-	2.6	
	복사인쇄제본 업소	전자파일	1.0	-	-	-	6.9	-
		인쇄물-제본책	3.4	-	-	-	23.8	-
	오프라인 전체	5.4	1.8	0.5	0.7	30.7	2.6	

(출처: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83면)

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¹⁶⁾

1) 콘텐츠 유형별 침해현황

가) 음악

음악 콘텐츠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독 서비스다. AI 큐레이션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스트리밍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유튜브는 뮤직비디오 등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악 콘텐츠를 포함한 비율이 50%까지 증가하였다.¹⁷⁾ 온라인 음원은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과 음원 파일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가 활발하다. 그래서 ‘웹하드·P2P(비제휴)나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는 다른 분

16)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는 정부의 통계,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서술하고, 민간의 기업·협회 등에서 콘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서면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미디어 이슈&트렌트 리포트_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2019, 26면

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불법복제의 이용경로로 ‘무료 음악 전용 온라인 서비스’가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음원 파일은 웹 사이트에 저장된 URL 값을 통해 별도 저장이 가능하다. 유튜브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mp3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스트리밍 가능한 콘텐츠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추출해 내는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¹⁸⁾이라는 방식도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다.

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침해가 심각하다.¹⁹⁾ 예전부터 음원을 무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무엇보다 중국 예능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www.bilibili.com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모음집이 링크파일 형태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댓글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바이두 클라우드로 연결되고, 링크 옆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음악을 다운받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²⁰⁾

나) 방송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의 콘텐츠 분야별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과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방송’으로 조사되었다.²¹⁾ 방송 콘텐츠는 2018년 기준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류 플랫폼에서 위반 게시물의 66배의 달하는 수준인 26만 건에 이르렀다.²²⁾ 링크 사이트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에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대법원에서 인터넷 링크는 복제·전송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위반의 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³⁾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에

18) 스트림 리핑은 스트리밍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MP3 파일 같은 영구 소유가 가능한 다운로드 파일로 만드는 것으로 짧은 층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19) 중국 음악시장은 텐센트(腾讯)-쿠커우 음악(酷狗音乐), 알리(阿里)-샤미 음악(虾米音乐), 왕이(网易)-왕이위인(网易云音乐) 등 3곳에서 판권을 장악하고 있다.

20)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음악 애플리케이션(미구음악(咪咕音乐))을 다운받은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한국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다운로드 되지만 저작권자의 요구로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반면, 샤미음악(虾米音乐)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 존재하였다.

21)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60면

22) 연합뉴스 보도(2018.10.25.), “유튜브 저작권 위반물 2년간 26만건...네이버·다음의 66배”, (2020.12.10. 최종확인)

23)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2더13748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대해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한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규제될 여지가 일부 남아 있다.²⁴⁾

불법복제 사이트들은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거나 콘텐츠 안에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확보한다. 방송 콘텐츠 침해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웹 사이트 서버의 IP는 대부분 미국이다. 웹 사이트 대부분이 클라우드 플레이어(CLOUDFLARE)²⁵⁾를 이용하는데 이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버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웹 사이트 서버는 CDN 서버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방송업계에서는 방송이 송출된 이후 즉시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해당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소유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하면 유튜브에서 규제하기 때문이다. 방송사별로 모니터링 업체를 두고 업체는 크롤링 서버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역시 중국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JTBC에서 방탄소년단의 “인더숲 BTS편”을 8부작으로 재방송 없이 1회성으로 방송하였고, 이는 위버스 샵 앱에서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웹 사이트 www.y3600.cc, www.bilibili.com 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과거에 중국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에 대해서 1년에 1개로 제한하여 그에 대한 묘책으로 한국과 중국 간 공동 합작 붐이 일어났다.²⁶⁾ 하지만, 한한령²⁷⁾이 발표되자 우리나라의 예능 수입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우리나라의 저작물을 표절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CD 불법복제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하였으나 최근에는 위성 신호 안테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예능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웹 사이트들도 많다.²⁸⁾ 정규방송이 송출된 지 2-3일이 지나면 중국어로 자막을 붙여 웹 사이트에 업로드가 된다. 자막 번역료는 회당 1-3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25) CLOUDFLARE 홈페이지, <https://www.cloudflare.com/ko-kr/cdn/>, (2020.12.14. 최종확인)

26)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2015, 8면

27) 금한령이라고도 하며,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을 일컫는다.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한다거나 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28) bilibili 보도(2020.09.30.), “【中字】【防弹少年团】IN THE SOOP 真人秀BTS版.JTBC合集”, (2020.09.30. 최종확인)

만원 가량 되고, 일부는 학습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송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0.11.01.-11.09.간 콘텐츠 업로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드라마, 영화, 예능에 대한 다수의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주요 웹 사이트별 한국 콘텐츠 업로드 현황

무료 영상 제공 사이트	드라마(건)	영화(건)	예능(건)
https://www.hanjutv.com	1760	1480	240
https://www.y3600.cc	1347	0	601
http://www.ikhanju.com/hanju/index.html	1240	933	8

또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등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다수의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표 6] 중국의 무료 온라인 영상 사이트 리스트

사이트 이름	URL
韩迷TV	https://www.hmtv.me
韩粉乐园	http://hjzlg.com
电影网	http://www.shibanggx.com
iqi5	http://www.iqi5.com/allmovie.html
97韩剧网	https://www.97hanju.com/list/dianshiju
看韩剧	https://www.kan.cc
韩剧网	http://kan-tv.com
tv4韩剧网	https://www.tv4.cc
2345影视	http://tv.2345.com/-hanguo--.html
韩剧网한국드라마넷	http://www.yasbs.com
360影视	http://www.360kan.com/dianshi/hanju.html
麦片好剧	http://www.mphj.com/t/1.html
韩剧社	https://www.hanjushe.com
韩剧网	http://www.hj3z.com
全集网	http://quanji456.com/Zuixinhanju

중국에서 영화, 드라마, 예능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치엔쉬인(千寻影视)에서 우리나라의 최신 드라마인 ‘18어게인’이 언제 업로드되는지 확인한 결과 월요일 방송분은 화요일에, 화요일 방송분은 수요일에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씽’은 2020년 10월 11일부터 12부작으로 방송된 드라마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되면 바로 익일 새벽에 앱에 업로드되고 있었다.

[표 7] 한국 최신 드라마
치엔션(千尋影视)(2020.10.12.기준)

드라마 제목	한국 방영 날짜	중국 업로드 날짜
18 어게인	월, 화 오후 09:30	화, 수
앨리스	금, 토 오후 11:00	토, 일
경우의 수	금, 토 오후 11:00	토, 일
내가 가장 예뻐할 때	수, 목 오후 09:20	목, 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월, 화 오후 10:00	화, 수
미씽:그들이 있었다	토, 일 오후 10:30	토, 일

이처럼 중국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에도 복면가왕 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 포맷을 중국에 수출하고, 제작부터 방영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였는데, 중국에서 자신들이 포맷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슈가 발생하였다. 2016년 한중 관계 악화 이후 중국 방송계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국 제작사는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출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가 확산되면서 ‘밀리의 서재’, ‘리디 셀렉트’, ‘에스24 북클럽’, ‘교보문고 SAM’ 등 도서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웹툰은 짧은 내용의 연재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세로 화면의 스크롤 읽기 방식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장르이자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웹툰은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시장으로 확산 되었고, 드라마, 영화, 게임, 공연 등을 통한 2차 판권수익도 증가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출판 콘텐츠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불법 유통(해적판)되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2019년 출판 분야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자 비율은 24.6%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³⁰⁾ 침해 방법은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려 공유하는 방법, 토렌트 프로그램의 시드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소설을 그대로 타이핑하여 txt파일(일명 “텍본”)로 만들어 공유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출판 업체에서 해당 사이트의 배너광고에 대한 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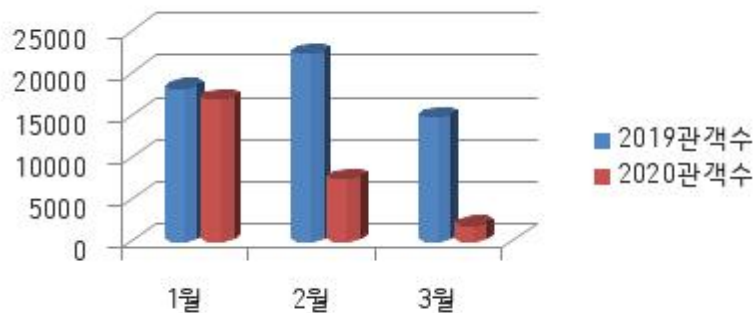
29)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내 웹툰산업의 현황 및 시장발전을 위한 제언」, 2017, 26면

30)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60면

가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사관이 광고비 계좌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최근에 출판 콘텐츠 업계는 영상과 음원에 적용되었던 DNA 필터링 기술을 출판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 영화

영화는 극장, TV VOD, 인터넷 VOD, DVD 및 블루레이 등을 통하여 유통되어 왔다. TV VOD는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TV, 인터넷 VOD는 OTT와 웹하드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³¹⁾ COVID-19로 인하여 2020년 1-3월 영화 개봉작 및 극장 관객 수가 감소하였고, 기존의 영화에 대해서는 불법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 증가하여 저작권 침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1] 1-3월 영화 개봉작 및 극장 관객 수

(출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2020)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의 영화 콘텐츠 분야별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이용량 비중이 99.3%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³²⁾ 실제 워너브라더스코리아(Warner Bros. Korea Co., Ltd.)에서 제작·배급하는 영화는 극장 개봉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IPTV, OTT 등을 통해 유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영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다음 몇 주 후에 동남아에서 개봉하는데, 그 전에 고화질 불법파일이 이미 유통되어 현지 수입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후속 작품 수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화 제작사·배급사는 IPTV·OTT 회사들의 협조를 받아 소비자에게 송출되는 영상에 디지털 핑거프

31)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15면

32)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69면

린트(Digital Fingerprint)를 삽입하여 유출자를 특정하고 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한번 유출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마) 게임

게임산업은 PC 환경 기반에서 모바일 환경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게임산업 수출액은 64억 1,149만 달러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³³⁾ 하지만,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들 중 약 84.6%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³⁴⁾ 나아가 게임회사의 게임 바이너리나 소스코드를 탈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서버까지 등장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³⁵⁾ 여기에 더하여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게임을 제작·유통하고, 게임 화면·방법, 인물, 기능까지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게임을 모방한 중국의 게임이 우리나라에 역수출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넥슨의 “트리 오브 세이비어”라는 온라인 게임을 똑같이 만들어서 한국 서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⁶⁾ 넥슨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한국 서버의 운영은 차단되었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계속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게임사가 중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해외 게임회사가 소송으로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법원은 우리나라의 위메이드의 “열혈전기” 게임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여 주었다.³⁷⁾ “오버워치” 게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블리자드 회사, 왕지이온라인기술발전유한회사(上海网之易网络科技发展有限公司)와 피고 광저우 사삼구구정보기술유한회사(四三九九信息科技有限公司), 사삼삼구온라인주식유한회사(四三九九网络股份有限公司) 간의 소송에서도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³⁸⁾ 그래서 피고는

3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0. 3면

34)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109면

35) 서은비·김지홍·강태운·유창석·김휘강, “불법사설서버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27(4), 2017. 27면; 사설서버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저작권 및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게임 업체의 동의 없이 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는 행위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작하여 서비스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36) sina新浪游戏 보도(2017.11.26.), “韩国游戏组团来中国维权 数十款国产游戏受指控抄袭”, <http://games.sina.com.cn/on/2017-11-26-fypathz6060471.shtml>, (2020.12.10. 최종확인)

37) (2018)京民初字第121号; (2018)京民初字第119号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만 위안의 배상을 하게 되었다.³⁹⁾

2) 플랫폼 유형별 침해현황

가) 전통적 방식

(1) P2P

P2P는 웹 환경에서 개인용 컴퓨터들이 서로 간의 직접통신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서버가 존재하여 P2P 목록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P2P(Hybrid P2P) 방식과 그렇지 않은 순수 P2P(Pure P2P) 방식으로 구분한다. 하이브리드 P2P는 중앙 서버가 클라이언트 IP 주소와 파일목록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고, 순수 P2P(Pure P2P)는 모든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서로의 정보를 중개하는 방식이다.⁴⁰⁾

(2) 토렌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토렌트, P2P를 대상으로 주·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⁴¹⁾ 2018년에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등 토렌트 사이트 3개를 적발하였는데,⁴²⁾ 보고보고는 다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8) 中国知识产权杂志(2019.12.02.), “换皮游戏”的侵权认定和判赔考量, (2020.12.11. 최종확인)

39) 中国知识产权杂志(2019.12.02.), “换皮游戏”的侵权认定和判赔考量, (2020.12.11. 최종확인)

40) 연기영·손미선,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1), 2016, 209-240면

4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1.28.), “2013년도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요원 발대식”, (2020.08.17. 최종확인)

42) 연합뉴스 보도(2018.10.23.), “영화·드라마 106만건 무단유포…토렌트킴 등 사이트 3곳 폐쇄”, (2020.11.20. 최종확인)

[표 8] 토렌트에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 유형

유형	침해의 내용
영상 콘텐츠	한국영화, 외국영화, 국내 TV 드라마, 국내 예능 오락, 국내 시사·다큐·교양, 국내 완결 드라마, 극장판, 유아용, 완결 애니메이션
음악 콘텐츠	국내음악, 해외음악, 클래식
출판 콘텐츠	만화, 소설
성인 콘텐츠	동영상, 사진(국내, 중국, 일본, 서양)

(3) 웹하드

웹하드 서비스는 파일공유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이 소장하는 콘텐츠를 웹하드 서버에 전송(업로드)하면 이용자가 이를 다운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⁴³⁾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방송저작물의 단가를 1개당 1,000원-1,500원으로 책정하여 유통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들이 한 달에 1만원을 웹하드에 지불하고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유통계약상 단가는 무의미하다.⁴⁴⁾ 2018년 11월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매출액 대부분은 구매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내는 수수료 수입에서 발생했고, 비용은 제휴업체 저작권료, 개인 판매자 수수료, 일반 판매관리비로 지출되었다.⁴⁵⁾ 파일의 판매가격이나 수익의 배분은 제휴, 비제휴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제휴는 저작권 협약을 맺은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이고, 비제휴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파일 등을 말한다. 제휴 파일의 경우 최근 상영된 영화는 5천원-1만원, 드라마·방송은 1천원-1천500원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떨어진다. 제휴 파일의 경우 최근 상영된 영화는 5천원-1만원, 드라마·방송은 1천원-1천500원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점차 떨어진다. 제휴 파일은 영화사, 방송사 등과 협의에 의해 저작권료가 결정되게 되고, 저작권자에게 판매 가격의 70%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30%에서 개인 판매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 남은 금액이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 된다.⁴⁶⁾ 즉, 구매자가 3GB의 영

43) 이충훈,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2), 2017, 95면

44) 전세준, "IT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 웹하드 및 TV PAD 침해 단속 실무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16, 10면

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46) 머니투데이 보도(2018.11.06.), "'양진호' 웹하드 사업 실상은 합법과 불법 사이 외줄타기", (2020.12.10. 최종확인)

화 파일을 다운 받으면서 300원을 지급하게 되면 개인 판매자는 30-60원을 배분받고 나머지 240-270원 가량이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 된다.⁴⁷⁾

(4) SNS·포털 사이트

LTE 서비스가 상용화⁴⁸⁾되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효용성이 커지고 더불어 저작권 침해의 무대로 등장하였다. SNS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SNS를 통해 유포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⁴⁹⁾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웹하드와 토렌트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고,⁵⁰⁾ 영화 콘텐츠의 불법복제의 온상이었던 웹하드는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감소하였다.⁵¹⁾

나) 새로운 방식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TT(Over-The-Top) 서비스는 셋톱박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 서비스를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⁵²⁾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유튜브, 웨이브, 넷플릭스 순으로, iOS 앱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순으로 이용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⁵³⁾ 글로벌 OTT 서비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독보적이다. 국내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플레이가 있고, 이용자는 웨이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⁵⁴⁾

(2) 다크웹

47) 머니투데이 보도(2018.11.06.), “‘양진호’ 웹하드 사업 실상은 합법과 불법 사이 외줄타기”, (2020.12.10. 최종확인)

48) 디지털타임스 보도(2012.09.11.), “대용량콘텐츠 무리없이 이동가능해져”, (2020.10.10. 최종확인)

49) 채명기,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지 30(10), 2012, 23면

50)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16면

51)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16면

52) 전이슬, 「급변하는 국내 OTT 시장 동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간SW중심사회, 2020, 19면










53) 닐슨코리아, 「제52차 인터넷 이용자 모집단 추정조사 보고서」, 2019, 5면

54) 유건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 전파통신진흥원(전문가리포트 31), 2020, 62면

다크웹(Darkweb)은 다크넷(Darknet)에서 암호통신을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접속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다크웹 브라우저는 토르(Tor) 브라우저이다. 최근에는 다크웹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크웹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이 용이하고, 다크웹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공유되거나 URL 구매 등의 수단으로 Directory Listing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다. HTTP 서버 인증방식인 Basic, Digest, SSL client Form base Authentication 등 일반 인증방식을 통해 Directory Listing 페이지를 보여주게 된다. HTTP 프로토콜 외에도 유출된 파일의 개수가 많을 때 유출자가 FTP(File Transfer Protocol) URL을 통해 영상을 유출할 수 있다. 다크웹 커뮤니티, BBS(bulletin board system) 등에 공개된 계정 등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영화, 국제 테러 단체 처형 영상 등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영상 업로드는 폴더 하위예다가 복사 및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가능하고 유출은 정보유출, 복사 및 P2P 재배포 등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단일 링크를 공유해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게끔 한다거나, 페이지 내에 파일 드롭 코드를 넣어서 불법 영화를 다운로드 시키는 방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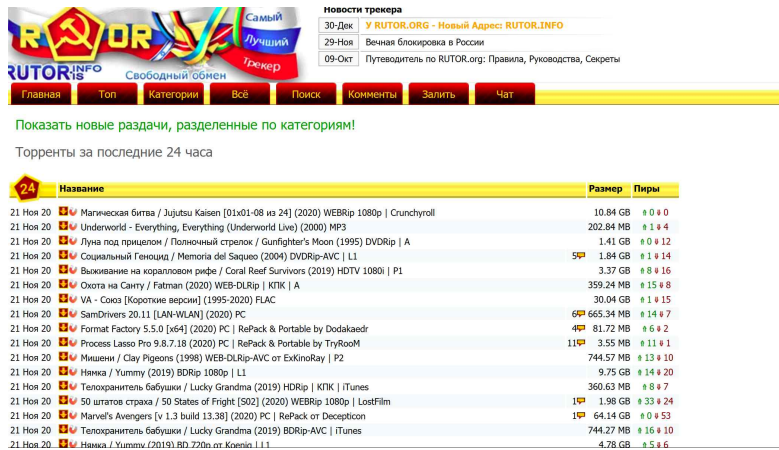
Index of /movie

Name	Last modified	Size	Description
 Parent Directory		-	
 video_001.mp4	2017-06-17 14:49	409M	
 video_002.mp4	2019-04-10 17:01	279M	
 video_003.mp4	2017-06-17 14:49	319M	
 video_004.mp4	2017-06-17 14:49	514M	
 video_005.mp4	2017-06-17 14:49	440M	
 video_006.mp4	2017-06-17 14:49	210M	
 video_007.mp4	2019-04-10 17:16	156M	
 video_01.mp4	2019-05-15 12:25	93M	

[그림 2] Directory Listing 영상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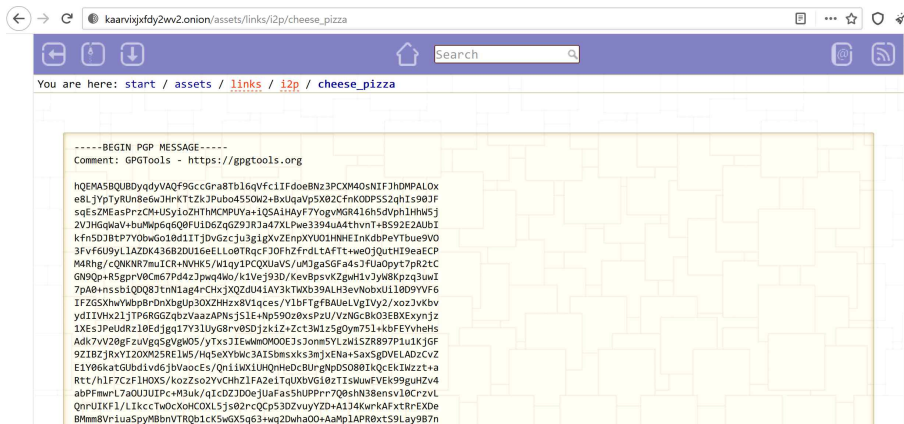
다크웹 커뮤니티 게시판(BBS)을 통해서 영화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 어떤 파일이든 업로드할 수 있는 AnyFile 다크웹 페이지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영화 불법공유를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 다

크웹에서는 IRC 서버도 호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inspircd, torchat 등 패키지를 통해서 채팅 참여자들은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IRC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참여자에게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RUTO는 P2P 파일 공유를 통한 마그넷을 공유 해주는 사이트이다. 이러한 사이트들의 마그넷은 P2P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다운로드 받는 PC에 대한 정보가 쉽게 노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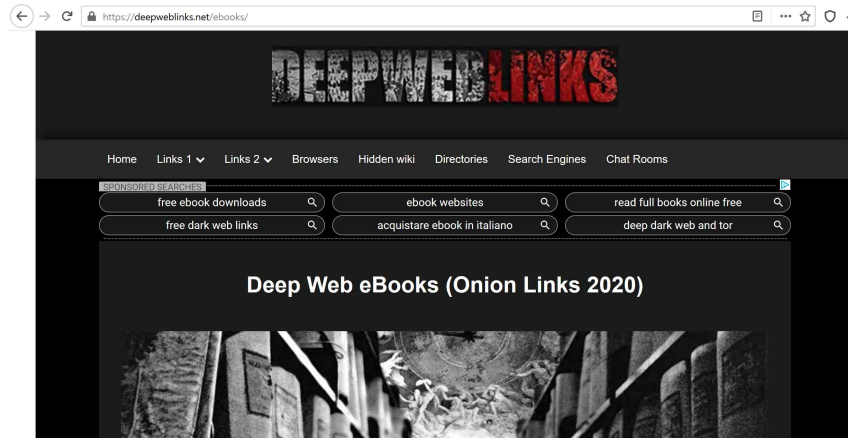


[그림 3] RUTO 토렌토 페이지 링크 공유

PGP란 Pretty Good Privacy의 약자로, 메일 서비스의 암호화를 위해 쓰이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을 말한다.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통신을 하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운영자와 게시자 간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게시판을 통해서 마약, 아동성착취물, 불법저작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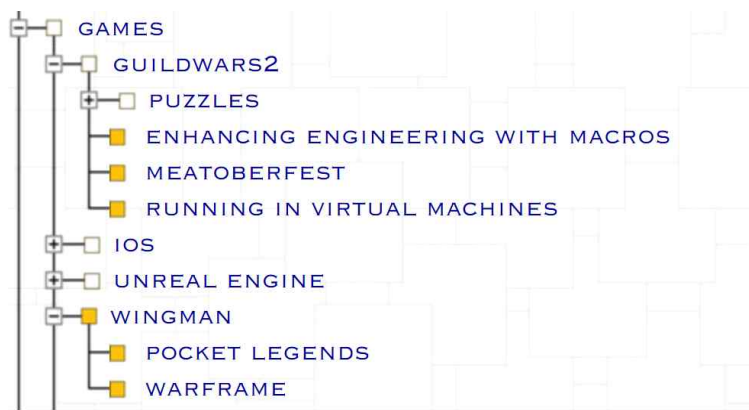


[그림 4] PGP 인증을 통해 접근가능한 사이트



[그림 5] hidden wiki, Links 페이지를 통한 접속

다크웹에서 제공되는 고전 플래시 게임들의 게시물 업로더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호스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플래시 게임뿐만 아니라 익명의 다크웹 사용자가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Directory Listing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림 6] 플래시 게임 제공 화면

아래 그림은 불법 콘텐츠 공유를 위한 e-book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모아둔 사이트로 책 저자의 ABC순으로 공유되고 있다. Game, Fiction 등의 카테고리에서 “Starsiege and tribes” 라는 시에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게임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Name	Size	Date
Parent directory	-	-
Concept Art/	-	2017-Nov-09 21:19
Prophecy of Tears/	-	2014-Oct-28 10:01
0-TribesUniverse_Guides_called_...*	0 B	2011-Sep-03 08:51
BatVXTools_byDrake.zip	218.8 KIB	2013-Aug-07 22:58
ConvTEDv1-0.zip	51.8 KIB	2011-Sep-03 08:54
Fat_Squime_..._Bing_..._Shazbot.mp3	8.4 MIB	2017-Dec-05 05:10
GUI_Scripter_Notes.doc	132.0 KIB	2013-Aug-31 12:00
KillPop.zip	857.8 KIB	2015-Jul-23 22:36
Majo_Tooth_..._LFB.mp3	2.2 MIB	2004-Feb-22 18:20
Majo_Tooth_..._Shazfunk.mp3	1.8 MIB	2004-Feb-22 18:19
Motley_Cruel-Tribes_2_Theme.mp3	1.3 MIB	2012-Aug-28 05:42
Of Wolves and Eagles_ Part 1 and 2_ David R Meddishi.txt	40.0 KIB	2011-Dec-29 16:59
Penstark and King Crusher - Tribes Players.mp3	8.1 MIB	2012-Aug-31 23:32
Plobestaller.exe	237.6 KIB	2013-Aug-31 12:00
SS writers guide.zip	459.0 KIB	2011-Dec-29 03:54
SST Game Manual.pdf	14.5 MIB	2015-Jul-23 22:32
SST Prima's Official Strategy Guide.pdf	3.2 MIB	2015-Jul-23 22:33

[그림 7] 게임 프로그램 설치 파일 공유 화면

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사례 분석

1) 밤토끼 사이트 단속사건⁵⁵⁾

밤토끼 사건은 2016년 10월부터 원투넥스트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밤토끼(bamtoki.com)’를 제작하고, 파싱 프로그램으로 웹툰을 수집하여 업로드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웹툰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유료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탑툰 등에서 제공하는 웹툰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⁵⁶⁾ 밤토끼는 월평균 3천 500만 명, 하루 평균 최대 116만 명이 접속하여 국내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 13위에 오르기도 하였다.⁵⁷⁾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 웹툰 업계는 밤토끼 사이트로 인하여 약 2천 4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부산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운영자는 국내 웹툰 83,347건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였고,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952,367,56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⁵⁸⁾ 2017년 6월경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의 광고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8년 5월경에는 배너 1개당 매월 1,000만원까지 광고료를 받았

55)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책임자에 대한 인터뷰(2020.08.25.)와 관련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56)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2017년 기준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2018, 90면

57) BBS NEWS 보도(2018.05.23.), “매월 3천500만명 방문...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단속”, (2021.01.08. 최종확인)

58) 부산경찰청 보도자료(2018. 5. 23.)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 단속”

다. 부산경찰청은 운영자의 빗썸 계정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미국 서버에 접속하여 웹툰 목록을 확보한 다음에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였다. 이 사이트는 방문자 수에서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나아가 불법저작물 사이트가 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음란 등 불법 사이트와 먹이사슬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2) IPTV 저작권 침해사건⁵⁹⁾

IPTV 저작권 침해사건은 국내 방송을 해외 10개국(베트남, 필리핀, 미국, 일본,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 무단으로 송출하여 해외 교민 등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방송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운영자는 2008년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당시 방송사업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였고, 베트남에서 P2P 프로그램 개발업자를 소개받아 KOVITV 방송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입자에게 IPTV 셋톱박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6개월 수신료 380만동(현재 환율기준 월 3만700원)을 지불하면 실시간 방송과 VOD 다시보기(영화, 드라마, 예능 오락 등)를 제공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7년 11월 메인 서버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수사관을 파견하여 'KOVITV'라는 IPTV에서 국내 63개 방송채널과 CNN, CCTV, NHK, BBC 등 외국 103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인코딩 사무실을 발견하여 실시간 방송을 차단하고 송출시스템 총 138점을 압수하였다. 이후 베트남에서 관련범죄를 총괄하는 운영자를 귀국시켜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인코딩 담당자 등 총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베트남에서 서버와 해외 IP 방송망을 관리한 2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하였다. 수사결과 범죄자는 2012년 9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시 IPTV 가입자 4,868명에게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약 28억 원 상당의 수신료 수입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해외 10개국의 수신료는 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국내 63개 방송 채널의 영상신호를 ① 셋톱박스 → ② 분배기

59)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책임자에 대한 인터뷰(2020.08.25.)와 관련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③ 인코더 → ④ 국내 서버 → ⑤ 인터넷 브리지 → ⑥ 베트남 서버 → ⑦ 현지 IPTV 실시간 방송의 형태로 송출하였다. 셋톱박스는 모든 채널을 개별적으로 인코딩해야 하기 때문에 63개가 필요하였다. 분배기는 방송 콘텐츠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유번호(암호)를 해독하여 방송 송출에 필요한 장치 인코더와 자막기로 영상신호를 분배하고, 영상변환장치인 인코더에서 영상 용량을 압축하여 고화질로 만든 다음 메인 서버로 일시 저장을 하였다. 메인 서버는 영상신호를 베트남 서버로 전송하고, 모든 영상 신호는 인터넷 한 개 회선으로 전송한다. 인터넷 한 개 회선으로 전송하면 영상 노이즈나 음향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영상신호 강도를 증폭시켜주는 인터넷 브리지가 필요하였다. 운영자는 우리나라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마치 방송전송 중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왔다.

[표 9] 불법 유통을 위한 기기 및 활용

유통 매체	활용 방법
셋톱 박스	국내 각 방송 채널별로 셋톱 박스를 설치하여 방송영상 수신
자막기	동영상 하단에 글(자막)이나 광고 삽입
동영상 인코더	영상 용량 축소 및 HDMI 신호를 실시간 송출용 데이터로 변환
인터넷 브리지	국내 서버와 해외 서버를 연결해주는 통신망 연결장치
분배기	1개 영상출력을 2개 영상출력으로 복제, 콘텐츠 보호 장치(HDCP) 무력화
동영상 컨버터	자막기를 통해 출력된 SDI 영상신호를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 HDMI로 변환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파일질라	서버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

(출처 : 2018, 경기북부청 내부자료)

3) 토렌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에 P2P(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⁶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

6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5.30),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실

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하여 5개월에 걸쳐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개, 호스팅 등 도메인 등록업체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 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토렌트 사이트 10개에는 총 278만 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 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추산한 저작권 침해 피해규모는 약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 (2021.01.08. 최종확인)

3.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법제와 문제점

가. 행정법적 대응조치

1)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삭제·차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법제는 행정법적, 민사법적, 형사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 본 장에서는 형사법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 행정법적 근거로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삭제·차단 제도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2조의6) 하지만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차단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7) 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⑦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⑧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⑩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⑪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 11개의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차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방법을 얼핏 보면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 저작권 침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역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차단이 가능하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위 근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다행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에서 차단한 불법 사이트가 새로운 주소를 생성하면 4일 이내에 차단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⁶¹⁾ 하지만 여전히 신속한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24시간 내 심의체계를 갖춘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문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등 수거·폐기·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 제1항) 수거, 폐기, 삭제의 구체적인 절차로 수거·폐기·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문체부장관은

61)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공동 보도자료(2020.01.21.),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 수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20.12.03. 최종확인)

위 업무를 저작권보호원 또는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관계 공무원 등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저작물 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 제3항, 시행령 제71조)

문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에 대한 권한은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법집행력을 발휘하였다. 특사경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함께 현장에 진출하여 불법저작물을 수거·폐기·삭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권한은 해외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문체부장관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령

가) 침해자 경고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

문체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 복제물등")가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 경고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복제물등을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하라고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려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133조의2 제1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33조의2 제7항) 심의위원회는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7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문체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명령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명령이라 해도 일단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문체부장관이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이나 시행령 등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반대해석을 통해 기속력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⁶²⁾

사전의견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가 준용된다.(제133조의2 제7항 후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제27조 제4항)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사전의견 제출의 하자 및 그 효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4호)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과태료 처분 외에 상습적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공공재에 준하는 정도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령위반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어 침해자와 더불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이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명령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또는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침해자의 계정정지 명령

불법 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

62)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31조 제1항),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는데(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가목) 심의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심의결과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 기속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문체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 불법 복제물등을 전송한 계정은 물론,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도 포함하지만, 의사소통에서 이메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메일 전용계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구체적인 계정의 정지기간은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다.(시행령 제72조의3 제3항) 원래 법안에는 “반복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가 전송한 경우”로,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개인의 통신 이용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라 하겠다.⁶³⁾

한편,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제재 기간은 대통령령인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례를 따르면 대외 법규성이 인정된다.⁶⁴⁾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지 횟수에 따른 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정지횟수에 따른 정지는 1개월 미만, 6개월 이하 등 불확정한 기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이내로 처분하더라도 비례원칙 위반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⁶⁵⁾ 사전절차로 문체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려면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133조의2 제4항)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33조의2 제7항) 심의위원회는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 심의위원회는 심의 시 해당

63)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1298-1299면

64)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65) 예를 들어, 문체부장관이 두 번째 계정 정지 대상자에 대해 3개월간 정지시킬 것을 명령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같은 경우 2개월 29일을 정지한다면 사안에 따라 비례원칙위반의 재량권 남용 처분으로서 위법할 여지가 있다. 법원도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처분기준을 처분의 최고한도액으로 본 바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 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불법 복제물 등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이는 복제 전송자로 인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해당 계정을 정지시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해당한다. 계정 정지로 인한 복제전송자의 사익침해와 대비하여 계정을 정지할지 여부 및 정지 시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비례원칙, 특히 상당성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침해자에 대해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의 사전절차로서 사전의견 제출의 내용과 동일하다. 침해자에 대해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체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 구체적인 정지기간은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다.(시행령 제72조의4 제3항) 원래의 법안은 정지기간은 “1년 이내”였고 게시판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국회심사과정에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줄었고, 게시판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되었다.

이는 게시판 이용자들의 통신이용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⁶⁶⁾ “상업적 이익 또는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은 다수 또는 인기 있는 자료를 복제 전송하는 사람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나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자료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

66)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9, 1299면

을 부추기는 게시판을 말한다.⁶⁷⁾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이 시행령에 규정된 점에 대한 법적성질 평가 등은 위 침해자의 개정 정지 명령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사전절차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연장은 위 침해자의 계정정지 명령의 사전절차로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 내용과 동일하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시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불법 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게시된 불법 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해당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불법 복제물 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2조의4 제1항) 이에 대한 법적성질 평가 등은 위 침해자의 계정정지 명령의 사전절차로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 내용과 동일하다. 침해자에 대해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의 사전절차로서 사전의견 제출의 내용과 동일하다. 침해자에 대해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동일하다.

4) 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및 명령요청

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 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고려사항은 문체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각 사전절차로서 심의위원회 심의시의 내용과 동일하다.(시행령 72조의6) 저작권보호원의 권고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권보호원은 문체부장관에게 각 사안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33조의3 제3항) 그 요청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33조의3 제4항)

67)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91면

5) 법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령

법원은 권리자가 침해정지청구,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면 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한 경우(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있는 때,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23조 제3항) 법원의 조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조건을 갖출 경우 일정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②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며,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④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면(법 제102조제1항제1호) 법원은 ① 특정 계정의 해지, ②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제103조의2 제1항)

다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②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며,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④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⑥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 된 저작물 등

의 접근을 허용하고, ⑦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키고(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⑨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면(제102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① 불법 복제물의 삭제, ②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③ 특정 계정의 해지, ④ 그 밖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제103조의2 제2항)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②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며,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④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고, 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⑦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였다면(제102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① 불법 복제물의 삭제, ②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③ 특정 계정의 해지, ④ 그 밖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제103조의2 제2항)

나. 민사법적 대응조치

1) 불법 전송 차단 기술조치 요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시 권리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경우 침해자에 대한 대응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응이 실질적 권리구제에 용이하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응은 침해자에 대한 대응을 거의 포함하고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리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또는 ㉡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와 ②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는 ①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등), ②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

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③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 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등)가 있다.⁶⁸⁾

대부분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권리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예방적 대응으로 불법 전송 차단 기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리자로부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① 저작물 등의 제화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② ①의 기술적 조치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및 ③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104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42조 제1항)

2) 불법 복제 전송 중단 요구

가) 권리자의 중단요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또는 ②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

6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0006호) 2017.02.21.자

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 제1항)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 전송 중단 및 통보 의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도 같은 기간내에 통보하여야 하고,(시행령 제41조 제1항)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다) 복제전송자의 복제 전송 재개 요구 및 관리자의 대응

복제 전송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①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③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④ 그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첨부하는 등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복제 전송 재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재개할 수 없다. (제103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 제1항)

라) 손해배상청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조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 침해 행위자로서 이용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제760조 제3항)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있어 침해자 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배상을 할 자력이 있고, 집행도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자에게 상당히 유효한 대응책이 된다.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소송의 일반적인 요건사실인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대상이 저작물인 점, ② 원고가 그 저작물에 대한 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귀속주체인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복제, 공연 전송, 전시 등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방법으로 이용하여 침해한 점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인 ④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배상금액), 권리침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충족하여야 한다.⁶⁹⁾ 이 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장 중요한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여부, 배상금액의 산정 및 저작권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책임제한·면제에 대해 살펴본다.

69) 이규홍·김기영·장현진·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 1049면

마) 고의 또는 과실

정상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의 직접 침해 행위자인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에 대해 검토한다 해도 이는 이미 배제의 이유를 밝힌 직접 침해자에 대한 검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의 간접침해행위자인 경우에 대해 살핀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간접침해행위자로서 고의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저작권법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이는 직접침해행위자에게 등록된 권리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간접침해행위자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위 과실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행위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⁷⁰⁾

바) 배상금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 즉 배상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 발생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먼저,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따라서 권리자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증명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70)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인 면책규정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규정 및 적극적 조사 의무 배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과실의 판단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를 과실판단기준으로 보든, 면책조항으로 보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실무상 구별실익은 크지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책임 제한 면제에서 살펴본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조 제2항) 이 경우 손해액이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조 제3항)

다음으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6조) 끝으로,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25조의2 제1항, 제3항) 이 때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제125조의2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5조의2 제4항)

사) 책임제한 면제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면책요건과 일반적인 면책요건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102조) 먼저 서비스 유형에 따른 면책요건은 서비스를 인터넷 접속, 캐싱, 저장 서비스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최근까지 네이버, 구글 등 정보검색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면책요건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4. 개정 저작권법에서 삭제되었다.(제102조 제1항) 일반적인 면책요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면책요건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제102조 제2항)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 대응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자세히 살펴본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하기 위하여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

는 서비스로서, KT, SKT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02조 제1항 제1호)

(2) 캐싱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률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⁷¹⁾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하고,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키고(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

7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고,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3) 저장 서비스 제공자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게시판 등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저작권법은 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10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침해방지 조치를 취하였다면 침해행위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4) 알선 및 조정

저작권법은 관리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알선과 조정의 특칙을 두고 있다.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에 의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의 알선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①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및 ②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제1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113조의2 제2항)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고,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13조의2 제3항, 제4항)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113조의2 제5항) 알선이 성립할 경우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게 되는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권리자와 침해자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특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조정이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로,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민사조정법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에 관한 조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1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조정의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정부(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114조 제1항)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조 제3항) 조정부는 필요시 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 출석일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

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법 제 115조),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61조 제5항)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제117조 제1항)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로서 조정부장이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인 경우로서 ㉡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제117조 제2항)

저작권법 상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따라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신속성과 효율성 등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 8. 5. 시행된 저작권법에는 ‘직권조정’이 도입되었다.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117조 제3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제117조 제4항) ㉠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또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17조 제5항)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제118조 제1항) 조정절차는 저작권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제118조의2)

다. 형사법적 대응조치

1)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몰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 침해되는 권리의 종류와 침해 유형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⁷²⁾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불법 복제나 전시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136조 제1항 제1호) 법인이나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제141조) 이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직접적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⁷³⁾

한편, 과거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모두를 친고죄로 두었다가 200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를 일반범죄로 바꾸었고, 2011. 12. 2.자 개정 시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을 일반범죄로 하여 친고죄의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비친고죄의 확대를 침해자와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저작권 보호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공익의 침해에 대해 처벌여부를 권리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⁷⁴⁾ 특히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⁷⁵⁾은 공익과의 관련성이 크므로 개별사건의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침해자의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

7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7조 제1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8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73) 김정완, 「저작권법 개설(제5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95면

7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85면

75) 영리의 목적은 저작재산권 침해물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를 유상으로 대행하는 등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뜻하는 것으로, 예컨대 기업에서 업무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영리의 목적과 연결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리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리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형법법규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고, 비친고죄의 지나친 확대를 막는 면에서도 타당하다.(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1293면.) 한편 “상습적으로”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39조) 하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불법 복제물 등이 정보로 존재하고 있고, 이미 살펴본 문체부장관의 불법 복제물 등 수거, 폐기, 삭제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필요적으로 몰수하더라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몰수의 방법도 마땅치 아니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 등이 개인의 정보저장매체 또는 전문적으로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몰수할 수 있겠지만, 포털에 게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불법 복제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에는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정보도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몰수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불법 복제물을 (복사후) 삭제하는 방법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2)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저작권 불법복제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저작권 불법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집단조직죄, 각 가입죄 또는 활동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⁷⁶⁾ 범죄단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단체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다수인이라는 구성인이 필요하며 다수의 행위자가 동일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집합범의 성격을 지닌 필요적 공범이다.⁷⁷⁾ 둘째, 구성원들 간에는 일정한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목적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공동목적 이 있어야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⁷⁸⁾ 셋째, 범행에 있어서 시간적인 계속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76)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77)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6, 438면

7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적인 조직체는 비록 조직성을 갖고 있어도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⁷⁹⁾ 넷째, 통솔체계의 유무는 범죄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다중의 집합과 형법상 범죄단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⁸⁰⁾

한편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⁸¹⁾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형법 개정시 형법 제114조에 추가된 것으로, 법원은 중고차 판매 사기단에 대해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⁸²⁾

아직까지 저작권범죄에 대해 범죄단체·범죄조직죄를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없지만,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⁸³⁾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스포츠포츠 도박장 운영조직에 이어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과 관련된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다수의 저작권범죄 침해범에 대해 범죄단체나 범죄조직을 인정한 외국의 사례도 있다. 독일 법원에서는 불법복제한 영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저작물을 스트리밍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료로 이득을 위해온 영화 스트리밍 포털의 운영자 등을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⁸⁴⁾ 이 판결에서 형사처벌 대상자는 영화 복제물을 파일호스트에 업로드한 자, 업로드된 파일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환한 다음 다운로드 주소를 새로 부여하여 kino.to로 제공한 파일호스트, 제공받은 주소의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스트리밍 되는지를 점검한 후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운영자, 이러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한 자, 이 웹 사이트를 디자인한 자, 해당 사이트에 (불법) 광고를 제공

79)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6, 458면

80) 하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2018-3), 345면

8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8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8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84) AG Leipzig, Urteil vom 21.12.2011 - 200 Ls 390 Js 184-11

한 광고업자 및 중개인,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조직하고 관리한 자를 모두 포함하였다.⁸⁵⁾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서 2020년 6월 유럽 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공동으로 ‘IP 범죄와 중대범죄와의 연관성: 다중 범죄에 관하여(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Focus on Poly-Criminality)’ 보고서를 발표했다.⁸⁶⁾ 여기에서 지식재산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 활동과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즉, 위조 의약품 범죄, 마약범죄, 흉악범죄, 불법무기소지, 강제노동, 위조 식품 등 위조품과 강력범죄들이 연관되어 있고 범죄조직이 관여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다.⁸⁷⁾ 이렇게 볼 때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조직범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적용

형사처벌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침해자보다 침해가 가능하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침해자에 대한 특별예방과 유사한 침해자들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 즉 개별 침해자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은 서비스 운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침해행위 전반에 대해서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보다는 방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조각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법원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 침해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보아 처벌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대법원 판례 중 일부이다.⁸⁸⁾ 이 사건은 피디박스, 클럽박스, 엠파일 등 당시 유명한 웹스토리지 업체 대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방조의 고의,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기

85) 박희영, 「[독일] 영화 스트리밍 포털 운영자, 영리 목적의 저작권침해 범죄단체 조직죄로 유죄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저작권 동향 제7호, 2012, 2면

86) 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FOCUS ON POLY-CRIMINALITY, E U R O P O L (2 0 2 0 . 0 6 . 1 0 .) , <https://www.europol.europa.eu/publications-documents/ip-crime-and-its-link-to-other-serious-crimes-focus-poly-criminality>, (2020.09.09. 최종확인)

87) BIZWORLD 보도(2020.07.03.), “[글로벌 IP] “범죄조직까지 가세한 유럽의 지재권 침해”...유럽지식재산청, 유로폴과 ‘IP 범죄 보고서’ 발표”, (2020.09.09. 최종확인)

8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술적 조치 이행으로 인한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요건,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등 상당한 쟁점이 주장되고 판단된 사건이다.⁸⁹⁾ 이중, 사이트 운영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 요소인 방조의 고의 및 기술적 조치이행으로 인한 책임제한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방조행위 및 그 범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 판시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 파일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관리함으로써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6, 8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행위 및 범의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술적 조치 이행으로 인한 책임제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89) 이규홍·김기영·장현진·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 887면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하는 점에 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제1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 이용자에게 의한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8 기재의 각 저작재산권 침해사실을 알고서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바가 없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나 제103조 제5항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취한 기술적 조치는 원심 판시 '금지어 설정' 또는 '해시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뿐으로서, 이러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그 당시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적 조치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및 제103조 제5항이 규정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방조의 의미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후, 이 사건에서 사이트 운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 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법원의 기준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복제물 등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의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민사는 물론 형사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하였다. 일반적인 책임조각 사유인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기술적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금칙어 설정 또는 해시 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만으로는 당시 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로 보이지 않고, 사안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책임조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권리자의 대응 중 손해배상청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방조의 고의와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이후 사이트 운영자를 방조자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⁹⁰⁾

한편, 법원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저작물로 직접 연결되는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두더라도 이를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고단85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0고단 5038 판결

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라고 한다)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심판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외국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블로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소송제기 목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가급적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만을 통해서도 실질적 권리구제가 어렵다. 원고가 민사소송을 위한 정보수집을 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권리자가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을 통할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는 권리침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다소 간이한 소송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액의 증명 등 개인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는 변호사를 원고 대리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한 것이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권리침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집행은 불가능해진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권리침해자가 등기재산 등 쉽게 확인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2011. 12. 2. 개정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 규정을 두었고, 2009. 4. 22. 및 2011. 12. 2. 개정시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손해금액의 추정 조항을 두어 원고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권리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권리자의 대응 중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에 대해서 살펴본다.

권리주장자가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체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체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권리주장자는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03조의3 제1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정보제공을 거절하면, 권리주장자는 정보제공청구서에 자신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해당 복제·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사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을 기재하고,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또는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시행령 제44조의3, 제41조 제1항) 문체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03조의3 제1항)

권리주장자가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하면, 문체부장관은 저작권보호원 저작

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제103조의3 제2항) 심의를 요청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문체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03조의3 제2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체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문체부장관의 정보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3조의3 제3항) 이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서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44조의4 제4항) 문체부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103조의3 제3항) 위와 같은 정보제공은 권리자의 소송 진행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핵심요건인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다수의 경우 여전히 형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 문제점

우리나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정부기관의 행정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 및 권리자의 민사적 대응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기관의 행정적 대응 중 직접적 대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사이트 폐쇄와 문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 폐기, 삭제이다. 전자는 정부기관에 의한 가장 강력한 직접적 대응수단이지만, 사이트 폐쇄에 대한 일정한 요건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후자는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경우에는 강력한 집행력을 보여주었으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개개의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삭제한다 해도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접적 대응은 문체부장관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령으로, 이에는 침해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직접 삭제 또는 전송중단명령, 침해자의 계정정지 명령,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이 있다. 이러한 간접적 대응은 실효성에서 의문이 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제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과태료 처분 외에 상습적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형사처벌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크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제한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간접적 대응을 통한 제재는 침해자의 개정이 정지된다면 다른 계정을 이용할 수 있고, 게시판 서비스가 정지된다면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침해자에 대한 억제력 역시 한계가 있다. 불법 복제물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제재효과가 미비함은 문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 폐기, 삭제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및 명령요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문체부장관에게 각 사안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에 그쳐 독자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령은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전제로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대응의 한계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억제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권리자의 예방적 대응인 불법 전송차단 기술조치 요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저작권 직접 침해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는 정부기관의 간접적 대응과 동일한 한계가 있다. 사후적 대응으로서 불법복제 전송 중단요구도 마찬가지이다. 사후적 대응은 손해배상청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만, 온라인 저작권 직접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거나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온라인 저작권 직접 침해자에 대해 가장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적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수사 및 그 결과로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

사경과 경찰청의 협력이 중요하고 다양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저작권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경찰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간의 협력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인터폴 프로젝트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양 기관 간 형사정책 발굴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경찰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단속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고, 대형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보다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죄수익 몰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4.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실태와 한계점

가. 대응조직과 교육훈련

1) 대응조직

가) 문화체육관광부

(1) 저작권 침해 대응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은 저작권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그 중 저작권보호과는 불법 복제물 단속 및 방지기술 예방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⁹¹⁾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불법 복제물의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특사경을 운영한다. 불법 복제물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고시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한다.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하는 업무와 이를 위탁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전송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포함하는 건전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저작권보호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⁹²⁾ 한편, 문화통상협력과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이나 해외 저작권 보호·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업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9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31000000&pTeamCD=1371734#deptCont, (2020.12.02. 최종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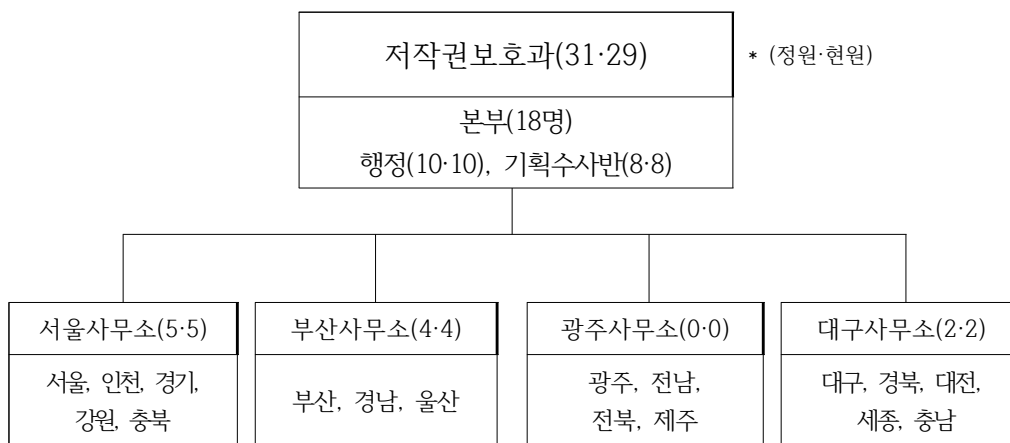
92)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31000000&pTeamCD=1371755#deptCont, (2020.12.02. 최종확인)

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⁹³⁾

(2) 저작권 침해 수사업무

특사경은 2008년 7월에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구 정보통신부 체신청 소속 특사경 59명 중 32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로 부서를 이동하였고, 2008년 9월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의 개정과 함께 34명 규모의 특사경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9년 5월에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팀을 분리하여 저작권보호과로 승격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편제가 되었다. 저작권보호과는 정원 31명, 현원 29명으로 본부에 18명, 4개 지역 사무소에 11명이 근무 중으로, 과장을 제외한 28명이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저작권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의 수사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전국 3,000여 개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⁹⁴⁾

[표 10] 저작권보호과 조직 구성 및 인원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20)

93)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31000000&pTeamCD=1371756#deptCont, (2020.12.02. 최종확인)

9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2.19.),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 (2020.12.08. 최종확인)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6호 및 제6조 제23호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소속 관서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저작권 특사경을 지정하고 있지만 수사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⁹⁵⁾ 2016년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634호)에 의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경영기획실, 온라인보호국, 현장대응국, 보호기반국,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채증을 통한 특사경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저작권법 제122조의 5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를 지원한다.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사무 지원은 현장대응국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권익보호국, 디지털성범죄심의회지원단, 정책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권익보호국 소속 저작권침해대응팀에서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 자료제출, 과태료 부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한 내용이나 협·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국내 서버는 사업자를 파악하여 삭제하고, 해외 서버는 접속을 차단하며 국가망을 관할하는 IP사업자(KT, SKT, LGU+)에게 해당 URL 주소를 전송하여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5)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https://www.kcopa.or.kr/lay1/S1T9C71-contents.do>, (2020.12.08. 최종확인)

라)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온라인 저작권범죄에 대해서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을 한다. 오프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국 소속 수사과에서 담당한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⁹⁶⁾ 사이버안전과는 범죄 신고·상담, 범죄정보분석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사이버수사과는 전국의 사이버수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한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과 분석지원을 하고 있다.

[표 1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업무내용

사이버안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배포 2.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3. 사이버범죄 예방 관련 연구, 기획, 집행, 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사이버수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연구, 기획, 집행, 지도, 조정 및 통제 2.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3.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 4.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공조수사
디지털포렌식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적 증거분석 관련, 기획, 지도, 조정 2.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3.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4.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경찰청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은 총 17개가 있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과 내지 수사과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주로 국내외 대규모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인지수사를 담당하고, 경찰서 수사과(사이버수사팀)는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진정사건을 담당한다. 실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와 협력하여 밤토끼 사건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96)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www/agency/orginfo/orginfo01.jsp#type9Pop>, (2020.07.13. 최종확인)

한편, 최근에 경찰청법이 개정되어 그간의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수사경찰은 새로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에서 관장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안전국도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수사본부에 편제될 전망이다.

2) 선발 및 교육훈련

가) 특사경 선발

특사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인사발령을 통해서 임명하고 있다. 경찰청이나 대검찰청과 같이 민간 IT전문가를 수사관으로 경력경쟁 채용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최근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증거수집 및 분석, 저작권 침해 관련 국제수사 공조, 저작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⁹⁷⁾ 그런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수사에 대한 장기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⁹⁸⁾ 저작권보호원은 온·오프라인 형태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다양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기술 연구 및 개발, 불법 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과 디지털포렌식 증거수집 및 분석,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 및 연구 등으로 다양한 직무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⁹⁹⁾

나) 특사경 직무교육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사경에 대한 별도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특사경의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또는 경찰청의 경찰수사연수

9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https://mcst.go.kr/kor/s_notice/notice/jobView.jsp?pSeq=15475&pMenuCD=0310000000&pTab=01&pAction=&pCurrentPage=1&pSearchType=01&pSearchWord=, (2020.12.08. 최종확인)

98) 직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경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수사관이 이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현직 공무원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직하기에는 동인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홍보와 훌륭한 면접을 통해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저작권범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99)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12C108/people/index.do>, (2020.12.08. 최종확인)

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대하여 총론, 권리자용, 수사기관용, 저작권보호원용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교재를 제작하여 자체 수사역량을 높이고 있다.¹⁰⁰⁾ 총론은 저작권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디지털 증거, 디지털포렌식의 개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권리자용은 저작권 침해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기관용과 보호원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 도구 및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사경과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저작권 침해 수사와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육훈련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교육훈련의 내용이 저작권법과 디지털포렌식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와 형사법에 대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2]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교재 세부내용

종류	대분류	내 용
총론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접권,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이해
	저작권 침해 사례와 판례	저작물성, 보호받는 저작물 범위, 저작자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사례와 판례
	디지털포렌식 일반	디지털증거 및 디지털포렌식의 의미, 유형과 도구
	디지털증거 유형과 유형별 수집절차	디지털증거의 유형, 통신정보수집절차,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증거법 일반이론, 디지털증거의 유효성 평가 절차,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디지털증거의 진정성 및 전문법칙, 관련 판례
권리자용	저작권 침해와 증거 수집 소개	저작권 침해와 증거 수집 방법 및 도구 소개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례별 증거 수집 방법	웹툰, 웹소설, 블로그, 스트리밍, 파일공유,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례별 증거 수집 방법
	증거 수집 도구 사용법	화면 캡처, 동영상 녹화, 표준시간 증명, 해시값 생성 및 기타 도구
	저작권 침해 신고	불법 복제물 신고 및 주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 이용 방법
수사기관용	디지털증거 수집·처리 절차	디지털 증거 수집·처리 절차 및 도구·장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및 유의사항	별건 증거,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 등의 압수·수색 절차 및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서류 및 사례	압수 관련 서류 및 작성 요령, 압수수색 및 분석 주요 사례
	공개용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압수·수색	압수 방법 결정을 위한 현장 분석 및 디지털 증거 압수

100) 권양섭 등,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교육 교재 개발」, 한국능률협회(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과제), 2019

보호원용	개요	업무 개요 및 디지털저작권 침해 수사 지원체계
	저작권 침해 유형별 수사지원 절차	웹하드, 토렌트, 웹툰, 헤비업로더 수사 지원 절차
	디지털포렌식 도구	사전조사용, 증거수집용, 증거분석용 도구

한편,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¹⁰¹⁾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5명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포렌식에 대한 미래 고급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되지만, 교육대상에 특사경이나 저작권보호원의 담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특사경 단속 활동과 직무범위

1) 특사경 단속 활동

특사경은 크게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처리와 기획수사로 나눌 수 있다. 즉, 특사경은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고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2013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렌트 사이트 및 모바일 웹하드 관련 사이트를 단속하여 운영자 및 업로더를 수사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 게임 사설서버 수사(2014년),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수사(2015년), PC방 영화 불법 공유 및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수사(2016년)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¹⁰²⁾ 이처럼 특사경은 자체적으로 또는 검찰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2018년부터 경찰청과 기획수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밤토끼’ 등 18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였다.¹⁰³⁾ 2019년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9개 사이트의 운영자 19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

10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3.16.), “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인재 기른다”, (2020.12.08. 최종확인)

102)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20

103) 연합뉴스 보도(2019.08.04.),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외국 사이트 합동단속”, (2020.12.03. 최종확인)

이트를 폐쇄하였다.¹⁰⁴⁾ 나아가 2019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간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웹툰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 압표 판매, 음원 사재기 등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대응하기로 하였다.¹⁰⁵⁾ 하지만, 여전히 웹툰 불법유통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는 2017년 110개에서 2018년에 잠시 주춤하더니 2019년에 244개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58개가 운영 중에 있다.¹⁰⁶⁾ 더욱 강력한 단속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고 특사경, 저작권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급대응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2018년부터 운영하였다.¹⁰⁷⁾

[표 13] 특사경의 기획수사 단속실적

연도별		기획수사 주요내용
2016	상반기	PC방 영화 불법공유 기획수사 (4개 PC방 - 국내 최초)
	하반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기획수사 (1개 사이트 - 국내 최초)
	연중	캐릭터 불법 복제물 유통업자 기획수사 SW 불법 업로더 기획수사 (웹하드 헤비업로더)
2017	상반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기획수사 (8개 사이트)
	하반기	캐릭터 불법 복제물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기획수사
	연중	SW 불법 업로더 기획수사 (웹하드 헤비업로더)
2018	상반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기획수사 [13개 사이트(웹툰 10개, 만화스캔 3개), 국내 4개 포함]
	상반기	캐릭터 불법 복제물 유통업체 기획수사
	하반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기획수사 (5개 사이트, 웹툰 2개, 토렌트 3개)
	연중	웹하드 불법 업로더 기획 수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2020)

2)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현재 특사경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사무를

104)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공동 보도자료(2020.01.28.), “2019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결과”, 경찰청 홈페이지, (2020.12.03. 최종확인)

105)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공동 보도자료(2019.10.10.), “불법 웹툰 유통, 매크로 압표 구매 꼼짝 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20.12.03. 최종확인)

106) 뉴스1 보도(2020.10.07.), “웹툰 불법유통 258곳 활개... 합법은 33곳 불과”, (2020.12.03. 최종확인)

107)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15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류콘텐츠가 중요해지면서 특사경의 사물관할을 저작권법에서 게임, 출판, 영화, 기타 콘텐츠에 관련된 법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유사한 불법행위로 특사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나 불법게임물 제작에 대한 단속사무로 한정하고, 많은 수사인력이 필요한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전담인력이 충분히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관할만 확대될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심각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 영화, 비디오물, 콘텐츠 등에 대한 특사경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불법행위인 게임산업법 상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사경을 도입하고, 나머지의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상 불법촬영물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상 불법스포츠토토에 대한 광고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사경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물관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형사범죄로 특사경이 처리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특사경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 14]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의 사물관할 확장 대상 법률 현황

분야	관련법률	관련조항	주요 수사 범위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금지조항 생략, 벌칙 전체 : 제44조~제47조】 ○ 게임이용 도박·사행행위 ○ 불법게임물 제작 및 배포 ○ 미신고 게임제공업 운영 ○ 등급위반 게임제공 ○ 사업주 양벌규정	○ 불법 사설 게임서버 수사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 단속 (예) 불법사설 '리니지' 게임서버 ○ 불법게임장 수사 - 사행성 목적으로 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단속 ○ 불법게임물 제작 수사 - 등급받지 않고 제작된 불법게임물 제작자 및 배포자 단속
출판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금지조항 생략, 벌칙 전체 : 제27조의3, 제27조의4】 ○ 간행물 부당한 구입 행위 ○ 관련된 자에게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정가 미표시 행위 ○ 사업주 양벌규정	○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 단속 ○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단속 ○ 정가를 간행물 등에 표시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 단속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금지조항 생략, 벌칙 전체 : 제93조~제97조】 ○ 상영등급을 미분류 영화 상영행위 ○ 상영등급 변조, 영화의 내용 변경 행위 ○ 사업주 양벌규정	○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단속 ○ 상영등급을 변조,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단속
콘텐츠	콘텐츠산업진흥법	【금지조항 생략, 벌칙 전체 : 제40조~제42조】 ○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 침해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 사업주 양벌규정	○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의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는 행위 수사 ○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행위 금지위반 수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20)

3) 특사경의 수사개시·진행권

2021.1.1.자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사경에게 수사의 개시와 진행권을 부여하였고,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제한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특사경과 검사와의 관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사경에게 인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사경은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보조자 지위에 있었으나 2021.1.1.부터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가 된 것이다. 검사의 지휘 없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어 그 지휘가 향상되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 중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즉 인지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호) 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손실, 수뢰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인데 그 범위의 최대 확장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일 것이다. 이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에 저작권법 위반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제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기업 경제비리 등이다. 여기에서 기업이란 경제적 규모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단지 피해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기업 경제비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생각하기 어렵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 조합선거 등이다. 이와 같은 범죄에 저작권법 위반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위사업범죄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죄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형 참사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다른 법률을 살펴보면, 대형 참사에 대한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발생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정

의하고 있다.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와 같은 개별적 범죄에 앞에 있는 ‘등’의 해석에 대해 열기주의인지 예시주의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경찰은 열거로 검찰은 예시로 보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따져 열기주의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예시로 보더라도 위 범죄에 준하는 정도의 범죄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등’에 포함되는 범죄라 볼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는 죄종의 제한이 없어 경찰공무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할 수 있고, 그 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는 할 수 없어 특사경과 경찰청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사경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면서 온라인도박이나 아동성착취물, 범죄수익 등 별도의 범죄를 확인한 경우 과거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수사하였으나 이제는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특사경이 관련 범죄를 확인할 경우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하거나 사건기록을 이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 저작권 침해 수사·포렌식기술

1) 저작권 침해 추적 기술¹⁰⁸⁾

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차단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더 이상의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시스템이다.¹⁰⁹⁾ 유통분석시스템(ICOP-T)은 토렌트¹¹⁰⁾에

108) 저작권보호원 내부자료, 2020

109) 서영호·유원영·김영모·김원겸,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기술적 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1), 2015, 24면

업로드 된 불법 복제물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ICOP-T를 이해하기 위해 토렌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사용자는 토렌트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먼저 토렌트 메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는 .torren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디렉토리와 파일명, 조각크기, 개별상태로 해시 값을 구성하고 있으며 메타파일에는 콘텐츠의 해시 값이 있어 식별자로서 역할을 한다.¹¹¹⁾ 모든 클라이언트 모듈은 다운로드 상대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데이터 파일은 토렌트 클라이언트가 중단되거나 다운로드가 끊어지는 경우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데 활용된다.¹¹²⁾ 트래커(tracker) 서버는 중심서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공유되는 파일들의 이름과 크기, 해시 값 등에 대한 메타 정보와 해당 파일을 공유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자들에게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제공한다.¹¹³⁾ 트래커 서버는 콘텐츠를 해시값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공유를 원하는 피어(Peer)가 요청하는 동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리스트(Swarm)을 알려주어 많은 피어(Peer)들로부터 동시에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통분석시스템(ICOP-T)은 수집된 시드파일의 정보를 이용하여 트래커 서버에 대한 자동 검색 및 수집을 하고, 공유정보를 식별하여 증거수집을 한다. 토렌트 시드파일 업로드 식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긴급대응저작물명 변형 콘텐츠 검출을 위한 한글 형태소 분석뿐만 아니라 저작물명 패턴 분석을 통한 유의어 목록을 구축하여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해서도 검출할 수 있다.¹¹⁴⁾ 토렌트를 통해 최초 유포되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긴급대응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불법유통 저작물을 근절하고, 최초 유포 사이트, 업로더 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¹¹⁵⁾

110) 이규대, “토렌트에서의 콘텐츠 저작권보호 방안”,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10(1), 2014, 37면: 토렌트는 개인 간의 파일교환에 있어서 운영의 관리 주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기술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시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어렵고, 공유대상 파일이 조각 파일 형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였는지 구분이 어렵다.

111) 김종원,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대응 기술 현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1(2), 2013, 46면

112) 김종원,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대응 기술 현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1(2), 2013, 47면

113) Ahnlab 보안 이슈(2014.08.01.), “[Tech Report]P2P 기술의 그림자, 불법 파일 공유를 막아라”, (2020.12.03. 최종확인)

114) 한국저작권보호원 보도자료(2019.06.13.),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저작권 보호 선진사례로 인정받다”, (2020.12.18. 최종확인)

115)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제안요청서」, 2018

2) 저작권 침해 포렌식기술

범죄자들이 해외 클라우드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고,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를 개설하거나 IPTV를 이용하여 영화·방송을 공유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해지고 있다.¹¹⁶⁾ 실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저작권 포렌식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2020년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에서 저작권 기술의 발전과 최신 트렌드, 새로 도입되어야 할 저작권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¹¹⁷⁾

[표 15] 최근 국내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현황

연번	연도	제목
1	2005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원문 서비스 프레임워크
2	2008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아키텍처 방안
3	2011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모방지 포렌식 마킹 메커니즘
4	2012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및 필터링 기술에 대한 연구
5	2012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포렌식 마크 기반 앱 저작권 보호 기법 연구
6	2013	GCST-SVD 기반 디지털 영상 워터마킹 방법
7	2014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오디오 포렌식마킹 시스템
8	2015	해상도에 따른 DWT 기반 디지털 영상의 강인성 블라인드 워터마킹
9	2020	멀티코어 기반 실시간 포렌식마킹 방법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장비와 전용 도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저작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제고하여 왔다. 2020년에는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제인정기관인 ANAB(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국내 최초로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하여 저작권 포렌식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였다.¹¹⁸⁾

라. 불법 온라인 저작물 삭제·차단

1) 자체 모니터링 운영 및 삭제·차단

저작권보호원은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권

116)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5호, 2009, 356면

117) 한국저작권위원회, “ICOTEC 2020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https://www.copyright.or.kr/kcc-tmis-icotec-conference-conference_kor.do, (2020.12.17. 최종확인)

118) 한국저작권보호원 보도자료(2020.03.02.),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공인 인정 획득”, (2020.12.08. 최종확인)

리를 침해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감시하고 침해자들의 IP를 추적하여 수사 자료로 제공한다.¹¹⁹⁾ 해외저작권센터(해외사무소)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지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저작물 유통현황 조사, 현지 저작권 법제·정책·산업·시장 등 정보 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¹²⁰⁾ 해외 사무소는 중국(베이징),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에 있고,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을 신설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재택 근무하는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카페·블로그·토렌트사이트·웹하드 등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¹²¹⁾

또한, 2018년 11월부터는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종합상황실은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보호대상 저작물을 하루 단위로 수집하고 침해상황 대처에 신속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모니터링과 침해대응 역량이 향상되었다.¹²²⁾ 2020년에는 특정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사이트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¹²³⁾ 신고 접수된 불법 복제물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복제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계도성 행정조치를 한다.¹²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응하였고, 이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 복제물 삭제·전송중단 시정권고를 이행하도록 하였다.¹²⁵⁾

또한, 저작권보호원은 접속 차단한 원천사이트의 대체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시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접속차

119)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opastory&logNo=222156136437&categoryNo=16&parentCategoryNo=1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2020.12.15. 최종확인)

120)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2020.12.01.), “한국저작권위원회 필리핀 매트 로마닐라 사무소장 직위공모”, (2020.12.15. 최종확인)

121) 웹페어뉴스 보도(2013.06.21.), “‘온라인 불법 복제물 감시’에 장애인 250명 추가 투입”, (2020.12.02. 최종확인)

122) 한국저작권보호원 보도자료(2019.06.13.),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저작권 보호 선진사례로 인정받다”, (2020.12.09. 최종확인)

123) 연합뉴스 보도(2020.08.13.), “비공개 사이트 불법 복제물 신고하면 활동비 드립니다”, (2020.12.09. 최종확인)

124) 한국저작권보호원 보도자료(2020.08.13.), “비공개 사이트 불법 복제물 공익신고제 시범 운영”, (2020.12.09. 최종확인)

125) 대한민국 정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 연차보고서」, 2019, 199면

단 조치를 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계가 있다.¹²⁶⁾

2) 플랫폼 삭제차단

불법저작물이 과거에는 토렌트나 포털 등에서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외 SNS 기업은 자체적으로 삭제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약관을 위반한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에서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IP를 차단하기도 한다. Google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을 경우 검색에서 링크를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²⁷⁾ 2017년 한 해 동안 콘텐츠 권리자들이 신고한 URL 수는 9.92억 건으로 이 중 95% 이상을 링크에서 삭제하였다.¹²⁸⁾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저작권 위반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¹²⁹⁾ 법집행기관 전용 신고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내용,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각 양식에 따라 연락처 정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¹³⁰⁾ 신고를 접수하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원저작자가 맞는지 검토한 후,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안내메일을 발송한다.¹³¹⁾

마. 저작권 피해 해외소송 지원

1) 지원체계와 내용

126) 아시아경제 보도(2020.10.22.), “[2020국감] “불법 복제물 피해 7조5000억 원...감시·공조 강화해야””, (2020.12.09. 최종확인)

127) Google 투명성 보고서,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copyright/overview?hl=ko>, (2020.12.09. 최종확인)

128) Google Korea, 「구글이 저작권 침해에 맞서는 방법」, 2018, 18면

129) Facebook Help Center,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758255661104383>, (2020.12.09. 최종확인)

130) Facebook 저작권 신고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758255661104383>, (2020.12.10. 최종확인)

13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케팅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저작권 신고법, 신고 해결법”,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usicd&logNo=222063093889>, (2020.12.10. 최종확인)

지식재산권 분쟁 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24.7%에 불과하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¹³²⁾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에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¹³³⁾ 저작권위원회는 국가별 법제 정보, 등록제도, 침해대응, 법령·정책, 기관정보 등 해외저작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³⁴⁾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 인터넷법원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소송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있다.¹³⁵⁾ 국내 콘텐츠 업체 사업자 및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미주, 동남아 저작권 유통 계약서 작성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동남아 진출을 위한 법률 컨설팅(계약서 검토 등) 및 지원 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였다.¹³⁶⁾

해외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경쟁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¹³⁷⁾ 안정적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법률자문·침해조사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이다. 해외 저작권 소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해 1개 사 당 4건(소요비용의 50%)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조사비용(최대 70%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¹³⁸⁾ 2020년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특허보호전략, 상표·디자인 보호전략의 유형으로 최대 총사업비가 50백만 원, 40백만 원으로 각각 책정하였다.¹³⁹⁾ WIPO 조정 및 중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500만 원 정도의 실비를

132) 임소진·조남권·김애리,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조사·분석 연구 -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과제), 2018, 52면

133) 전자신문 보도(2020.06.17.), “부처·공공기관·민간 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2020.12.03. 최종확인)

134)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usa/emergency_response.do, (2020.12.03. 최종확인)

135) IPDaily 보도(2020.07.22.), “온라인 저작권 소송, 1심 판결까지 단 ‘10일’이면 끝!.. 中 인터넷법원”, (2020.12.03. 최종확인)

136) 한국저작권보호원 알림·소식 자료(2020.05.02.),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안내”, (2020.12.03. 최종확인)

13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분쟁 초동대응지원,
<https://www.koipa.re.kr/business-initialresponse.php>, (2020.12.11. 최종확인)

13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IP-DESK, <https://koipa.re.kr/business-weak4.php>, (2020.12.03. 최종확인)

139) 메카 특허법률사무소(2020.07.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년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수시모집)”, (2020.12.11. 최종확인)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해외 저작권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국내 저작권 침해대응의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배상까지 받아내는 사례가 있지만 해외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승소하더라도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¹⁴⁰⁾ 그럼에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소송지원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해외소송 사례

가)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미르의 전설2는 지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었고,¹⁴¹⁾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붐을 일으켜 많은 영업실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시장의 인기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중 하나가 미르의 전설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게임을 개발, 운영,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문제였다. 위메이드는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한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썬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다.¹⁴²⁾ 이어서, 허위홍보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한화 약41억 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한화 약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¹⁴³⁾

나) TV패드

TV패드 사건은 셋톱박스에 의한 실시간 전송·재생을 통해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TV패드의 실시간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TV패

140) SBS 방송사의 저작권보호 담당자와 2020.12.10. 서면 인터뷰를 실시한 것임

141) 정현진, 「위메이드, 중국에서 서브 라이선스 침해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국제협력팀, 해외센터뉴스 제2020-43호, 1면

142) 매일경제 보도(2020.01.02.), “위메이드, 中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2020.12.11. 최종확인)

143) 매일경제 보도(2020.01.02.), “위메이드, 中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2020.12.11. 최종확인)

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뒤 화면에 나타나는 어플리케이션(APP)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실시간 또는 스트리밍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TV패드에 다운로드 되어있는 불법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콘텐츠는 ‘솔리브(Solive)’라는 앱으로 서비스되었다. 기기 구매자들이 방송저작물을 시청하는 과정은 ① 방송물이 서버에 저장되고, ② 서버에 저장된 방송저작물이 구매자(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기로 전송되고, ③ 이용자가 기기로 전송된 방송저작물을 시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¹⁴⁴⁾ 하지만 이는 방송사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국내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연합하여 크리에이티브 뉴 테크놀로지 유한공사(Create New Technology Limited. 이하 CNT), 쉘젠 그레이트비전(Shenzhen GreatVision), 후아양(Hua yang International), Media Journal이 복제권·배포권·공연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적 보호장치 우회에 관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⁴⁵⁾ 원고는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KBS 아메리카로 국내 지상파 3사의 미주법인 기업(이하 지상파 3사)들이고, 피고는 ‘TVpad’라는 셋톱 박스의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었다.¹⁴⁶⁾

중국 기업인 CNT가 제조한 TV패드는 기기를 구입 후 설치하기만 하면 별도의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고 아시아 채널의 대부분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다. 유통업자들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기기를 유통했다. TV패드 소송의 특이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TV패드를 구입해 사용한 식당 주인도 소송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 첫 법적공방에서 TV패드 판매업자들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대상은 TV패드 판매업자가 아닌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지상파 3사는 TV패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 기기 유통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2014년 6월 ‘긴급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유

14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11월호 사건과 판례 - 셋톱박스에 의한 실시간 전송-재생은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https://m.blog.naver.com/kcc_press-221575809113, (2021.01.10.최종확인)

145) 이재호·김희경, “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6, 2019, 37-36면

146) Munhwa Broadcasting Corp. v. Create New Technology (HK) Co., Ltd., 2015 WL 9694889

로 원고측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TV패드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¹⁴⁷⁾ 서울중앙지방법원은 ‘TV패드 구매자들이 콘텐츠를 받는 동시, 다른 구매자에 재전송하는 새로운 파일 공유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TV패드 구매자 역시 콘텐츠 전송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국내 TV패드 유통업체 크레블의 방송사 3사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방송 3사에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¹⁴⁸⁾

다) 한국 NEXON v. Tencent QQ Hall"사건¹⁴⁹⁾

2007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한국넥슨홀딩스(이하 한국넥슨)가 선전시 텐센트컴퓨터시스템즈(이하 텐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혐의로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텐센트의 QQ당 게임이 넥슨의 카트라이더 게임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의 표절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원고 한국 넥슨은 온라인 게임 BNB의 저작권자이고, 2002년에 상하이 성다이인터넷발전유한공사(이하 성다이)와 합작해 원고 대리인 2003년에 “카트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이 게임을 운영했다. 이 게임은 중국 출시 후 시장 기반을 갖추면서 인지도가 높은 레저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4년 말 “QQ당”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기 시작한 피고 텐센트는 원고 “카트라이더”의 게임의 게임 형태, 콘텐츠, 미술 편집 등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는 이유로 2006년 저작권 침해와 부당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QQ당”온라인 게임 또는 저작권 침해 내용을 삭제와 함께 50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피고의 “QQ당”게임이 카트라이더 게임 전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게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자작품, 미술작품 및 조작방식 등 다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¹⁵⁰⁾ 원고는 카트라이더(포포당:泡泡堂)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당(堂)이라는 글자가 게임의 특징을 교묘하게 결합해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한

147) 대전지방법원 2015.3.18. 선고 2014카합50121 판결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4. 선고 2014가합534942 판결

149) law-lib 보도(2008.01.31.), 网络游戏的知识产权保护 - “韩国NEXON诉腾讯QQ堂”案引发的思考, (2020.12.11. 최종확인)

150) npc.gov,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05/content_4600.htm,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1993년 제정)

것은 원고가 처음이다. 피고가 게임을 “QQ당”으로 명명한 것도 같은 “당”으로, 이용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이다. 중국 고유의 어휘 중에 “당(堂)”자를 원고가 온라인 게임 분야에 적용한 명칭이 독창적이라고 해도 “당(堂)”자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QQ당”은 카트라이더와 교하여 “당”을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음, 자형 또는 의미 면에서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게이머들은 “당”을 공유한다고 해서 둘을 혼동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경쟁행위는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

바. 한계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특사경을 운영하여 왔고, 2016년에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경찰 및 검찰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여 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특사경에 대한 인력증원이 거의 없다. 특사경은 인사발령이 순환보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 침해 수사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여건이 못 된다. 특사경과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특사경의 사물관할을 저작권법에서 게임산업법,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의 범위를 넓힌다고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시급하므로 우선 저작권과 유사한 게임산업법의 일부 범죄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최근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특사경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이 부여된 만큼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특사경과 저작권보호원은 저작물 추적과 포렌식기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지만, 기술환경의 급변으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저작권 피해에 대해서 해외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원범위와 금액이 미비한 실정이다.

5.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협력과 시사점

가. 저작권 보호 국제협력 활동

1) 저작권범죄 대응 국제협력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개설되고 있어 국제협력과 공조수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해외 사이트가 2017년에 19개에서 2020년에 145개로 증가할 만큼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¹⁵¹⁾ 여기에 범죄자들은 해외 클라우드, 암호화폐 그리고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이거나 국외에 거주할 경우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¹⁵²⁾ 따라서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면서 저작권 개발 및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2012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에 대한 협력을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존중 촉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3년에는 WIPO와 공동으로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¹⁵³⁾ 2018년에 WIPO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 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인 육성을 위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 연수’를 개최하였다.¹⁵⁴⁾ 최근에는 서울에서 WIPO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한류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참가국 간에 저작권 제도의 개선과 인식을 제고하였다.¹⁵⁵⁾

15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04. 최종확인)

15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04. 최종확인)

15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05.20.),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 활성화 모색”, (2020.12.04. 최종확인)

15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05.21.),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2020.12.04. 최종확인)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를 개최하여 왔다.¹⁵⁶⁾ ICOTEC은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관련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¹⁵⁷⁾

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한 국제협력

정부는 2021년에도 4조 793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편성하고, 총 42개 기관에서 1,66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¹⁵⁸⁾ 이중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총 146억 6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WIPO 신탁기금 11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저작권침해 대응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⁹⁾ 경찰청도 과학수사, 치안역량, 국제범죄 대응 등과 치안 관련 사업으로 26억 1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사업예산은 없다.¹⁶⁰⁾ 따라서 저작권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건축, 전문가 파견, 초청교육, 기자재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축된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해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에도 부합하여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¹⁶¹⁾

155)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장리포2: 2019 WIPO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 월간 저작권문화 제 297권, 2019, 32-33면

156) 2020년 ICOTEC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로 11월 4일에 개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ICOTEC”, https://www.copyright.or.kr/kcc/tmis/icotec/conference/conference_kor.do#none, (2020.12.05. 최종확인)

157)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8년 기준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2019, 54-57면

15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 35-1호), 2020.07.08, 27면

15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 35-1호), 2020.07.08., 111면

16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 35-1호), 2020.07.08., 146면

161) UN SGD(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은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를 키워드로, 갈등, 불안, 약한 제도, 제한된 정의 접근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전제 아래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 제도 및 포괄적 행정제도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협력¹⁶²⁾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회원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문학·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1967년 WIPO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UN 산하 전문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UN 경제이사회에서 관할하고, 각종 지식재산권 조약을 관장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역할을 주도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 및 방송이나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 등과 같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24개 국제조약의 제·개정 및 관리 업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출원 및 등록 시스템을 운영,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국제출원 및 등록시스템을 운영 및 효율적인 권리등록 지원 업무, 국제특허출원제도(PCT) 및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제도와 디자인 등록을 위한 헤이그시스템 운영 업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업무 전산화 주도 및 지원 업무,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연구 및 국제규범을 제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¹⁶³⁾

우리나라는 1979년 WIPO에 가입하였고, 2020년 현재 WIPO에서 관할하는 26개 국제 조약¹⁶⁴⁾ 중 저작권 분야 15개 조약 가운데,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r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위성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루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한다. UN 홈페이지, “Goal 16: Promote jus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eace-justice/> (2020.12.06. 최종확인)

162)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현,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233-240면

163) 신지연·박재원, 「WIPO 중단기정책 및 예산·사업운영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연구과제), 2011, 16-17면

164) WIPO는 WIPO 설립 협약, 지적재산권 보호조약 15개(세계저작권협약, 마드리드 협정, 상표법 조약(TLT), 나이로비 조약, 특허법 조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네바 음반협약, 위성협약, 워싱턴 조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 조약(WPPT),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마라케시 조약), 국제보호 등록조약 6개(특허협력 조약(PCT), 마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분류 조약 4개(스트라스부르 협정, 니스 협정, 비엔나 협정, 로카르노 협정) 등 총 26개 조약을 관장한다. WIPO, WIPO-Administered Treaties, <https://www.wipo.int/treaties/en/> (2020.12.04. 최종확인)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제네바 음반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마라케시 조약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등 9개 조약에 가입하였다.¹⁶⁵⁾

나.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 수사절차

1) 국제공조 방식 분류

국제공조 방식은 전통적으로 공식 협력(Formal Cooperation)과 비공식 협력(Information Cooperation)으로 구분하였고, 공식 협력에는 형사사법공조 (Mutual Legal Assistance, MLA)와 범죄인인도(Extradition), 비공식 협력에는 인터폴 공조가 있었다.¹⁶⁶⁾ 국제공조 주체는 사실상 국가만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폴 외에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체가 등장하면서 역할을 확대하고, 페이스북, 금융기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공조의 방법이 국가 대 국가에서 국가 대 국제기구, 국가 대 기업 등으로 다양해졌다. 공식 협력은 종전과 같지만, 비공식 협력은 인터폴 공조에서 수사기관 공조, 국제기구 공조, 민간기업 공조로 다양화되고 있다.¹⁶⁷⁾ 이때, 인터폴 공조는 국제기구 공조에 포함된다.

165)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new-law-precedent-list.do#03>, (2020.12.0 4.
최종확인)

166) 경찰청,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2

167) 김기범·조성용·Emilio C·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과제), 2015, 148면

[표 16] 국제공조 방식 재분류

구 분	전통적 분류	새로운 분류
공식 협력 (Formal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비공식 협력 (Informal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폴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기관 공조(경찰간, 검찰간) 국제기구 공조(인터폴, 유포폴 등) 민간기업 공조(구글, 애플 등) 국외도피사범 송환

(출처: 김기범·조성용·Emilio C·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일부 수정·보완)

2) 국제공조 방식 세부내용

가) 공식 협력 방식

(1)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소·재판 절차와 관련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해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의미한다.¹⁶⁸⁾ 개념은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협의의 개념은 증인·감정인 심문, 물건인도, 압수·수색, 문서송달, 정보 제공 등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 범죄인 인도를 포함하며 최광의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에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형사절차의 이관을 포함한다.¹⁶⁹⁾ 본 보고서에서는 범죄수사에 국한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¹⁷⁰⁾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조약 체결국은 조약에 의하고, 미체결국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절차를 따른다.¹⁷¹⁾ 공조대상 범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는 “공조의 대상이 되어있는 범죄”라고 정의(제2조 제4호)하고 있을 뿐, 중대한 범죄의 죄명이나 법률, 일정한 조건 이상의 양형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그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이다. 공조범위는 국제형

168)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51면;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2012, 19면

169)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1990.11, 219-220면;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51면

170)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51면

171) 경찰청,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2

사사법 공조법에 ①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② 서류·기록의 제공 ③ 서류 등의 송달 ④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⑤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인도) ⑥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하고 있다.(제5조) 공조절차는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공조요청서를 받아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서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외교 경로로 피요청국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¹⁷²⁾ 실제 북한발 해킹 및 디도스공격 사건을 수사할 때에 중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파밍, 섹스토션 및 도박사이트를 수사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¹⁷³⁾

(2)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는 한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강제송환을 요청하는 공식절차로 요청하는 국가에서 재판을 열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함이다.¹⁷⁴⁾ 범죄인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과 범죄인 인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제6조) 형사사법공조에서는 공조범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인도청구 절차는 형사사법공조절차와 동일하다.(제42조, 제43조) 범죄인 인도법은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두고 있다.(제7조) 우리나라는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용의자에 대해 거절사유가 없다고 보고 필리핀에 범죄인

172) 조선훈, “범죄수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 국외도피 범죄자 조사 및 송환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2010, 264면; 경찰청,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2

173) 경찰청 내부자료, 2016

174)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2012, 19면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체포 후 인도에 실패하였고, 결국 필리핀에서 저지른 별도의 해킹범죄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가 아닌 강제송환으로 인도된 사례가 있다.¹⁷⁵⁾ 한편, 필리핀은 2000년에 Love Bug 바이러스를 유포한 범죄자 (Onel de Guzman)에 대한 미국의 인도요청에 자국법에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하지 않았다.¹⁷⁶⁾ 영국은 2001년에 미국의 NASA 등을 해킹한 혐의로 체포된 자국민 (Gary McKinnon)에 대해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가혹한 형벌이 예상되어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였다.¹⁷⁷⁾ 나아가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Welcome To Video”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¹⁷⁸⁾

나) 비공식 협력 방식

(1) 법적근거

비공식 협력은 국제공조수사 측면에서는 수사기관 협력, 국제기구 협력, 민간기업 협력의 방식이 있고, 범죄인 신병 확보 측면에서는 국외도피사범 송환 방식이 있다. 비공식 협력은 상대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 이전에 형사법규, 수사절차 및 권한을 파악하거나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용된다.¹⁷⁹⁾ 조약과 같은 구속성을 가지지 않고, 상호주의에 의한 자발적 협력이기 때문에 당사국 간 신뢰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¹⁸⁰⁾ 협력의 범위는 기술적·법률적 조력, 용의자 식별 및 가입자 정보 요청, 공동수사 착수, 데이터 신속보존, 용의자 가체포(provisional arrest of a suspect),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ISP의 저장정보 확보 등 다양하다.¹⁸¹⁾ 용

175) 경찰청 내부자료, 2016

176) SUSAN W. BRENNER, 『Cybercrime - CRIMINAL THREATS FROM CYBERSPACE』, PRAEGER, 2010, pp.33-35; 강수진,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설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경찰청 연구용역), 2013, 47면

177) SUSAN W. BRENNER, 『Cybercrime - CRIMINAL THREATS FROM CYBERSPACE』, PRAEGER, 2010, pp.51-55

178) 법률신문 보도(2020.07.06.), 「[판결] 서울고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2020.7.19. 최종확인)

179) UNODC,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Draft)』, 2013, p.187

180) 이동희, 「국제 사이버범죄 아카데미 모델 개발」, 경찰대학교(경찰청 연구용역), 2010, 71면

181) UNODC,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Draft)』, 2013, p.201

의자 가체포, 압수·수색은 원래 공식적 협력의 대상이지만 해당국에서 협조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비공식 협력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비공식 협력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인터폴의 공조범위에 대하여 ①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②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 조회 ③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제38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2)

비공식 협력은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¹⁸²⁾ 서울고등법원도 국정원 직원이 중국 및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피의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촬영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¹⁸³⁾ 즉,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위법한 수사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유형

(가) 수사기관 공조

수사기관 공조는 각국의 수사기관이 외교 경로나 법무부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 대 경찰, 검찰 대 검찰 등과 같이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하는 방식을 말한다.¹⁸⁴⁾ 이는 상대국의 담당자와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상대국의 동의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전화, 공문서, 이메일, SNS 등 공조방법에 제한이 없고, 가입자 정보, 접속기록,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 복제에서 상대국의 협조 정도에 따라 데이터 보존, 차단, 금융계좌 지급정지까지 다양한 공조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전자우편 압수수색까지 협조가 가능한 경우

182)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판결

183)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184) 김기범·조성용·Emilio C·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48면

도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하고 있다. 최근 소위 “N번방”, “박사방”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청에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과 국제공조를 수행한 것 역시 수사기관 공조라고 볼 수 있다.

(나) 국제기구 공조

국제기구 공조는 개별국가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인터폴이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유로폴, 국제온라인아동음란물대응협의체(VGT),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자금세탁 관련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 다양한 기구들이 등장하면서 공조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인터폴은 2013년 싱가포르에 인터폴 제2청사(IGCI)를 신설하여 사이버범죄 수사조정, 정보공유, 압수수색·체포 지원 등을 주도하면서 공동수사의 조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실제 유로폴,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동음란물 사건인 “Strikeback” 작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여 필리핀에 있는 섹스토션 조직을 검거하기도 하였다.¹⁸⁵⁾ 유로폴은 인터폴과 달리 수사권이 있는 조직으로 2013년에 유럽사이버범죄센터(EC3)를 신설하여 EU 소속 국가 및 세계 각국과 아동음란물·봇넷·비트코인 등에 관한 공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¹⁸⁶⁾ 나아가 최근에 암호화폐 자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베스트믹스(Bestmixer),¹⁸⁷⁾ 마약과 총기거래를 하는 비밀메신저인 인크로챗(EncroChat)¹⁸⁸⁾을 단속하기도 하였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발령 2019. 4. 22.], [경찰청훈령, 2019. 4. 22. 전부개정])을 개정하여 국가중앙사무국의 기능 12가지를 명시하였다. 즉, 1.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와 관련된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3. 국제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4. 국외도피사범 검거 관련 업무, 5.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 업무, 6. 인터폴 총회 의결 사안의 집행, 7.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의 경찰업무 관련 상호 업

185) 인터폴 홈페이지, <https://www.interpol.int/Crime-areas/Cybercrime/Operations/Operation-Strikeback2>, (2020.07.19. 최종확인)

186) 유로폴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uropol.europa.eu>, (2020.12.11. 최종확인)

187) Europol, “MULTI-MILLION EURO CRYPTOCURRENCY LAUNDERING SERVICE BESTMIXER.IO TAKEN DOWN”, 2019

188) 매일경제 보도(2020.07.03.), “믿었던 '비밀메신저' 해킹당해...유럽 범죄자 840여명 '소탕'”, (2020.07.19. 최종확인)

무협력, 8. 국가중앙사무국 구성원 및 관련자 교육, 9. 인터폴 협력관의 선발 및 운영, 10. 인터폴 전산망 운영, 11.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구성원 등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제8조) 나아가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공조를 총괄”하며 1. 일반 정보유통 업무, 2. 범죄 관련 정보유통 업무, 3. 효율적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지도·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 따라서 국가중앙사무국은 경찰의 사건수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와 국제공조를 총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 군 수사기관, 정보수사기관은 경찰의 국제공조 사건만을 처리하는 채널로 인식하고, 경찰청 역시 타 수사기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활용성이 낮다.

(다) 민간기업 공조

국제공조는 국가 대 국가 간 공조를 기본모델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민간기업과 직접 공조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역외에 있는 페이스북, 구글 등 ISP와 금융기관에게 가입자 정보, 접속기록, 결제정보,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메일해킹 무역사기(BEC), 피싱·파밍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실제 경찰청은 2015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이 해외은행으로 이체되자 홍콩경찰과 홍콩은행과 협력하여 은행계좌를 동결시키고 피해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¹⁸⁹⁾ 공조절차는 국내법과 ISP·금융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또는 공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ISP는 전 세계의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팩스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정보제공요청을 접수한다.¹⁹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민간기업은 가입자 정보

189)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 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과제), 16-45-01, 2016, 120면

190) 김기범·조성용·Emilio C·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47면

와 접속기록만 제공하고, 전자우편 내용이나 금융거래내역은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르고 있다.¹⁹¹⁾

[표 17] 글로벌 인터넷기업과 국제협력 방식

구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	트위터	애플	라인	이베이페이팔	스카이프	MS
영장 필요	○	○	○	공문 가능	X	○	○	○ (IP. 허서)
요청 방법		이메일	팩스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팩스
협조 자료	가입정보, IP	가입정보, IP, IMEI	가입정보, IP	가입정보, IP, 구매 기록	가입정보, IP	가입정보, IP, 판매 기록 등	가입정보, IP, 수발 신내역	가입정보, IP
법집행 기관 삭제요청	X	○	○	X	X	X	X	X
수사관 직접 삭제요청	○	○	○	○	X (중앙)	○	○	○

(출처: 경찰청 매뉴얼, 2018, 일부 수정·보완)

(라) 국외도피사범 송환

형사사법공조의 비공식 협력으로 수사기간 공조, 국제기구 공조, 민간기업 공조가 있듯이 범죄인 인도의 비공식 협력으로 국외도피사범¹⁹²⁾ 송환이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 반납명령을 하여 부적격 체류 외국인으로 만들어 추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여권법 제12조, 제19조)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범죄인 인도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하게 인도받는 것이 쉽지 않

191) 김기범·조성용·Emilio C-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47면

192) 경찰청, 「2016 경찰백서」, 359면; 국외도피사범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거나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를 말한다.

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범죄인을 송환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형사사법공조의 비공식 협력인 인터폴 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근거가 있으나, 범죄인 인도의 비공식 협력인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 인도법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가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¹⁹³⁾가 사실상 국제영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긴급인도구속을 할 수 있으나,¹⁹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소재를 발견하더라도 국내 체류사실 통보, 강제추방 또는 사후적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을 뿐 범죄자를 체포·구속할 수 없다.¹⁹⁵⁾

3) 국제공조 증거법적 쟁점

가) 쟁점

국제공조 실무상 인터폴 공조는 1개월 내지 6개월, 형사사법공조는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수사상 긴급성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절차 대신 각 국 수사기관 상호 간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외국경찰의 수사활동을 지원해주고, 국제형사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경우(이하 ‘①의 경우’라 함),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 경찰로부터 디지털증거를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또는 인터폴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이하 ‘②의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디지털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이 증명되었는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디지털 증거가 진술증거에 해당하고 전문증거라면 위 조건에 더하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자백에 의한 간이공판절차의 증

193) 2017년에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을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 사범 ②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사범 ③ 다액(5억 원 이상) 경제사범 ④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에는 영장 발부 대상자 중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한 대신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도박 등을 고려하여 조직범죄를 포함하고, 경제사범의 피해규모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194) 윤성철, 「인터폴 적색수배서(Red Notice)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 2007, 9면

195) 경찰청,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2

거동의 간주, 개별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동의 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5에 해당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나) 해외에서 확보한 증거의 동일성 입증

대법원은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은 피압수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해시값을 확인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㉓ 압수 수색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재생, 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㉕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¹⁹⁶⁾ 그러다가 이석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도록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¹⁹⁷⁾ 실무상 ①과 ②의 경우에는 외국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시값을 생성하지 않았거나 생성했어도 피압수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증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㉓ 또는 ㉔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당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①의 경우 현장에서 외국경찰과 함께 해시값을 생성하고, 외국경찰의 협조를 통해 피압수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받고, 그 과정을 녹화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②의 경우는 외국경찰이 이미 압수를 마친 상황으로 ①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 ㉕의 경우 외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경찰과 사전 협조를 통해 디지털증거 압수 시 위 ①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19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97)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다)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위반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국제형사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형사재판에서 적법절차 이념을 관철하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란 헌법상 적법한 절차와 동일한 의미로,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절차를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당한 절차, 즉 근본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라 한 바 있다.¹⁹⁸⁾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 하여 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라 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이 국제적인 협력 증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국가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¹⁹⁹⁾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 단,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는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1 내지 4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증거를

198) 이주원,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20, 364-365면

19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권 2호, 2005

수집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원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⁰⁰⁾

4) 평가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간 공식적 절차로 상호 간에 이행의무가 있고, 증거능력 면에서도 다른 어떠한 유형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주로 범죄 발생 이후 사후적 공조수단으로 활용되고,²⁰¹⁾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이버수사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양자 조약이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과 달리 “데이터 긴급보존 명령” 등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비공식 협력인 국제수사공조는 피요청국이 이행할 의무가 없고, 국가별로 증거능력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절차가 간편·신속하여 추적 및 증거확보에 유용하다. 국제기구 공조는 종전에는 국가가 개별 국가와 직접 협력하여 공조수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훨씬 빨라져서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²⁰²⁾

하지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비공식적 협력 중 인터폴 공조만 언급하고 있고, 그것도 공조의 범위가 협소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개괄적 수권조항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범죄인 인도도 공식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조약 당사국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재판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외도피 사범 강제송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역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다. 인터폴 국제협력과 적색수배

1) 인터폴의 국제협력

20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201) 조선훈, “범죄수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 국외도피 범죄자 조사 및 송환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2010, 269면

202) 김기범·조성용·Emilio C·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145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는 각 국가의 경찰조직이 연대하여 외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회원국 경찰들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국가 간 기구이다.²⁰³⁾ 2020년 현재 194개국의 경찰 조직이 참여하여 부패, 통화·문서 위조, 아동범죄, 문화재, 사이버범죄, 마약, 환경, 경제, 무기 및 인신매매, 밀수, 국제범죄 조직, 대테러 등 18개 범죄에 대응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회원국이 상호간에 전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I-24·7)을 운영하고 있다.²⁰⁴⁾ 인터폴은 회원국의 의무 분담금과 협업사업 분담금 등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⁰⁵⁾ 경찰청은 인터폴의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5월에 80개국 130여 명이 참석한 인터폴 테러방지국(CT·CBRNE·BTPU) 주최 웨비나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국제자금세탁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주관 가상자산 권고안 마련에 앞서서 참석하였다. ²⁰⁶⁾ 9월에는 인터폴(금융범죄과)과 유로폴 등이 함께 개최하는 국제금융·가상자산 컨퍼런스(4th Global Conference on Criminal Finances and Cryptocurrencies)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인터폴 역량강화국(Capacity Building & Training, CBT)은 2020년 2월에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로 우리나라의 경찰대학을 지정하였다.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는 5개 대륙별로 역량이 우수한 경찰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거점으로 삼는 정책으로 2019년 5월 아메리카 지역을 대표하여 콜롬비아 경찰대학을, 그 후에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우리나라의 경찰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인터폴 역량강화국(CBT)은 2021년부터 인터폴 주관 국제경찰 교육훈련을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경찰청은 아시아지역의 치안협력에 관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

203) 진병동, “국제범죄에 대한 인터폴과 유로폴의 대응 및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경찰학회, 유럽경찰연구 2(1), 2018, 46면

204) 외교부(2007.09.28.), “[대테러] 인터폴 개요”, http://www.mofa.go.kr/www/brd/m_3993/view.do?seq=31546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6, (2020.12.18. 최종확인)

205) INTERPOL 홈페이지, “What is Interpol?”, <https://www.interpol.int/Who-we-are/What-is-INTERPOL>, (2020.12.04. 최종확인)

206) 경찰청 내부자료(2020.07.20.): FATF가 각국에 자금세탁 관련 법령을 마련하도록 실질적 이행력을 갖는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이 포함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각국의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G20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에 인터폴 금융범죄과가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우리나라 경찰청 대표단이 포함된 것으로, 향후 경찰 수사에서 가상자산 범죄자금 추적 및 법제 정비 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다.207)

2) 인터폴 적색수배 제도

인터폴 수배(Notice)는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국외도 피사범, 실종자, 우범자 및 장물 등 수배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서면으로 각 회원국에 배포하는 제도를 말한다.²⁰⁸⁾ 인터폴 수배의 종류는 적색수배서(Red Notice, 국제체포수배), 녹색수배서(Green Notice, 국제방법수배),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국제실종자수배),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무기 등 경고수배), 청색수배서(Blue Notice, 국제정보조회수배), 자색수배서(Purple Notice, 범죄수법수배·장물수배), 흑색수배서(Black Notice, 국제신원미상사체수배), ICPO-UN 안전보장이사회 특별수배서(Interpol-UN Security Council Special Notice)가 있다.²⁰⁹⁾

[그림 8] 인터폴 수배 종류별 구분



(출처: INTERPOL, “INTERPOL makes public appeal to help track environmental fugitives”, 2019.07. 04.,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19/INTERPOL-makes-public-appeal-to-help-track-environmental-fugitives>, (2020.12.05. 최종확인)).

먼저 적색수배서(Red Notice, 국제체포수배)는 회원국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적색수배 기준은

207) 경찰청 보도자료(2020.02.11.), “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편당사업’ 및 ‘글로벌 아카데미’ 조인식 개최”,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021115325591, (2020.12.05. 최종확인)

208) INTERPOL, Main, [interpol.int/About-INTERPOL/History](https://www.interpol.int/About-INTERPOL/History), (2020.09.09. 최종확인)

209) INTERPOL 홈페이지, “About Notices”, <https://www.interpol.int/How-we-work/Notices/About-Notices>, (2020.09.09. 최종확인)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 사범, (2)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3) 다액(50억 원 이상) 경제사범, (4) 기타 수사 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다. 각국의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범죄도 적색수배의 대상이 된다. 녹색수배서는(Green Notice, 국제방법수배)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그럴 위험이 큰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방지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국제실종자수배)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심신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무기 등 경고 수배)는 Security Alert이라고도 하고, 회원국 및 타 국제기구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이나 테러 관련 위협(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경고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청색수배서(Blue Notice, 국제정보조회수배)는 수배자의 신원 및 전과확인, 일반 형법 위반자로서 범죄인인도 청구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소재확인 요청 등 추가적인 범죄관련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수배서이다. 자색수배서(Purple Notice, 범죄수법수배·장물수배)는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 시 사용한 특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분석·관리하고, 그 수법을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각 국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의 기초자료 또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이다.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 문화재(미술품, 고대 유물 등)에 대해 발행되는 장물수배서도 자색수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장물의 상품적,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장물의 특징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발행한다. 흑색수배서(Black Notice, 국제신원미상사체수배)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사체의 사진·지문·치아상태·문신·용모 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자료를 수록한다. 마지막으로 ICPO-UN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수배(Interpol-UN Security Council Special Notice)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수배서이다.²¹⁰⁾

한편, 문화관광체육부는 2019년 10월에 호주 거주 피의자를 대상으로 불법 저작물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처음으로 요청하였다.²¹¹⁾ 이번 적색수배는 저작권범죄가 적색수배의 대상이 될 수

210) 신상철·임영호,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56권, 2016, 150면; INTERPOL 홈페이지, "About Notices", <https://www.interpol.int/How-we-work/Notices/About-Notices>, (2020.09.09. 최종확인)

211)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공동 보도자료(2020.01.21.),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2020.12.03. 최종확인)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종전에는 해외 용의자에 대해서 기소중지 후 입국시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적색수배를 통해 소재를 발견하여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라. 인터폴 프로젝트와 공조수사

1) 프로젝트 추진절차²¹²⁾

인터폴 프로젝트는 크게 ① 인터폴과 공여국 간의 협력약정(MOU) 체결, ② 인터폴의 컨셉 및 제안서 작성, ③ 인터폴 관리자 회의(Senior Management Board, SMB) 승인, ④ 인력채용 및 개시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① 인터폴과 공여국 간의 MOU 체결은 특별기여금 공여 배경 및 목적을 확인하고, 프로젝트의 활동내용, 특별기여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단계이다. ② 인터폴의 컨셉 및 제안서 작성은 체결된 MOU를 근거로 진행되고, 인터폴의 관련 부서의 협조와 동의를 받는 단계이다. 컨셉은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 이유와 활동계획을 인터폴 내부 관리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서는 추진배경, 추진 활동, 직원채용과 예산 등을 구체화시켜 인터폴 내부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 프로젝트의 타당성, 실행방안 및 행정적·재정적 내부 지원방안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폴의 관련기능에 전달하여 회람하기 때문에 각 기능별 조치에 대한 동의와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 ③ 인터폴 관리자 회의(Senior Management Board, SMB) 승인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확정·승인하는 공식적 의사결정 단계를 말한다. 관리자회의는 인터폴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모든 국장이 참여하는 정기 월례 의사결정기구로 주요현안 및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무총장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주재한다. 인터폴 관리자 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특별기여금의 규모와 시기 등을 감안하여 매달 열리는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마지막으로 ④ 인력채용 및 개시는 관리자 회의 통과 후 인사과(Human Resource Department)에서 담당자를 채용한

212) 인터폴 프로젝트 추진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2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인터폴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우리나라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는 인터폴에서 2019년까지 총 5년간 인터폴 작전관(Counter Terrorism and Enabled Crime) 등으로 근무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온라인도박·아동성착취물의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 현재 인터폴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역량강화를 위해 공여한 Glacy+(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하고 있는 경찰관, 인터폴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발도상국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참여하였다.

다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우리나라 프로젝트 공여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에 2021년부터 2015년까지 저작권침해대응 국제공조사업에 총 36억 원을 제공한다.²¹³⁾ 2021년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①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 수사, ②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²¹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다자간 국제협력과 공조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터폴에 특별기여금을 처음으로 공여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²¹⁵⁾

[표 18]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동검거	500	900	700	-	-
공조체계·국제회의	200	400	300	300	300

나) 경찰청

경찰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인터폴에 약 46억 원의 특별기여금을 공여하여 온라인 아동성착취물과 사이버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폴(금융범죄과)는 세핀(CEFIN-Cyber Enabled FINancial)이라는 프로젝트를 창설하였고, 관련하여 오퍼레이션 해치(Operation HAECHI)²¹⁶⁾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터폴 주도로 이루어지는 해

21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27. 최종확인)

21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27. 최종확인)

21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해외 저작권 분쟁에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2020.12.27. 최종확인)

216) ‘해치’는 한국에서 ‘도시를 재앙으로부터 수호’하는 의미를 가진 상서로운 동물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

치 작전은 특별기여금 공여 기간 중 매년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0년에 시행하는 1차 작전은 한국, 마카오, 홍콩,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0개 경찰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한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 필리핀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경찰청은 글로벌 수사작전을 통해서 다양한 수사기법을 학습하고, 국제협력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²¹⁷⁾

[표 19] 해치 작전 관련 사업별 주요 내용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사이버경제범죄
(기간) '20.3월~'21.2월(1년차) · 사업성과 반영하여 매년 갱신(~'22.2월, 46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9.6억('20년, 3년간 29억 원)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유포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 다크넷·가상화폐 이용 거래 포함 - 피해자 신원확인 및 구출, 배포자 특정·검거 활동 주력(아시아 중심) - 지역 연계성 감안, 전담팀은 싱가포르 인 터폴 국제혁신단지(IGCI)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5.7억('20년, 3년간 17억 원)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국제성 금융범죄(한국 피해사건 위주 선정) - 캄보디아·필리핀 등 콜센터 소재 및 중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시공조 - 전문가 그룹 참여, 수사기법 공유, 합동 분석·검거 활동 전개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2020.02.11.), “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편당사업’ 및 ‘글로벌 아카데미’ 조인식 개최”, 경찰청 홈페이지 (2020.12.05. 최종확인))

3)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공여 현황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진 GLACY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890,000유로를 공여하여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15개 국가의 사이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GLACY+)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²¹⁸⁾ 이 프로젝트는 정책과 전략(Policies and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글 이름 사용 취지를 담아 작전명으로 결정하였다.
 217) 경찰청 보도자료(2020.02.11.), “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편당사업’ 및 ‘글로벌 아카데미’ 조인식 개최”,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0211153255591, (2020.12.05. 최종확인)

218) 15개 우선순위 및 중심국가는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칠 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모리셔스,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통가 등이 선정되었다. Council of Europe, “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GLACY+)”,

Strategies), 법집행 역량(Law Enforcement), 형사사법 역량(Criminal Justice Capacities) 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정책과 전략, 형사사법역량은 유럽평의회에서 직접 담당하고, 법집행 역량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GLACY+ 프로젝트는 참여국의 국제공조 수사를 지원한다. 참여국이 디지털증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부서를 창설하고, 교육훈련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합동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사이버범죄와 디지털증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참여국의 경찰 역량과 수사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²¹⁹⁾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폴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 인터폴이 국가 간 기구로 각국의 경찰조직이 참여하고 있고, 아무래도 특별기여금 공여국에서 공조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자국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²²⁰⁾ 주요국 외에 UN 등 국제기구도 해당 기구의 활동 목적과 연계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glacyplus>, (2020.12.05. 최종확인)

219) INTERPOL, GLACY+,

<https://www.interpol.int/Crimes/Cybercrime/Cyber-capabilities-development/Glacy> (최종확인. 2020.

9. 8.); Council of Europe, “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GLACY)+”,

<https://www.coe.int/en/web/cybercrime-glacyplus>, (2020.12.05. 최종확인)

220) 전자신문 보도(2020.11.05.), “해외 저작권 범죄 단속을 위해 인터폴과 협력해야”, (2020.12.05. 최종확인)

[표 20] 주요국의 인터폴 특별기여금 공여 현황

지원국(기관)	지원 분야	기간	지원액
미국 특허청	불법품 및 위조품 밀거래	‘14년~’19년	EUR 269,000 (한화 약 3억 8천만원)
미국 에너지부	CBRNE 대테러(화학, 생물, 방사선, 핵, 폭발물)	‘16년~’21년	EUR 1,941,000 (한화 약 27억 3천만원)
EU	Shraka 프로젝트(중동과 북아프리카 대테러)	‘20년	EUR 15,000,000 (한화 약 210억 8천만원)
영국 환경부	불법품 및 위조품 밀거래	‘15년~’21년	EUR 483,000 (한화 약 6억 8천만원)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CBRNE 대테러(화학, 생물, 방사선, 핵, 폭발물)	‘14년~’22년	EUR 3,485,000 (한화 약 48억 9천만원)
영국 국제개발부	인신매매	‘19년~’20년	EUR 2,032,000 (한화 약 28억 5천만원)
프랑스 외교부	지역경찰역량강화	‘18년~’19년	EUR 240,000 (한화 약 3억 4천만원)
독일 외교부	대테러, 지역 경찰 역량강화, 인신매매	‘18년~’19년	EUR 4,111,000 (한화 약 57억 7천만원)
독일 연방농식품부	범죄 네트워크	‘16년~’19년	EUR 1,000,000 (한화 14억 원)
UN	“비국가 활동단체와 이들의 잠재적 글로벌 위협 연구” 프로젝트	‘20년	USD 139,702.50 (한화 약 1억 7천만원)
UNICEF	인신매매	‘19년~’21년	EUR 1,457,000 (한화 약 20억 5천만원)
미국 보험협회(UL)	국제경찰 협력을 위한 인터폴 펀드 참여	‘20년	EUR 200,000 (한화 약 2억 8,100만원)
ONFIDO (영국신원확인업체)	국제경찰협력을 위한 인터폴 펀드 참여	‘20년	EUR 49,000 (한화 약 7천만원)

마. 시사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2018년부터 합동단속하면서 드러난 것처럼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트 개설자나 운영자마저 해외에 거주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불법수익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식협력과 비공식협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식협력인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는 법적 근거가 있고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공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수사기관 공조, 국제기구 공조, 민간기업 공조,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다양한 비공식 협력을 활용하여 공식협력의 한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그간 인터폴 및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공조채널을 갖추고 있다. 인터폴도 경찰청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적색수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터폴에 기부한 저작권침해대응 국제공조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업평가를 엄격하게 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저작권침해 대응에 대한 법제, 기술 및 수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설계

가. 조직진단과 환경분석

조직진단은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현 상태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²²¹⁾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외부환경이 급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에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진단은 필수적이다. 저작권보호과의 환경분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수립하고 현재의 직무 체계 및 조직형태가 이러한 과제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 다음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분석이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 위해 조직의 외부적인 기회 및 위협,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²²²⁾ 환경분석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 내부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환경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²²³⁾ 따라서 환경분석은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전,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직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분석단계이다.

나. SWOT 분석과 전략적 과제 도출

1) 분석방법

환경분석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SWOT 분석이다. SWOT 분석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조직 내부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조직 외부의 기회(opportunity)와

221) 김윤권, 「Post-NPM 시대의 정부조직진단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41면

222) 최신용·강제상·이병기·김선엽·임영제·박천일, 「기획론(제7판)」, 학림출판사, 2018

223) 임승빈·박종혁, “차지단체 조직진단을 위한 직무분석의 개념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5면

위협(threat)이다.²²⁴⁾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은 조직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기초로 했을 때 조직의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강점이나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다. 기회 요인은 조직의 외부환경 중에서 해당 조직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고, 위협 요인은 조직에게 불리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²²⁵⁾ 조직 내부의 강점·약점, 조직 외부의 기회·위협 요인을 모두 찾아낸 뒤에는 각 요인의 교차점에 맞는 4가지의 전략목표가 도출된다. 첫째는 강점-기회전략(SO전략)으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강점-위협전략(ST전략)으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셋째는 약점-기회전략(WO전략)으로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은 약점-위협전략(WT전략)으로 위협을 최소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한다.²²⁶⁾

현재 저작권보호과의 기회·위협 요인 및 강점·약점 파악을 위해서는 3가지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저작권보호과 및 저작권보호원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저작권 침해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수사과정에서 국제공조 담당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둘째, 특사경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명의 특사경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된 14부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저작권보호과의 내부자료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존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SWOT 분석

가) 기회요인

(1)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포털의 자정 노력과 저작권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²²⁷⁾

224) 최신용·강제상·이병기·김선엽·임영제·박천일, 「기획론(제7판)」, 학림출판사, 2018

225) 최신용·강제상·이병기·김선엽·임영제·박천일, 「기획론(제7판)」, 학림출판사, 2018

226) 최신용·강제상·이병기·김선엽·임영제·박천일, 「기획론(제7판)」, 학림출판사, 2018, 201면

227)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현,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9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불법 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3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여 국내 사이트들은 어느 정도 근절하였다.²²⁸⁾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특사경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14명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50%가 동의, 28.6%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수요 증가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0%
동의하지 않음	0%
보통	21.1%
동의	50%
매우 동의	28.6%

나) 위협요인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급증 및 신규 유형 침해의 증가

불법콘텐츠의 복제 및 배포의 플랫폼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침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온라인이 89.6%, 오프라인이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⁹⁾ 특히 웹 기반 게시판 형태의 자료실에 불법콘텐츠를 업로드 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현재는 P2P, 웹하드, 토렌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의 다양한 방법이 불법콘텐츠의 확산에 사용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불법콘텐츠의 자체 생산량은 늘어나고, 배포방식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³⁰⁾ 게다가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가 사물인터넷(IOT)기기와 홀로그램 등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22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내부자료, 「2021년 소요정원 요구서」, 2020, 8면

229)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147면

230)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29면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는 급증할 것이다. 국내 콘텐츠에 대한 침해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 예능을 복제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IPTV로 송출되는 영상물들을 불법으로 신호를 잡아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2) 침해방식의 조직화 및 지능화(위협)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이트 개발자, 운영자, 콘텐츠 유포자, 자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능화·고도화된 수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도메인을 등록하는가 하면, 프락시(Proxy) 서버나 가상사설네트워크(VPN)를 사용하여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범행을 할 때에도 본인의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 쿠키 같은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수익도 전통적인 환전상, 사이버머니, 대포통장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급받은 암호화폐 주소를 이용하고, 이중 암호화폐 간 반복거래로 거래내역을 섞어 추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²³¹⁾

(3) 산업단위 침해규모 증가

2017년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복제물의 이용은 2016년 대비 감소했으나, 불법 복제물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계속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일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불법 복제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저작물의 시장 침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다.²³²⁾ 즉, 개인이나 소규모 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침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영화, 게임, IPTV 산업 등 특정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에 가해지는 피해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특정 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콘텐츠의 생산력이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4) 기관장 및 국민들의 관심부족

231)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232)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특사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관장 및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저작권보호과가 가지고 있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모두가 기관장들이 특사경 업무에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동의 57.1%, 매우 동의 35.7%) 응답자의 과반수가 저작권보호과에서 특사경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동의 7.7%, 매우 동의 46.2%) 비록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이 과거보다 향상되기는 했으나, 저작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이들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 수사 대상자의 반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²³³⁾

[표 22] 특사경 업무에 대한 기관장 및 국민들의 관심 부족

구 분	기관장의 관심부족 (응답자 비율)	국민들의 인식부족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0%	0%
동의하지 않음	0%	0%
보통	7.1%	38.5%
동의	57.1%	7.7%
매우 동의	35.7%	46.2%

이러한 문제점은 저작권보호과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 강제력 사용에 대한 수사대상자의 반발이 조직이 가진 어려운 점이라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수사대상자의 반발이 있는 경우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으면 업무수행에 있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표 23] 특사경 법집행에 대한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에 대한 어려움 수긍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0%
동의하지 않음	14.3%
보통	42.9%
동의	35.7%
매우 동의	7.1%

233) 박경래·송재현·신현기·김도우,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2, 212면

다) 강점요인

(1) 저작권 침해 분야 수사를 위한 인적·조직적 자원 보유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저작권 침해를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저작권 침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해주는 저작권보호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한 자원이다. 저작권 권리자인 저작권보호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침해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저작권보호과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가 저작권보호과가 저작권 침해 위반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동의 64.3%, 매우 동의 21.4%) 그 외에도 저작권 위반사안에 있어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이 약 78.5%로 나타났고,(동의 57.1%, 매우 동의 21.4%) 저작권 위반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강점, 저작권 수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에도 각각 92.9%,(동의 78.6%, 매우 동의 14.3%) 85.7%(동의 64.3%, 매우 동의 21.4%)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저작권보호과의 강점

구 분	저작권 위반행위에 전문대응 (응답자 비율)	저작권위반 사안에서 경찰 전문지식 보충 (응답자 비율)	저작권위반 단속 업무 효과적 수행 (응답자 비율)	저작권위반 수사 업무 전문적 수행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0%	0%	0%	0%
동의하지 않음	0%	0%	0%	0%
보통	14.3%	21.4%	7.1%	14.3%
동의	64.3%	57.1%	78.6%	64.3%
매우 동의	21.4%	21.4%	14.3%	21.4%

(2) 저작권 예방과 관련된 혁신 기술 배포에서 주도적 역할

저작권보호과는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을 적용하는 기술 및 문서보안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등 저작권 예방을 위한 상용기술을 저작권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²³⁴⁾ 이들 모두 개인이나 소규모 콘텐츠 생산자가 사용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배포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삽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사경 상당수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보호과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범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다만, 저작권 침해기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보호기술은 상응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저작권보호과가 예방기술을 주도한다는 내부적 인식이 공고해지기 위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25] 저작권보호과의 저작권 침해 예방업무에 있어 효과적 대응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7.1%
동의하지 않음	7.1%
보통	35.7%
동의	35.7%
매우 동의	14.3%

라) 약점요인

(1)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미비로 선제예측 및 예방 시스템 구축 한계

디지털 환경의 변화속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즉, 국내·외 수사기관,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리포트 등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저작권 침해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떤 특정 산업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나가는 작업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234) 디지털 워터마킹은 콘텐츠 내에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기술이다.

별도의 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보수집과 분석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어야 유의미한 규모의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보호되는 법익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보호과 특사경들은 굵직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권리자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에서 합의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불법 사이트·헤비 업로더 등 피해가 심각한 대규모 범죄에 대한 단속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²³⁵⁾

(2) 저작권보호과의 인력운용 상 한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행정을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사경에게 저작권보호과에서 근무경력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피 보직으로 인식되어 있다. 특사경 조직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는데다가 거쳐 가는 보직으로 인식되면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권보호과를 승진되는 보직으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사경을 대상으로 전문직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문직위 역시 지속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사경 보직에 대한 기피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승진 TO를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나, 자체적인 TO를 할당하기에는 저작권보호과 조직이 작고 국제공조와 같은 수사상 한계로 굵직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력운용상 한계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사경 상당수는 고유업무와 특사경 업무 병행으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동의 64.3%)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활동을 기피한다는 데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78.6%로 확인되었다.(동의 42.9%, 매우 동의 35.7%) 특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각각 71.5%와 85.7%가 그렇다고 답을 하여 인사 부분에 대한 내부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5)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현,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21면

[표 26] 특사경 인력운용상 한계

구분	고유업무와 특사경업무 병행 업무부담 (응답자 비율)	위험 번거로운 수사활동 기피 (응답자 비율)	수사업무 및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응답자 비율)	잡은인사이드로 업무 연속성 결여 (응답자 비율)	업무범위 명확성 부족 (응답자 비율)	인사상 불이익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0%	0%	0%	0%	0%	0%
동의하지 않음	7.1%	7.1%	21.4%	0%	0%	0%
보통	28.6%	14.3%	7.1%	28.6%	57.1%	7.1%
동의	50%	42.9%	50%	28.6%	28.6%	35.7%
매우 동의	14.3%	35.7%	21.4%	42.9%	14.3%	50%

(3) 수사지원 체제 부족

저작권보호과의 경우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수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없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들이 기록관리 등의 수사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수사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통신 및 이동 비용에 들어가는 별도의 수사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다.

(4) 저작권보호과의 법적 업무범위에서의 한계

콘텐츠 유형별로 침해방식이나, 시장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콘텐츠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예방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물의 경우 크랙(Crack)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비디오 게임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는 발매 초기에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는 것이 원저작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랙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다.²³⁶⁾ 콘텐츠 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보호법익을 가지는 경우 유사한 보호법익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저작권 침해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통합적

236)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32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서 큰 피해를 보는 산업임에도 저작권보호과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있다.

(5) 국제공조수사 역량 미흡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불법 사이트의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의 SNS 계정을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에게 회원정보를 요청하거나 타국의 경찰기관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굵직한 사건해결의 핵심인 상황이다. 경찰은 (1) 형사사법공조(MLA), (2) 인터폴, (3) 타 국가의 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 (4) 타 국가의 인터넷 기업과 협조체제 구축 등과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 시스템은 다른 범죄에 주로 활용되고 있고, 저작권범죄에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²³⁷⁾ 특사경 자체적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방법이지만,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타 국가의 수사기관은 우리나라 특사경이 하는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데다가 특사경과 국제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맺으려고 할지 의문이다. 둘째, 저작권보호과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는 외국어·법제 등에 능통한 인력이 있어야 하나 그 인력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6) 디지털 포렌식 기능의 분리로 영장집행 상 한계

특사경들이 저작권 침해 현장에 입장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팀의 담당자 2~3명이 지원을 한다. 저작권보호원이 2018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저작권보호과의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 범죄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거나 임의제출 받을 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현장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9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연구 뿐 아니라 이러한 수사지원과 관련된 업무도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작권보호원 담당자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37)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22면

(7) 전문지식의 생산·배포기능 미흡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침해 수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법적, 정책적, 실무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누적된 지식을 공식적으로 생산하거나 배포하는 기능이 별도로 없어 경험을 통해 생긴 전문지식이 유용한 정보로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보호과의 전문성이 대외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전략적 과제 도출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기회·위협요인, 저작권보호과의 강점·약점을 이용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략적 과제는 ① 지식 창출 기능 강화, ②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 ③ 효율적·효과적 보호시스템 마련, ④ 기획수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설계, ⑤ 수사 의지 및 전문성을 가진 인력 운용방안 마련으로 파악하였다.

[표 27] SWOT 분석 결과

구 분	강점(Strength) - 저작권 수사와 관련된 정책적 지식·수사 전문성 확보 - 저작권 예방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에 선두	약점(Weakness) - 기획수사 확대를 위한 전문성 및 인력 부족 - 특사경 보직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전문성 향상에 한계 - 국제공조수사 역량 미흡
기회(Opportunity)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u>SO 전략(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시너지 전략):</u> 저작권 관련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기술의 누적 및 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저작권 보호과의 위상 공고화 (지식 창출 기능 강화).	<u>WO 전략(기회를 이용해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u> 조직적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점차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및 신속한 차단방안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집중(효과적·효율적 예방방안 마련). 이를 통해 직접 수사는 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침해사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

		직 운용.
<p>위협(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신규유형의 침해 증가 - 온라인 상 회피기술의 빠른 발달 - 산업단위 침해규모 증가 	<p><u>ST 전략(강점을 이용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u></p> <p>저작권 침해 수사를 통해 쌓은 저작권 보호과의 전문지식은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다른 유형의 온라인 범죄를 수사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식 및 수사기술을 타 기관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다변화되어가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공조 시스템 확대).</p>	<p><u>WT전략(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u></p> <p>특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침해범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기획수사에 선택집중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하고, 직원들이 정보수집 및 기획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 인력 운용방안 설계(전문인력 운용방안 마련).</p>

다. 기능·조직 진단 및 재설계

1) 필요성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진단하고, 전략적 과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기능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및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능을 재설계한다. 재설계된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게임·드라마·음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특히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들이 소비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콘텐츠들은 자체적으로 가지는 가치도 크지만,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면서 큰 부가가치를 낳고 있다.²³⁸⁾ 문화콘텐츠가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문화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

238) 김득훈·정해선·곽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 주기 모델 개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1(1), 2020, 101-121면

기 위해 저작권보호과에서는 특사경을 두어 대응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저작권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지만, 저작권법과 같은 특별법 위반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해당 범죄를 단속하도록 하기도 한다. 저작권 침해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침해 유형의 확장 및 범죄수법의 진화로 단속이 어려워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저작권보호과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조직으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관련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여 주로 오프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관련된 단속을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저작권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기능이 변화하는 저작권 침해 환경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보호과를 대상으로 한 기능진단은 4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관련 규정 및 직무분장 자료를 토대로 현 조직의 기능 체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및 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저작권보호과 특사경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저작권보호과의 현행 기능, 향후 수요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능, 그에 따라 어떤 분야의 기능 및 인력이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작권보호과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보호과의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바탕으로 현 조직의 기능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능을 재설계한다.

2) 기능체계 분석

저작권보호과의 기능 진단을 위해 저작권 특사경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8호)과 저작권보호과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저작권 특사경 업무편람, 사무분장표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한 현재 저작권 침해의 직무체계는 아래의 표처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기능분류는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므로,²³⁹⁾ 총무·기획·관리와 같이 조직 내 공통기능은 아래의 기능분류에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

239) 김병섭, 「05년 진단·혁신관리 매뉴얼」, 서울대학교(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142면

았다. 기능분류의 가장 간단한 접근은 현행 조직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²⁴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행 저작권보호과의 조직편제를 가지고 기능을 분류하였다. 저작권보호과에서 작성한 2021년 소요정원 요구안²⁴¹⁾에 제시된 현 업무분장 내용도 참고하였다.

[표 28] 저작권보호과의 현 기능체계 분석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기획·행정	기획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 - 저작권보호정책 수립 - 특사경 수사계획 수립 - 국회업무 - 예산·결산 - 저작권 보호 관련 국민제안 - 특사경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획수사반 지원
	수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대응(모니터링, 분석, 수사지원 등) - 국제공조수사체계 구축 - 해외사법기관 초청교류사업 -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저작권보호원 관리·감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보호원 지도 및 감독 - 예산·결산 업무 -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 특수한 유형의 OSP 고시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적 보호조치 미이행 및 특수한 유형 OSP 과태료 부과
예방 및 대응	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역사무소 기능강화 TF 운영 - 저작권 침해예방체계 구축 - 불법 복제물 침해예방 관련 업무 -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불법 복제물 수거 폐기업무 위탁기관 고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등록웹하드 실태조사 - 민원처리 -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업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저작권보호기술에 관한 업무 - 민관협의체 운영

240) 김병섭, 「05년 진단·혁신관리 매뉴얼」, 서울대학교(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143면

24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2021년 소요정원 요구안」, 2020, 17면

	침해 대응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운영(ICOP 구축 및 운영 포함)
기획수사	인지 및 기획	- 장르별 침해수사 기획
	직접 수사	- 서버 위치 확인 위한 영장 발부 및 집행 - 참고인 조사 - 피의자 특정 후 소재파악 - 피의자 신문 - 사건 송치
일반수사 (지역사무소)	신고사건 직접수사	- 고소장 접수 - 수색검증 영장집행 - 피의자 신문·범죄사실 확인 - 사건송치
	지역단위 예방 및 점검	- 민간기업 방문 SW 불법복제 예방 -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 위에서 분석한 저작권보호과의 현 기능이 가지는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한 수사와 관련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조직학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힘이 조직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여 조직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해왔다.²⁴²⁾ 조직 구성원들이 경험한 내용이 시스템을 통해 조직 내의 체계적 정보로서 전환되어야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²⁴³⁾ 이러한 조직학습은 다음의 네 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²⁴⁴⁾ 첫째는 정보획득으로 이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정보분배로 획득한 정보를 조직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는 해석공유로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정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조직 기억은 이렇게 형성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저작권 침해 사안과 같이 침해 유형이 급변하고 침해 기술이 다변화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거 수사 경험을 정보로 전환하고 이를 공유하는 조직학습의 과정은 중요하다고

242) 정광호·양기근·최연태,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설계」, 한국정책학회(경찰청 용역보고서), 2012; Brodtrick, O. (1998). Organizational learning and innovation: Tools for vitalizing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64(1): pp 83-96
 243) Williams, J. (1992). How sustainable is your competitive advantag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4: pp 29-51
 244) Sinkula, J. (1994). Market information processing and organizational learning. *Journal of Marketing* 58(1): pp 35-45; 정광호·양기근·최연태,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설계」, 한국정책학회(경찰청 용역보고서), 2012, 107-108면

판단된다. 저작권보호원에서 매년 저작권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동향의 외부적 환경 변화 위주로 기술·분석하는 보고서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적 노력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 종결 후에 사후적으로 생긴 지식을 축적·전파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직학습의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수사경험을 조직의 유용한 정보·지식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기능은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같은 시스템이 저작권보호과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둘째, 저작권 침해 및 수사동향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작성 및 배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저작권보호과의 경우 아직 저작권 보호의 주 담당부서로서 대외적 위상이 약하다는 것이 약점 중의 하나이다. 즉 많은 저작권 권리자들은 아직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의 신고에 있어서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으로는 1) 저작권보호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2)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보호과의 수사력을 신뢰하지 못해 경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²⁴⁵⁾ 앞으로 저작권보호과가 저작권 보호 업무에 있어서의 대외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고 그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기능의 두 번째 한계로는 타 기관과의 공조를 전담하는 기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환경분석을 통해 타 기관과의 정교한 공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전략과제로 도출되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작권보호과에서 2018년에 경찰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공조를 전담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속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수사에 대한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해야 한다. 세 번째 한계점은 기획수사 기능 강화라는 전략적 과제와 관련된 것이다. 과거에 지역 사무소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획수사를 최근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그 기획수사의 전반적 프로

245)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현,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세스가 지역사무소 단위에서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큰 차이가 없다. 규모 있는 기획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정보활동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규모 있는 기획수사 대상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정보활동이 저작권보호과의 기능에서 미비하다.(장르별 침해수사 기획을 담당하는 인력이 1명 존재함)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앞으로의 저작권 침해 동향을 정기적으로 예측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불법 사안을 사전적으로 인지하여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분석 기능의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피해 사실에 대한 수집, 둘째, 타 수사기관 수사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온라인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실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셋째, 외국의 저작권 침해동향 관련 자료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분석이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면, 그 온라인 플랫폼의 소유자를 추적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수사나 계좌추적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소유자나 해당 플랫폼의 서버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정한다.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용의자의 검거, 수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해당 플랫폼에 대한 섯다운 등의 조치도 추가로 취해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범죄의 경우, 국민신문고나 기관에 고소장 접수 등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건은 전체 저작권 침해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건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근절이라는 원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물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면서 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한다면,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피의자들에게 저작권 침해가 수사기관의 물망에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기 때문에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기획수사의 경우, 인지되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제공조의 강화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피의자들은 주로 해외의 도메인이나 서버를 사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해당 도메인을 운용하는 기업들로부터 피의자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해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 소재 도메인과 서버에 대한 수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과가 자체적으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제공조 협력체계 구축이 소기능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부터 운용 및 유지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 국제공조와 관련된 기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획수사 기능 강화와 관련되어 또 하나 존재하는 한계점은 디지털 포렌식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저작권보호원에서 특사경의 압수수색시에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의 집행은 수사기능인 만큼 수사권한을 가진 특사경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보호과의 업무 기능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방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저작권보호과에서는 저작권 OK 사업이나, 민간기업 방문 소프트웨어 예방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분석을 통해서 효과적·효율적 예방방안이 주요한 전략적 방향의 하나로 도출된 만큼 조금 더 정교한 예방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보호원과 협력하여 시행중인 디지털 워터마킹의 보급 등 기술을 이용한 예방방안 마련은 중요한 시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실태조사 분석

가) 조사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및 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사경들의 업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사경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사경을 제외하고 총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송부하였고, 그 중 회수된 14부 만을 설문대상으로 삼았다. 14부의 설문 결과는 적은 수로서 이를 이용해 유의미한 통계적 추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특사경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실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1일~11월 20일간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되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일부 축소 및 수정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²⁴⁶⁾ 특사경 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크게 1) 업무량, 2) 인사행정 및 조직에 대한 인식, 3) 정보수집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 4) 시설, 장비 및 강제력 사용, 5) 업무지원, 6) 업무 교육 등의 내용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경우 응답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적사항과 관련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나) 업무량 측정

(1) 업무비율

특사경들에게 할당된 업무 비율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 수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업무에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 수사활동과 관련된 업무 비율은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즉,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활동(단속 및 검거), 사건관계인 조사 및 수사보고서 작성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행정업무에 할당하는 시간은 다소 줄어들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표 29] 특사경의 현재 업무 비율 및 적정 업무 비율

구 분	현재 비율의 평균(%)	바람직한 비율의 평균 (%)
자료 수집 및 분석	18.5	22.7
수사활동 (단속 및 검거 활동)	33.8	36.9
사건관계인 조사 및 수사보고서 작성	29.6	32.3
일반 행정 업무	10.4	7.3
기타	8.5	0.8

246) 박경래·송재현·신현기·김도우,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2

(2) 조사 사건 수

특사경들이 조사 및 송치하는 사건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특사경들이 한 달 조사하는 사건 수는 6.6건 정도로 나타났다. 조사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수는 4.8건인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평균 처리하는 사건 보다 약 1.8건 정도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소속된 부서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수에 대해서 5건-10건을 송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건 수 역시도 5건-10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0] 특사경 월 평균 송치사건 수

구 분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수 (응답자 비율)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건수 (응답자 비율)
1건 미만	7.7%	8.3%
1건~2건	15.4%	8.3%
3건~5건	23.1%	25%
5건~10건	53.8%	50%
11건 이상	7.7%	8.3%

행정부서와 비교했을 때 특사경 업무의 부담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행정부서와 업무 부담 정도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오히려 업무 부담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부서에 비해 업무 부담 정도가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와 관련해서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답을 했고, 활동비로는 월 1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 특사경의 행정부서 대비 업무 부담 정도

구 분	응답자 비율
매우적음	0%
적음	0%
비슷함	57.1%

많음	42.9%
매우 많음	0%

다) 인사행정 및 조직에 대한 인식

(1) 인사행정

특사경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로 이동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의 50%가 행정업무로 이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반면, 행정업무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표 32] 행정업무로 이동 희망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희망한다	50%
희망하지 않는다	35.7%
모르겠다	14.3%

특히 이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과반수인 55.6%가 인사상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동을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표 33] 행정업무로 이동 희망 이유

구 분	응답자 비율
업무과다	0%
업무의 위험성	11.1%
인사상 불만족	55.6%
상사와의 갈등	0%
적성불일치	11.1%
기타	22.2%

(2) 지명기준

특사경 지명이 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64.3%가 지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4] 특사경 지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절대 아니다	14.3%
대부분 아니다	50%
보통 그렇다	35.7%
대부분 그렇다	0%
매우 그렇다	0%

특히 특사경의 지명이 무엇에 따라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한 순환보직 결과로 지명이 이루어진다는 답변이 71.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특사경 직에 맞는 경력직원을 선발하여 저작권보호과에 배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표 35] 특사경 지명기준

구 분	응답자 비율
업무능력	0%
단순한 순환보직	71.4%
개인의 선호	21.4%
지명자와의 친밀도	0%
기타	7.1%

(3) 보상의 적절성

특사경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행정부서와 비교했을 때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의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3%로 가장 크게 나왔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6] 특사경 보상의 적절성

구 분	보상의 적절성 여부 (응답자 비율)
절대 아니다	7.1%
거의 아니다	64.3%
보통이다	28.6%
거의 그렇다	0%
매우 그렇다	0%

(4) 업무 담당기간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8.3%이 3년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2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퇴직시까지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특사경 업무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순환보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특사경 적정 업무 담당기간

구 분	응답자 비율
6개월 미만	8.3%
1년 미만	8.3%
2년 미만	16.7%
3년 미만	58.3%
전종	8.3%

(5) 업무선호 및 직무만족

응답자들이 속한 기관에서 특사경 업무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기피한다는 응답이 64.3%, 기피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8.6%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특사경 업무가 비선호 보직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답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불만족하다거나 매우 불만족 하다는 답변도 모두 합쳐 42.9%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특사경 업무 선호도 및 만족도

구 분	특사경 업무 선호도 (응답자 비율)	구 분	특사경 업무 만족도 (응답자 비율)
매우 기피	64.3%	매우 불만족	14.3%
기피	28.6%	불만족	28.6%
보통	0%	보통	42.9%
선호	7.1%	만족	14.3%
매우 선호	0%	매우 만족	0%

특사경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급여 및 인사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1위로 나타났다. 위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인사상 불만족 요인으로 인해 행정부서로 희망한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하면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이 특사경들의 직무만족도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순위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 것은 상급관리자의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에서 특수성을 가진 업무이고 그에 따라 행정업무에 비해서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관장의 관심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응답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9] 특사경 직무만족도 향상 방법

구 분	1순위 (응답자 비율)	2순위 (응답자 비율)
배치 전 교육의 활성화	14.3%	15.4%
상급관리자(기관장)의 관심	14.3%	30.8%
급여 및 인사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64.3%	15.4%
전문적인 업무지식	7.1%	7.7%
타부서 협조강화	0%	7.7%
특사경 업무경비(수당)의 제공	0%	15.4%
근무기간의 연장 및 보장	0%	7.7%

(6) 업무홍보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하는 특사경 업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지를 묻는 질

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35.7%, 그렇다는 답변이 35.7%로 나타나서 조직 내에서 전체적으로 특사경 업무에 대해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에 대한 홍보부족이 특사경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57.2%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2.9%, 그렇다 14.3%)라고 답하고 있어 특사경의 업무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특사경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표 40] 특사경 업무 홍보 정도

구 분	홍보 부족 (응답자 비율)	홍보 부족이 업무수행에 차질 (응답자 비율)
절대 아니다	7.1%	14.3%
아니다	7.1%	7.1%
보통이다	14.3%	21.4%
그렇다	35.7%	42.9%
매우 그렇다	35.7%	14.3%

라) 정보수집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

응답자들이 특사경 업무 수행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7개의 선택지 중 순위에 따라 3개의 응답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응답자가 순위와 상관없이 3개의 답변을 선정한 만큼 분석결과에서도 순위에 구분을 두지 않고 각 응답자가 선정한 3개의 응답 전체에서 각 선택지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 민간기관(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2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19.6%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9.8%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부서원들끼리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표 41] 특사경의 업무 활용 정보

구 분	응답자 비율
상부에서 수집·배당한 정보	14.6%
외부 민원인(개인)이 제공한 정보	14.6%
외부 민간기관(기업)이 제공한 정보	24.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	19.6%
타 사건 처리 중 지득한 정보	14.6%
개인적으로 획득한 정보	9.8%
기타	2.4%
기타	3.8%

특사경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로 특사경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체제로는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한 인지수사에 한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각각 57.1%, 28.6%를 차지하여 현재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체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기사나 풍설을 정기적·의식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이 나왔지만,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21.4%, 그렇다는 답변도 14.3%로 나타나서 특사경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비교적 자발적·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원 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42.9%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 정보 공유 외에 외부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50%,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이 28.6%로 나타나서 외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을 상당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 특사경 정보체계 평가

구 분	현재 체제로 인지수사에 한계 (응답자 비율)	기사나 풍설을 정기적으로 수집, 관리 (응답자 비율)	팀원 간 범죄정보 공유 원활한지 여부 (응답자 비율)	정보공유 시스템 필요 여부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0%	0%	14.3%	0%
동의하지 않음	0%	14.3%	7.1%	7.1%
보통	14.3%	57.1%	35.7%	14.3%
동의함	57.1%	14.3%	42.9%	50%
매우 동의함	28.6%	21.4%	0%	28.6%

저작권보호과와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응답 결과 소속기관 내의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나, 타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 이하의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 및 경찰 등 타 수사 관련 기관과의 협조는 행정기관에 비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같은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은행 및 통신회사와 같은 민간기업과 업무협조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특사경 업무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정도

구 분	소속 기관 내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원활 (응답자 비율)	타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가 원활 (응답자 비율)	은행통신회사 등 민간기업(단체)과 업무협조가 원활 (응답자 비율)	검찰과의 수사협조가 원활 (응답자 비율)	경찰과의 수사협조가 원활 (응답자 비율)
매우 동의하지 않음	7.1%	7.1%	0%	0%	0%
동의하지 않음	21.4%	28.6%	7.1%	0%	14.3%
보통	71.4%	57.1%	64.3%	50%	57.1%
동의함	0%	7.1%	28.6%	42.9%	28.6%
매우 동의함	0%	0%	0%	7.1%	0%

마) 시설 장비 및 강제력 사용

(1) 조사 공간 및 장비

응답자들이 속한 부서에 관련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1.5%는 그렇다, 38.5%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한편, 별도의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사무실에서 관련자 등 조사 시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업무에 방해가 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36.4%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효과적인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에 별도 조사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속한 부서에 특사경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및 각종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으나, 상당수는 어느 정도 차량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 특사경 업무수행 위한 장비 구비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절대 아니다	7.1%
아니다	0%
보통이다	50%
그렇다	35.7%
매우 그렇다	7.1%

(2) 업무수행 중 부상 및 피단속자의 저항

지금까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2.9%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하여 저작권 침해 업무에 있어서 부상을 야기할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속 현장에서 피단속자가 법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단속자의 저항이 있는 경우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장구의 사용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6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재 특사경들이 현장에서 피단속자의 저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사장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 이를 보유하게 되면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통해서 피단속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표 45] 특사경 피단속자 저항 시 대응방안

구 분	응답자 비율
직접적인 실력행사	7.1%
경찰에 도움요청	85.7%
단속포기	0%
기타	7.1%

바) 특사경 업무지원

(1) 수사 및 법률 지원

특사경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매뉴얼(수사지침)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사매뉴얼이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5.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고 있다(매우 도움이 된다 42.9%, 도움이 된다 42.9%)라고 답하였지만 14.3%의 응답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장 크게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문항은 원래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서 답하도록 요청했으나, 일부 응답자들이 순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체크를 한 만큼 분석 결과에서도 별도로 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측정된 결과를 아래처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동료 및 팀장과 같이 조직 내부 동료들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특사경에 대한 법률자문

구 분	응답자 비율
동료	37.0%
팀장	25.9%
과장	0%
담당검사	18.5%
고문 변호사	0%

기관별 법률자문팀	11.1%
교수	0%
기타	0%

법률적 자문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가 담당 부서 내에 상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는 외부전문가의 상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을 했지만, 35.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외부 전문가의 상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업무특성, 수사경력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7] 외부 법률전문가 상주 필요성

구 분	응답자 비율
절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35.7%
보통이다	14.3%
그렇다	35.7%
매우 그렇다	14.3%

(2) 수사 전문성

특사경과 일반경찰의 수사업무분장이 실제로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명확하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57.1%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일반경찰과 업무 분장 자체가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8] 특사경과 일반경찰 업무분장 명확성

구 분	응답자 비율
매우 불명확하다	7.1%
대체로 불명확하다	35.7%
대체로 명확하다	50%
명확하다	7.1%

응답자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이 검찰·법원에서 어떠한 결정·판정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71.4%가 어느 정도 본인이 처리한 사건의 후속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의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28.6%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사한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92.9%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특사경들이 자신이 처리한 사건의 후속 처리결과를 알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9] 특사경 사건 후속 결과 인지 여부

구 분	응답자 비율
전혀 알지 못함	0%
거의 알지 못함	28.6%
거의 알고 있음	57.1%
매우 잘 알고 있음	14.3%

업무처리를 위해서 범의자에 대한 전과조회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인 71.5%의 응답자가 전과조회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사경들의 경우 피의자의 전과조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0] 특사경 범의자 전과조회 필요 유무

구 분	응답자 비율
매우 불필요하다	14.3%
대체로 불필요하다	14.3%
대체로 필요하다	42.9%
필요하다	28.6%

특사경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문항 역시 마찬가지로 응답자별로 2개씩 선정한 답을 순위의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절한 보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훈련의 강화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앞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분석을 통해 특사경

들 중 인사상 불만족으로 행정부서로 이동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특사경들의 업무 만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수단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 특사경 역량강화 위해 필요한 과제

구 분	응답자 비율
적절한 보상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	39.3%
장기근속근무의 제도화	7.1%
교육훈련의 강화	25%
인력충원	25%
기타	3.6%

사) 업무교육

(1) 조직 내·외부 교육훈련 실태

특사경들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수사 관련 교육 훈련과 관련된 질문 중 첫 번째로 담당한 수사와 관련한 지식을 몰라서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인 64.3%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특사경으로 지명되기 전 특사경 업무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1.4%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특사경 업무에 대해 사전교육 없이 특사경들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원만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위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사경 지명이 순환보직의 형태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사와 관련된 사전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순환보직으로 특사경을 지명하는 현 시스템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판단된다.

특사경 업무와 관련해서 총 교육을 받은 횟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특히 외부교육은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들이 받은 외부교육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은 대부분 법무연수원이 주관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 교육이었으며, 응답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자금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에 대한 만

족도 평가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 평균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명뿐인 만큼 두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기관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면, 응답자들은 외부기관의 교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외부기관의 교육내용이나 교수요원의 자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표 52] 특사경 외부교육 평가

구 분	법무연수원 교육 (만족도 평균)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만족도 평균)
교육내용이 알차게 짜여 있다	3.11	5
교재 및 기자재가 실무 수사교육에 적합하다	2.89	5
교육기간이 적절하다	2.78	5
교수요원의 자질이 충분하다	3.11	5
교육여건 및 환경이 만족스럽다	3	3

특히 수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 이론에 관해 학교나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71.4%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특별법) 이론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8.6%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추가로 피의자,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기법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1%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했을 때 수사의 기반이 되는 형사법과 수사 실무의 핵심이 되는 조사기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특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업무교육 실태

응답자들이 속한 기관에서 특사경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1.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저작권보호과 내부적인 교육기

회가 많이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외부기관의 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직원들이 수사교육 참가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3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부서 분위기가 수사교육 참가를 독려하는가 하는 질문에 약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14.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의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부서 분위기를 고려하여 쉽게 교육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서원 모두에게 수사교육의 기회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인 57.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력 및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순환적으로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간이 적절한가 하는 질문에는 35.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기간이 짧아서 문제로 인식하는지 길어서 문제로 인식하는 지 여부는 현 설문조사에서 별도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경찰수사연수원 및 법무연수원 등 외부기관에 2-4주의 다양한 기간으로 운영하는 교육들이 존재하는 만큼 교육이 필요한 특사경들의 개인적인 업무상황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53] 특사경 업무교육 실태

구분	부서 분위기가 수사교육 참가를 독려 (응답자 비율)	부서원 모두에게 수사교육의 기회가 적절하게 제공 (응답자 비율)	교육기간이 적절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0%	7.1%	7.1%
그렇지 않다	14.3%	0%	7.1%
보통이다	35.7%	35.7%	50%
그렇다	35.7%	42.9%	35.7%
매우 그렇다	14.3%	14.3%	0%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스스로 전문분야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은 주로 어디로부터 얻은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 응답자들이 선택한 2개의 응답에 대해 순위에 상관없이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선배 및 동료로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학습이나 경험 또는 개인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외부기관의 교육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수사경험을 공유하거나 수사관련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등의 운영이 수사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부교육을 통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직장동료들끼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학습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이러한 외부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54] 특사경 전문 지식의 출처

구 분	응답자 비율
공식적인 수사전문교육을 통해	10.7%
개인적 학습이나 연구를 통해	25%
개인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5%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선배 및 동료로부터	39.3%
기타	0%

4) 기능 재설계를 위한 내부 인식조사 결과

저작권보호과의 현행 기능, 향후 수요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능, 그에 따라 어떤 분야의 기능 및 인력이 확장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다. 저작권보호과의 현재 기능 분석결과와,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향후 강화되어야 할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저작권보호과의 7가지의 핵심기능을 도출하였고, 이 핵심기능 각각에 대해 특사경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분석 방법은 기능재설계를 위한 인식조사 파트를 참고하여²⁴⁷⁾ 어떠한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응답자 14명 모두의 응답점수의 평균을 낸 값을 이용하였다.

먼저 현재 저작권보호과의 기능 수행 정도에 대한 응답은 특사경들은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수집 및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를 기반으로 한 지식 창출 관련된 업무에 대한 기능 수행이 가장 미흡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고소 및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오프라인 수

247) 정광호·양기근·최연태,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설계」, 한국정책학회(경찰청 용역보고서), 2012, 116-119면

사와 관련된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저작권보호과 기능 수행 정도



한편, 위에서 제시한 각 기능에 대해서 향후 수요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지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현행 기능 수행정도와는 반대로 고소 및 신고사건(오프라인)에 대한 수사과 관련된 기능이 앞으로는 가장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 반면, 온라인 침해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보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기능과 국내외 공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커질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보수집 및 분석과 국내외 공조 관련 기능은 모두 온라인 수사의 인지와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향후 저작권보호과 강화 기능에 대한 인식



위의 응답과 관련해서 향후 각 항목에 대한 기능 및 인력을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고소 및 신고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능이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반면, 온라인 침해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보수집 및 분석, 디지털 포렌식 집행 기능, 국내외 공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능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1] 저작권보호과 기능 및 인력 확대 필요성 인식



5) 기능 재설계안 제시

현행 기능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기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중이지만,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추가로 확장 또는 축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기능은 아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핵심기능 모두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조직구조 개편이나 신규인력 구성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5] 기능 재설계 안

대기능	중기능
기획	- 수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 국내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분석	- 디지털 저작권 침해 동향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신고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사안을 파악하고, 침해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모있는 수사 기획)
수사	- 디지털 저작권 불법침해 기획수사 실시 - 국제공조수사 요청·접수 - 국제공조 수사 실시
기술지원	- 디지털 매체 증거 수집·분석 ^a - 네트워크 추적 기술 개발·집행 - 디지털 저작권 침해 예방기술 개발·집행

a 현재 저작권보호원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업무는 크게 수사 지원(디지털 증거분석 등)·연구(증거수집 도구 연구개발 등)로 나뉘고 이 두 업무에는 업무 성질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 집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수사지원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기능은 저작권보호과의 주요 기능으로 편입하고, 저작권보호원은 연구와 관련된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라. 조직편제의 효율성 분석

1) 통솔범위의 적절성

현 조직의 효율성 평가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 현재 저작권보호과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특성 별로 현재의 통솔 범위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둘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솔 범위와 조직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문항은 김병섭 외(2005)²⁴⁸와 정광호 외(2012)²⁴⁹에서 제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상급자가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중요한 변수이다.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상급자가 더 많은 부하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²⁵⁰ 이에 따라서 개개 부하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관리·감독을 덜 받

248) 김병섭, 「05년 진단·혁신관리 매뉴얼」, 서울대학교(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249) 정광호·양기근·최연태,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설계」, 한국정책학회(경찰청 용역보고서), 2012

250) Gulick, L. (1937).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 In L. Gulick and L. Urwick. *Papers i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chapter 1). New York: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lumbia University

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자유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커진다.²⁵¹⁾ 즉, 조직 내 통솔의 범위는 조직의 구조적 모습 뿐 아니라 조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중요한 변수이다.²⁵²⁾ 조직 내 통솔 범위는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도와 팀 간 상호의존성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²⁵³⁾ 이에 의하면 적절한 통솔범위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 ①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도 높고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이 낮고 부서 간 상호 의존성도 낮은 업무의 경우에는 보통 수준의 통솔 수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도 높고, 부서 간 업무 상호 의존성은 낮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없이 직원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인 만큼 통솔 범위가 넓은 것이 적합하다.
- ③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이 낮고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은 높은 경우에는 개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서 뿐 아니라 부서 간의 상호 업무 조정을 위해서 상급자의 역할이 더 커지는 만큼 통솔범위가 낮은 것이 적합하다.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보호과의 업무처리 명확성 정도 및 부서 간 상호의존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현재 업무처리에 있어 그 절차가 명확하다라고 답변하여 비교적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의 71.4%가 부서 간 업무의 상호의존성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상호의존성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은 높고 부서 간 업무 상호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통솔의 범위가 높은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보호과의 경우 부서장인 과장 1명 밑에 2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솔범위가 넓은 상태로 확인된다. 오히려 이는 통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의 효율성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응답을 통해 과연 현행 조직의 통솔 범위가 적절한지 추가로 판단이 필요하다.

251) Meier, K. J., and Bohte, J. (2001). Structure and discretion: Missing links in representative bureaucra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4: pp 455-470

252) Meier, K. J., and Bohte, J. (2003). Span of control and public organizations: Implementing Luther Gulick's Research Desig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1): pp 61-70

253) 김병섭, 「05년 진단·혁신관리 매뉴얼」, 서울대학교(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168면

2) 조직편제 효율성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조직편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크게 ① 현 조직 구조의 합리성, ② 부서 간 업무협조의 원활성, ③ 부서 간 업무분장의 명확성, ④ 통솔범위의 적절성 등의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 4가지 요인들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을 이용해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각 항목들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은 김병섭 외(2005)²⁵⁴의 조직구조 진단 조사 설문지의 문항을 차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하였고, 응답자들의 응답 점수의 평균을 결과로 제시했다.

[표 56] 저작권보호과 조직 효율성 평가

번호	내용	평균 응답점수 (각 항목)
조직 구조의 합리성	저작권 보호과의 조직(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은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다.	2.71
	관리자(예: 과장)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조직관리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	2.43
부서 간 업무협조 원활성	부서 간(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 간) 업무조정에 있어서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2.93
	부서 간(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 간)에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3.5
부서 간 업무분장 명확성	부서 간(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 간)에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3.64
	지나치게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어 유사한 과제를 여러 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79
	특정 부서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3.21
통솔범위의 적절성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업무지시, 보고, 결과 피드백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36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TF팀이 활성화 되어 있다.	2.64
	각 부서 내 근무자의 자유재량권이 상당히 높다.	3.36
	우리 부서 사람들은 공식적인 문서나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또한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4

254) 김병섭, 「05년 진단·혁신관리 매뉴얼」, 서울대학교(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170면

분석결과 조직 구조의 합리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들은 저작권보호과 조직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짜여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적으로 다소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조직관리 방침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서 간 업무협조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서 간 업무조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도출된 반면,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도출되었다. 부서 간 업무분장 명확성에 있어서는 다소 혼재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반-기획수사반-지역사무소 간에 업무 분장이 비교적 명확히 이뤄져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고, 기능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비슷한 과제를 여러 팀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특정 부서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서 간에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 있으나 업무량의 조정에 있어서는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솔범위의 적절성과 관련한 항목 중, 먼저 업무 처리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 내 근무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지는 자유재량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규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과 절차를 중시하되, 그 집행 과정에서는 개개 관료들의 자유재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사업무의 특성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업무지시, 보고, 결과 피드백 등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작권보호과의 통솔범위가 상급자와 하급자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정도로 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저작권보호과의 현행·향후 주요 기능과 이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의 조직구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직구조를 개편한다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부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보호과의 “과” 단위 조직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7] 저작권 보호과 조직구조 개편 방향

구 분	응답자 비율
현 조직구조가 적당하며, 단지 부서 간(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 업무분장만 조정	14.3%
저작권 보호과의 “과” 단위 조직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하위부서(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의 경우 확대	28.6%
저작권 보호과의 “과” 단위 조직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하위부서(본부행정, 기획수사반, 지역사무소)의 경우 축소가 불가피	14.3%
저작권 보호과의 “과” 단위 조직을 전체적으로 축소	7.1%
저작권 보호과의 “과” 단위 조직을 전체적으로 확대	35.7%

3) 조직 효율성 평가 시사점 정리

현 조직 편제의 효율성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기능과 그에 따른 업무량을 적절히 고려해서 현재의 기능에 따른 조직구조를 다소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저작권보호과는 업무분야에 따라 업무 분장이 비교적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있기는 하나, 현행 행정-기획수사-오프라인 수사의 3원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조직 구조 자체를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부서에 업무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및 미래에 수요가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기능, 특히 정보수집, 온라인 수사, 국내외 공조 등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직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의 연속성 및 적절 통솔범위를 고려해서 과장과 직원 사이에 중간 관리자를 두는 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통솔범위의 분석을 통해 현재 저작권보호과가 가진 업무특성, 즉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상호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특성을 바탕으로 하면 각 관리감독자가 관리해야 하는 직원의 통솔 범위는 높은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 통솔범위가 “높다”라는 것의 기준은 제시되지 못했는데, 저작권보호과의 경우 부서

장 1명이 통솔하는 직원이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는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큰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부서장 1명이 상당히 특성이 서로 다른 업무 모두를 관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된 조직관리 방침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동이 심한 경우 저작권보호과 전체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급자 1명 당 적절한 통솔범위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전체 과 업무에 큰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각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부서를 두고 그 하위부서에 중간 관리자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 유사기관 벤치마킹

1)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대응조직

국내 기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분야와 가장 유사한 사이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청의 사이버안전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조직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찰청은 2000년에 수사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하였고, 2014년에 사이버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사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의 조직편제는 아래와 같다.²⁵⁵⁾

255)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이버안전국은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이버수사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표 5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조직 및 업무분장

과 단위	계 단위	주요 업무내용
사이버안전과	사이버 안전기획계 사이버 범죄예방계 사이버 국제협력계	1. 사이버공간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 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3. 사이버범죄 예방 관련, 연구·기획·집행·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사이버수사과	사이버 수사기획계 사이버 수사지도계 사이버 테러수사1대 사이버 테러수사2대	1.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연구·기획·집행·지도·조정등 2.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3.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 4.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공조수사
디지털포렌식센터	포렌식기획계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계 디지털저장매체분석계 네트워크분석계	1. 전자적 증거분석 관련, 기획·지도·조정 2.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3.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4.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수사 기능 외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별도의 부서가 존재한다. 사이버안전과에서는 사이버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불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뒤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이버수사과에서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다크넷 추적시스템, 가상통화 추적시스템 등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이용해서 불법 정보를 수집하고 해시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수집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 분석이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국제협력을 하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고, 핵심적 자질인 외국어 능통자들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에 국제협력계가 있음에도 사이버안전국에서 별도로 국제협력계를 운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제협력 채널도 공식협력으로 형사사법공조, 비공식협력으로 수사기관 공조, 국제기구 공조, 민간기업 공조를 활용하고 있다. 수사기관 공조의 일환으로 미국 FBI·HSI, 영국 NCA, 독일 BKA 등 주요국에서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포렌식의 기능이 사이버수사와 같은 조직에 편재되어 있어 즉각적인 지원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존재하는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

계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저장매체분석계와 네트워크분석계는 사이버수사과의 직접수사나 지방청 수사조직이 수집된 증거들을 분석한다. 사이버안전국에 같은 위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 미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조직

가) 대응체계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²⁵⁶⁾ 연방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해 ① 거래 상대국과의 연대, ② 모든 법적 권한의 효율적 사용, ③ 확장된 법 집행과 협력, ④ 민간 부분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대 및 협력 등 4대 전략을 두고 있다.²⁵⁷⁾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와 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후자는 법무부(Civil Division,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와 국토안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실국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여 연방 차원의 대응, 주 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력 증진,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 강화 및 민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 내 기관 및 관련 외국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수사 등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다.

나) 대응조직 주요활동

(1) 법무부 지적재산권 태스크 포스팀(Intellectual Property Task Force)²⁵⁸⁾

256)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Feb. 2019,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4면

257)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Feb. 2019,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3면

법무부의 지적 재산권 태스크 포스팀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기관이다. 팀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은 2010년 2월 태스크 포스팀을 창설하면서, 법무부 차관을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태스크 포스팀은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를 위한 조력, 민사적 제재의 강화를 통한 혁신의 증진, 연방, 주, 지방의 법집행 기관간의 공고한 협조 구축, 외국의 주요 기관과 미국의 산업체 간의 관계강화를 포함한 국제적 제재 노력의 집중 등을 추구한다. 태스크 포스팀은 다양한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수사과 기소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데, 법무부는 (1) 공공보건과 안전, (2) 거래비밀 절도와 경제적 간첩, (3) 대규모 경제적 불법 복제 및 해적행위를 주요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거나 범죄조직단체에 의한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자금과 교육을 제공하여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백악관의 관리예산국(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설치된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민사국(Civil Division), 형사국 (Criminal Division),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Division), 사법프로그램실(Office of Justice Programs, OJP), 입법실(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공보실(Office of Public Affairs. OPA) 등의 차장급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경쟁 방지국은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연방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함은 물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관점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내기관과 관련 외국 기관에 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사국의 주요 기능은 미연방, 연방 기관, 연방 요원이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정조연자(amicus curiae)인 경우 이를 대리한다. 법무차관실(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의 협조하여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등 법원이 요청할 경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연방의 관점을 정립하고 제시하는데 선도적

258)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INTELLECTUAL PROPERTY TASK FORCE, <https://www.justice.gov-iptf>, (2020.12.10. 최종확인)

역할을 한다. 형사국 컴퓨터 범죄 및 지적 재산과(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는 컴퓨터 및 지적 재산 범죄의 방지, 수사관과 검사에 의한 전자증거의 적정한 수집의 가이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수사관과 검사에게 이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조언 및 조력제공 등 3가지의 주요 업무를 처리한다. 연방수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형사사건 수사 프로그램의 최우선과제이다. 연방수사국은 영업비밀의 침해와 비행기, 차량, 전기차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국가안보국은 테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연방수사국, 미 연방 법무장관실 등에 수사, 기소를 위해 협조하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 국가안보국은 2012년 형사국과 컴퓨터 해킹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및 모든 미 연방 검사가 참여하는 국가 보안 사이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연방검사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s)은 컴퓨터 해킹과 지적재산권 프로그램(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HIP))을 통해 각 연방 검사실에 1명 이상의 검사가 지적 재산권 관련법 집행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검사는 연방수사국,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등 관련 연방 법집행기관의 특수요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방 저작권, 상표,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의 법집행과 관련된 조언을 한다.

사법 프로그램실 (Office of Justice Programs, OJP)은 미국의 형사사법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형사사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사법 프로그램실은 법무부 컴퓨터 범죄 및 지적재산권과 및 지적재산권 태스크 포스팀(Department of Justice's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and 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Theft Enforcement Program, IPEP)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프로그램은 법무부장관의 지시 하에 2009년 시작되었는데, 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법집행, ② 국가적 훈련 및 기술적 조력 프로그램, ③ 민간 교육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 프로그램실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프로그램의 지원금 사업(The IPEP Gra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형사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기소, 예방, 훈련, 기술적 지원 등 주 및 지방정부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국가적 보조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 능력향상을 추구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정부는 주, 지방정부 및 FBI, 연방 법무장관실 등 관련 연방정부기관과 효과적인 협력과 협조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지원금 사업에 의해 주 또는 지방정부의 형법에 저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사, 분석, 기소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고, 훈련 및 기술적 보조도 제공된다. 2009년 시작된 이래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 36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1년 이래로 민간에 지적 재산권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TV, 라디오, 인쇄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국가안보부 국가 지적재산권 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²⁵⁹⁾

국가안보부 국제거래 수사과(Global Trade Investigations Division)는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미국 시민과 산업을 국제 범죄조직으로부터 보호함을 업무 목표로 한다. 최근 조직 재구성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축된 국제거래 수사과(Global Trade Investigations Division)는 상거래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취약점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층적 대응책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국가 지적재산권 조정센터

미 연방정부의 국제적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첨병으로, 국제 상거래법의 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직업, 경제, 군사, 국가 안보등 모든 방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259)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https://www.whitehouse.gov/omb/office-u-s-intellectual-property-enforcement-coordinator-ipec/>, (2020.12.18. 최종확인)

- 확장방지 수사팀(The Counter-Proliferation Investigations Unit)
불법적 조달 네트워크, 테러 그룹, 적대국가의 미국 군사 제품, 민감한 이중적 사용 기술, 대량 학살 무기, 생화학, 방사선 및 핵 물질의 불법 취득을 방지한다.
- 수출규제 조정 센터(The Export Enforcement Coordination Center)
수출 규제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가 지적재산권 조정센터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모조품 등의 미국내 거래 방지, 대외원조 및 훈련의 3대 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지적재산권 조정센터의 대외원조·훈련과(IPR Center's Outreach and Training Section)는 조인트 벤처 작전(Operation Joint Venture initiative)을 통해 공공 및 사적 영역과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 작전은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불법 수입, 모조품이나 하자있는 제품의 배포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에는 정부 법집행기관 및 의약품, 엔터테인먼트, 의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지적 재산권자, 제조자, 수입자, 세관 브로커, 물류업자 등을 참여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공공의 인식 제고시킨다. 대외원조·훈련과는 연방, 주, 지방 정부 및 외국 법집행기관에 대한 훈련도 실시한다.

미국 연방 법집행기관 및 외국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기에는 미공군 특별수사실(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상무국 지적재산실(Department of Commerce's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 해양 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식약청 형사 수사실(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연방 우주 항공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원자력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 육군 형사 수사대(U.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미 소비자 보호 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 국무부 국제 지적 재산권 집행실(U.S. Department of State's Office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국가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미 해군 형사 수사대(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미 특허 및 상표실(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 우편 검사 서비스(U.S. Postal Inspection Service) 등 연방기관 및 유로폴(EUROPOL), 런던 경시청(The City of London Police), 인터폴(INTERPOL), 멕시코 국세청(Mexican Revenue Service),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MOU를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The E-Commerce Program은 인터넷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회사(entities)를 목표로 삼은 국가안보수사국(HSI)의 새로운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인 Operation in Our Sites은 2010년 불법적인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어 매우 널리 알려져 있다. The E-Commerce initiative 는 목표물, 재산, 불법들을 운영하기 위한 금융 구성을 식별하는 장기간의 수사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온라인 시장, 대금지불 프로세서, 위탁산업자 등 제3자 회사(third-party entities)와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많은 영역에 대한 전자 상거래의 광범위성을 인식하여 HSI는 2018년 2월 14일 단일 기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수사국(HSI) 전자 상거래 전략은 불법 조직을 식별 및 해체하고 오픈 넷 웹 사이트를 비롯하여 다크 웹, 지점 간 판매 플랫폼, 소셜 미디어 및 다양한 결제 프로세서 및 배송 방법 등 다양한 전자 상거래 아웃렛을 활용하는 모든 방식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기소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에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산업과 법 집행 파트너 간의 협력을 활용하는 단일 기관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다) 소결

미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특정 전담부서가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부서의 협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있다.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관리 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산하 지적 재산권 집행 조정관(IPEC) 제도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태스크 포스팀이다. IPEC는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의 효과적 집행과 부서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2008년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의 통과에 따

라 처음 시행되었다. 3년에 한 번씩 관련 부서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부의 노력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²⁶⁰⁾ 법무부 지적재산권 태스크 포스팀(Intellectual Property Task Force)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연방법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연방 법집행기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법무부 내의 다양한 조직을 통합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방기관 및 국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그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시사점

유사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이버범죄 수사의 경우 기획을 통한 수사대상 발굴이 중요한 방법이고, 기획수사에서 정보의 수집·분석은 중요하다. 2014년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 재편성 시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고, 사이버 안전기획계에서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둘째,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국제협력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스템 및 대상들과 협조체계를 맺고,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의 수사기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여러 기관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협력약정(MOU)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지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모두 상대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설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범죄 수사에 경력을 가진 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인력 간의 교류를

260)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현,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 81면

활성화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바. 전담조직 설계 방안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 “과” 단위 부서 신설

먼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수사반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만 전담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정보 수집·분석, 국제협력, 디지털포렌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집약된 조직이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나갈 의지가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우수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타 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담당조직과 유사해야 상호간에 보다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침해예방 등의 업무는 현재의 저작권보호과에서 종전처럼 수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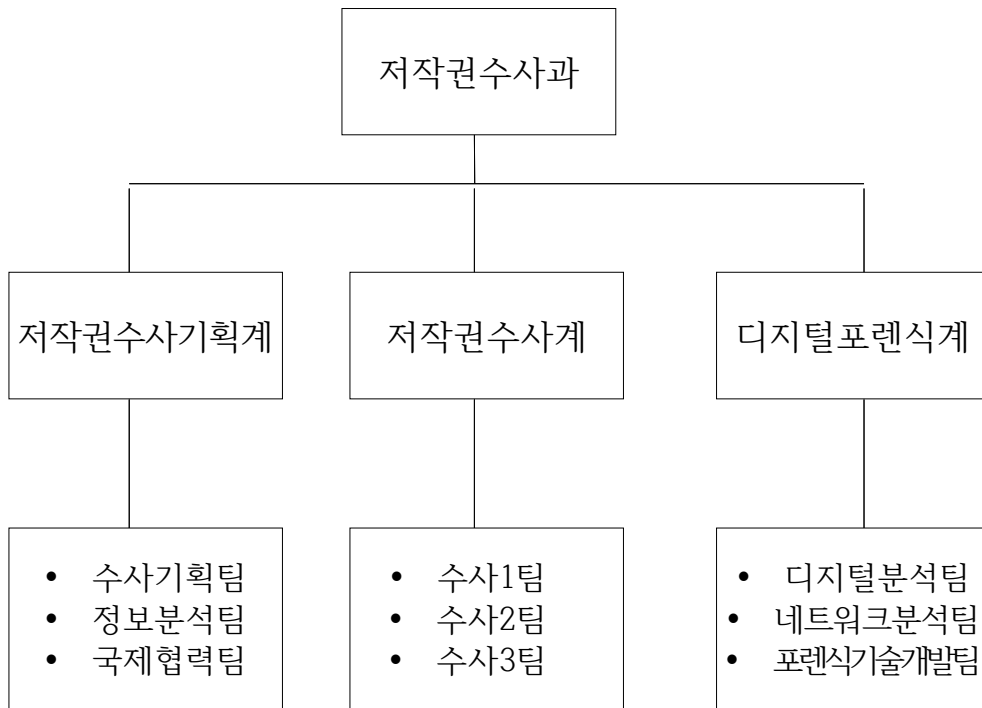
2) 분산되어 있는 기능의 통합 및 합리적 직무 배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주요 기능들이 집약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서 핵심적 기능으로 지정된 국제협력,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능이 현재는 기획반, 저작권보호원과 같은 다른 하위 조직에 분산되어 있어 응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이면 세부 기능들을 모두 신설되는 전담조직으로 합쳐 업무 간 연계성을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3) 조직 재설계 안

위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설계한 조직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저작권수사 전담조직(안)



위와 같이 신설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수사과 내 각 계의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9]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 정리

조 직		주요업무
저작권 수사기획계	수사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인사, 법제, 예산, 장비 관리 교육, 홍보, 기타 서무 업무
	정보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분석·배포 수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조수사 요청·접수·지원 주요국·국제기구와 협력 활동
저작권수사계	수사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접수 및 직접 수사(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수사(인지사건)
	수사3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수사(인지사건)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모바일 증거분석 압수수색 현장 지원
	네트워크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통신 추적분석 압수수색 현장 지원
	포렌식기술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포렌식기술개발 미래 첨단 기술 연구

7.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방안

가. 특사경 위상 제고 및 직무범위 확대

1)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인한 위상제고 및 후속조치 이행

특사경은 2021.1.1.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갖게 되어 과거에 비해 수사 주체자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물론 특사경은 종전과 같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245조의10 제2항) 하지만 특사경에게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245조의10 제3항) 검사의 지휘 없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권한과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2021.1.1.부터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제4조) 즉,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법률상 ②와 ③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있지만, 관련 사건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특사경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다. 법률 개정으로 특사경과 검사와의 업무처리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특사경은 내사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제16조) 특사경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히 보고해야 할 항목으로 17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저작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개시를 보고하거나 지휘 받을 의무는 없다.(제23조, 제33조) 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휘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고해야 한다.(제23조)

이처럼 특사경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진행권을 갖게 되고,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어 수사 주체자로서 지위가 향상되었다.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동적 의사결정에서 특사경의 판단에 따른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특사경에 대한 인력증원, 전문성 제고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수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요구된다. 특사경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확인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특사경 직무범위를 게임산업법위반 사건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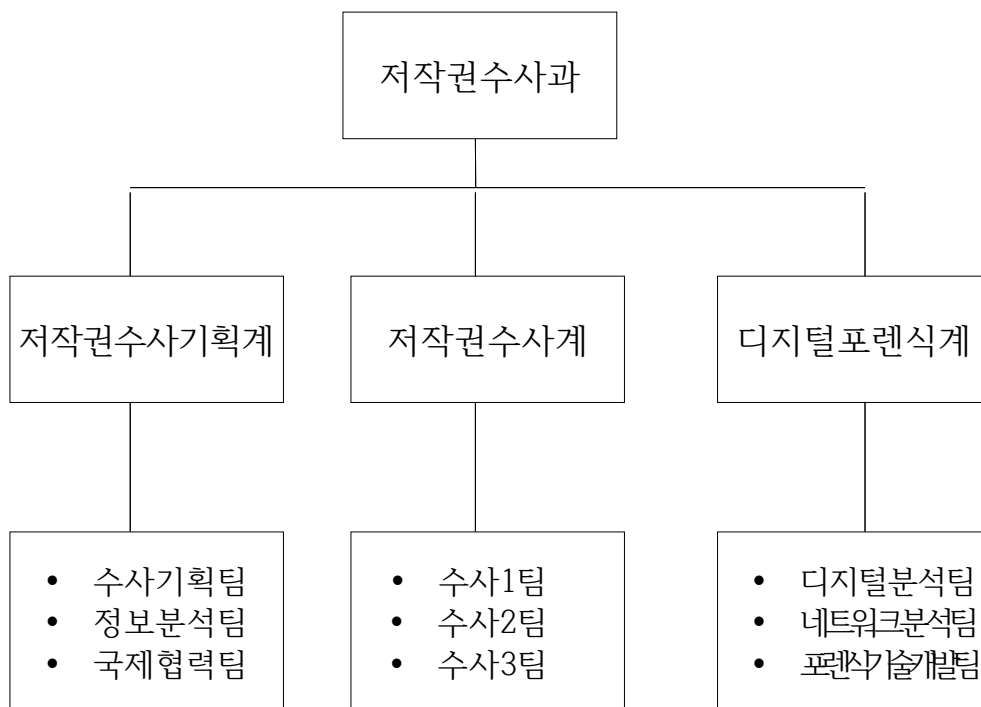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현재 저작권법에서 게임산업법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수사인력 증원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범위만 확대될 경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도 저작권법과 관련성이 크고 피해가 심각한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게임물 제작에 관한 범죄로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불법게임장에 관한 범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특사경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인식하게 되는 성폭력처벌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당범죄는 대부분 일반 형사 범죄이고 특사경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일반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저작권수사 전담조직 신설과 운영

1) 전담 수사조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저작권보호과에서 분리하여 과장 소속에 3개의 계로 구성된 가칭 ‘저작권수사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중앙부처에 ‘수사과’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조사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같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수사과 소속의 저작권수사기획계는 수사기획팀, 정보분석팀, 국제협력팀으로 편제하고, 저작권수사계는 수사1팀, 수사2팀, 수사3팀으로 구성하여 팀 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계는 디지털분석팀, 네트워크분석팀, 포렌식기술개발팀으로 편제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수사과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을 비롯한 기타업무는 저작권보호과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수사 전담조직(안)과 사무분장(안)은 아래와 같다.

[그림 13] 저작권수사 전담조직(안)



[표 60] 저작권수사과 사무분장(안)

조 직		주요 업무
저작권 수사기획계	수사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인사, 법제, 예산, 장비 관리 교육, 홍보, 기타 서무 업무
	정보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분석·배포 수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조수사 요청·접수·지원 주요국·국제기구와 협력활동
저작권수사계	수사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접수 및 직접 수사(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수사(인지사건)
	수사3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수사(인지사건)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모바일 증거분석 압수수색 현장 지원
	네트워크분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통신 추적분석 압수수색 현장 지원
	포렌식기술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포렌식기술개발 미래 첨단 기술 연구

2)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역할 분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사경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한 인지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은 지역 거점으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도서·CD 불법복제 등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단속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5개 지역사무소 인력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사무소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민생경제에서 상표권침해 등 6개, 보건건강에서 의료법 등 7개, 환경보전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 등 5개를 포함하여 총 18개 범죄에 대하여 특사경을 운영하고,²⁶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단속 등 14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상표권 등), 부동산 등 6개를 포함하여 총 20개 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²⁶²⁾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법률상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사경을 운영할

26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49683>, (2020.12.20. 최종확인)

262)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gg_special_cop/gg_special_cop-intro-area, (2020.12.20. 최종확인)

수 있지만 홈페이지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상표법은 단속직무로 언급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단속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특사경 장기근속 체계 마련

특사경 근무에 대한 인사·교육·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우수인력이 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다가 행정부서로 이동하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수사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사경에게 별도의 승진 T·O 할당, 전문직위 수당 확대, 수사활동비 증액, 교육훈련 기회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사경 근무 후 보직배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대학원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활동비 증액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 그리고 다른 특사경과 비교할 때 수당이 작다. 최소한 다른 특사경과 동일하게 현행 15만원에서 20-25만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다.

[표 61] 특사경 수사활동비 지급현황 비교

(단위: 만원)

구분	문체부	경찰청	대검찰청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금감원
1인당 수사활동비	15	25-30	27 (병급)	25	20	19~20	20	20

4) 수사·포렌식 전문가 특별채용 제도 도입

순환보직 형태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사·법률·포렌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다. 순환보직 형태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 수사·법률·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경쟁채용을 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일정기간(최소 5년) 특사경으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사경으로 5년간 의무복무하면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부

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 경찰청에서도 사이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요원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하여 임용과 동시에 수사경과를 부여해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제도화하여 수사와 포렌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다.

5) 경찰청 수사관(분석관) 파견 발령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나 디지털분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을 파견받아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파견관을 통해서 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동수사와 국제공조수사, ②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사건이첩 등 업무협약, ③ 인터폴 프로젝트 관리 및 공동수사, ④ 추적기법과 분석기법 기술교류 등의 업무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나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경정 정도의 직급이 적정해 보인다.

다. 수사·포렌식 교육훈련 체계 확립

1) 수사·포렌식 교육훈련 전담인력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에서 수사와 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분석관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전담인력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설령 특사경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정책이다. 경찰청(경찰수사연수원), 법무부(법무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도 인력, 시기, 교육내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간 업체는 ICT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수사와 포렌식에 대한 실전경험이 부족하여 당장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을 전담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찰청도 초기에는 사이버수사와 디지털포렌식에 대해 민간업체에 위탁교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교육내용과 성과달성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수사관·분석관 중에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경찰수사연수원에 교수를 배치하여 자체적인 교육훈련 역량을 확보하였다.

2) 수사·포렌식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 ‘온라인’, ‘저작권’에 특화된 추적 수사와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경찰청(경찰수사연수원)과 법무부(법무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운영하여왔지만, 양기관에서는 사이버수사,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과정만 존재하지, 저작권범죄 수사에 대한 특화된 과정은 없다. 2019년에 제작한 교육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자체적인 교육훈련과정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법,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기술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사소송, 추적기법, 조사기법, 자금추적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할 때 인터폴의 교육훈련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폴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저작권·상표권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제 지적재산권 범죄 수사관양성 대학」(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IIPCIC)라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²⁶³⁾ 인터폴(Illicit Goods and Global Health Programme 부서)과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기관이 협력하여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만다린어 등으로 제공하고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래와 같다.²⁶⁴⁾

[표 62] IIPCIC 교육과정(입문-중급-고급)

과정	모듈	제 목	내용
초급	1	지적재산 범죄	지적재산 범죄 법집행관이 지적재산 범죄의 개념과 지적재산 및 지적재산 범죄 구성요소 및 주요 용어
	2	지식재산 범죄 수사	지적재산 범죄 조사기법 및 기소 보고서 등을 내용으로 지적재산 범죄 조사
	3	지적재산범죄 경제적 영향	지적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결과 및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쳐 고용에 끼치는 효과
	4	지적재산 범죄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관계	지적재산 범죄 조사에서 협력이 발휘하는 이점
	5	조직적 범죄 자금 및 IP 범죄	지적재산 범죄 활동의 광범위한 영향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조직 범죄 유형
	6	인터폴 & 인터폴의 지적재산권 범죄 프로그램	인터폴 개요 및 지적재산 범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

263) 인터폴 내부자료, 「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2020

264) 인터폴 내부자료, 「International IP Crime Investigators College」, 2020

	7	지식재산 범죄가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결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지식재산 범죄가 소비자, 단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 범죄 사건과 압수수색 사례를 통한 부정적 영향
중급	8	21세기 인터넷 불법 복제 및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	인터넷의 다양한 측면, 작동 방식, 범죄 유형 및 범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9	통합된 지식재산 범죄 법집행 전략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접근방식, 통합 전략 내에서 요구되는 기술
	10	민간 부문과 협력	지식재산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법집행관이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가져다주는 장점
	11	조직화된 지식재산범죄를 방해·해체·방지 방법	지식재산 범죄가 어떻게 조직범죄에 의해 관리되는지, 범죄를 근절시킬 방법
	12	영업 비밀 보호	상업적 영업비밀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제에서 갖는 의미 및 보호, 사례 연구
	13	지식재산 범죄 대응 전담 법집행기관 능력 확립	IP범죄에 대처하는 기관의 구조적 프레임워크와 핵심 책임사항, 전담수사기관 사례 및 업무비교
	14	조사 및 증거 수집	위조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준비 및 계획 설계
고급	1	인터넷의 구조	인터넷의 구조, 관리 방안
	2	온라인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포럼,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유형 및 이용방법 등
	3	용의자와 연결 방법	범죄자들의 인터넷 접근, 온라인 플랫폼 악용 및 위조·불법복제 상품 유통에 사용되는 도구
	4	수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범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남기는 데이터
	5	위조 상품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위조와 불법복제 구분 방법, 다양한 위조 제품과 위조활동이 실정법 위반 방법
	6	불법 복제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배포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와 IP 범죄에 대한 온라인 불법복제
	7	온라인 침해 행위 수사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정보수집을 포함한 범죄 행위 기소를 위한 절차와 방법
	8	디지털 범죄 현장 관리	디지털 범죄 현장 관리, 불법상품 밀매 수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3) 저작권 포렌식 맞춤형 석사과정 교육기회 부여

특사경 및 저작권보호원의 담당자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에서 고려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특사경 및 저작권보호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현장과 이론 간의 융합을 촉진

진시키며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학계, 수사기관, 산업계, 저작권자 등과 네트워킹을 확장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것도 분명하다. 부처 내에서 특혜라는 비난이 제기될지 모르겠으나 경찰청도 고려대학교에 디지털포렌식학과를 신설하여 매년 경찰관 약 20명씩을, 대검찰청도 서울대학교에 수리정보과학과를 신설하여 매년 검사·수사관 약 15명씩을 위탁교육하고 있다. 나아가 특사경은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언제든지 행정부서로 이동하고 싶어 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 강화

1) 해외 대규모 사이트 중점단속

특사경은 해외에 개설되어 있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간 특사경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저작권에 대한 헤비업로더와 불법 사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았다.²⁶⁵⁾ 특사경의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팀간 경쟁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청과 협력하여 해외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리스트를 목록화하고, 각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에 특사경 자체수사 또는 경찰청과 합동수사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 정례화

경찰청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다. 특별수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또는 관련 지방청) 그리고 저작권보호원이

265) 권양섭·김기범·황성원·김형성·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보고서, 2018, 230면

함께 참여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파견을 나오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에 파견을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청과는 특별단속 방안에 대해서, 지방경찰청과는 직접수사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때 저작권보호원이 불법 사이트 채증, 디지털 포렌식 등을 담당하여 특사경과 지방경찰청 수사팀을 지원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의 저작권법 해석에 대한 전문성,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총량적 단속인력의 증가, 경찰청을 통한 국제협력 채널 확보에 이어 저작권법 위반 외의 범죄에 대한 단속 가능으로 법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경우 범죄조직에게 수사의지를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합동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양 기관 간 역할과 업무, 증거전달, 정보공유, 예산집행, 포상, 보도자료 작성·배포, 인력파견, 수사비 집행, 사무공간 제공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 및 범죄수익 몰수 강화

대규모 불법저작물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또는 범죄집단)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압수하거나 기소전 몰수보전(또는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종국적으로 재산을 박탈하여야 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 국세청에서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해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²⁶⁶⁾ 저작권 불법 사이트와 도박사이트가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수취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경찰청과 협력사항

266) 국세청 전심번호: 조심-2016-중-3145[심판], 2017.03.3.자

경찰청과 수배자 검거 및 호송에 관한 사항, 용의자 검거시 유치장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특사경이 전과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전과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철도경찰대 등 몇몇 조직은 전과시스템에서 직접 관련자료를 조회하고 있으나 저작권 특사경을 비롯하여 특허청 특사경도 공문으로 경찰관서에 전과조회를 의뢰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전국에서 범죄전과조회시스템을 조회하고 있고, 전자영장과 전자법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서로 전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1) 인터폴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가) 경찰청·저작권협단체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터폴에 제공할 특별기여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국익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저작권 협·단체 및 관련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인터폴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였거나 수사작전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참여시켜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저작권 협·단체는 저작권리자로부터 해외 피해사례를 보고받아 인터폴 수사팀에 전달하여 해당국가에서 수사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작권 협·단체가 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를 인터폴에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나아가 저작권보호원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에 전·현직 경찰·검찰·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해외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 경력자를 사업기간 동안 채용하여 관련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 해외 저작권 침해 단속성과 극대화를 위한 착안사항

인터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

항이 있다.²⁶⁷⁾ 첫째, 프로젝트의 목표를 아시아지역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단속으로 한정해야 한다. 인터폴의 지식재산 담당 유닛은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기여금이 포괄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컨셉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EU 등 주요 공여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컨셉 단계부터 EU 회원국 국민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주된 단속대상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확정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조건화하여 관철시키고 있다. 요구사항이 수용되는 정도에 따라서 특별기여금의 규모를 조절할 수도 있다. 다만, 프로젝트 제안서가 인터폴 관리자회의(SMB)를 통과하면 운영 방향에 대한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컨셉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성과와 예산 집행을 연계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을 연장하도록 하여 긴장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 제안서에 시기별 활동에 대한 공여국 보고와 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와 평가에 따라 매년 프로젝트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들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전담팀은 싱가포르 소재 인터폴 제2청사에 주재하여야 한다. 현재 지식재산 담당 유닛은 OEC (Organized and Emerging Crime) Directorate 소속 IP(Intellectual Property) & ENS (Environmental Security) Unit에서 담당하고 있고,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에 있다. 지식재산 담당 유닛은 유로폴(Europol) 출신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상표위조단속을 다루는 오픈(OPSON) 프로젝트²⁶⁸⁾를 주로 수행하면서 추가로 2-3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유로폴(Europol)에서 그간 명품 등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수사를 많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문가 풀도 다양하고 수사 경험도 풍부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여하는 특별기여금은 아시아에서 제조·소비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으로 프로젝트팀이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폴 제2청사에

267) 인터폴 특별기여금 운영에 대한 착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2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인터폴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우리나라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는 인터폴에서 2019년까지 총 5년간 인터폴 작전관(Counter Terrorism and Enabled Crime) 등으로 근무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온라인도박·아동성착취물의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 현재 인터폴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역량강화를 위해 공여한 Glacy+(Global Action on Cybercrime Extended)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하고 있는 경찰관, 인터폴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발도상국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참여하였다.

268) 오픈(OPSON)은 유로폴에서 2012년부터 불량식품 및 식품사기 단속에서 출발해 상표위조단속 까지 확대된 프로젝트로 매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달 간 동시에 단속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주재해야 한다. 아시아지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에 용이하고, 교육훈련, 공조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 효율적이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에는 사이버범죄와 디지털포렌식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경찰이 있어 이들과 직·간접적인 협업이 가능하여 보다 밀도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²⁶⁹⁾

다섯째, 우리나라 전문가가 프로젝트팀에 참여해야 한다. 인터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특별기부금 공여국의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인터폴의 채용지침(Staff Manual)²⁷⁰⁾ 2.1.(채용)에도 원칙적으로 채용직위를 전체 회원국에게 공지하고,(제5항) 국가 간에 선발인원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제6항) 나아가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고,(제7항) 마지막으로 지원자 간에 차별을 두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항) 따라서 공식적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가 프로젝트 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럽의 공여국들은 협력약정(MOU)에 컨셉과 프로젝트 주요활동을 기재하고 자국민의 고용을 조건화하여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는 간접적으로 자국민의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경찰의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의 고용을 협력약정(MOU)에 명시하고 적어도 협력약정(MOU)를 체결할 때 요청한 후에 컨셉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특별기부금 규모는 매년 1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인터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팀장(Coordinator) 1명을 채용하는데 약 2억 원, 여기에 의무적으로 행정지원 요원(Administrative staff) 1명이 배치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도 약 1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3억 원이 집행된다. 나아가 인터폴은 특별기부금 총액의 33%를 행정비용으로 공제하기도 한다.²⁷¹⁾ 따라서 특별기부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 인건비가 집행되면

269) 현재 싱가포르에 소재한 인터폴 제2청사에는 경찰파견자 2명 (Cyber Crime Directorate), 고용휴직자 1명 (Cyber Crime Directorate),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IP Unit과 같은 소속으로 ENS 작전관으로 근무 예정인 고용휴직자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270) INTERPOL Staff Manual [II.C·SREG·GA·1987(2006)] [II.C·SRUL·EC·1988(2019)], p.17 https://www.interpol.int/content/download/7167/file/13%20E%20STAFF%20MANUAL%202815Y2158%29%2013_11_19.pdf, (2020.12.09. 최종확인)

271) 경찰청에서 2020년에 특별기부금을 공여한 경우 행정비용을 33%에서 낮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비용을 최대 10%대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 수사작전과 교육훈련 등 사업비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일곱째, 특별기여금이 인터폴에 공여되는 것을 기회로 인터폴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회의, 교육훈련, 수사작전 등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법집행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공조기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폴 특별기여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격과 위상이 크게 달라졌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인터폴 특별기여금도 경찰청에서 올해 처음 15억 원을 공여하는 것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기여금 공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실질적인 수사를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담당자를 비롯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인터폴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국익을 위한 실질적 국제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2) 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아시아지역의 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확보는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도 확보할 수 있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한류 콘텐츠의 강점을 부각하여 프로젝트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권범죄 단속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저작권 협·단체, 경찰관, 검사, 판사 등 약 20명 규모를 선정하여 초청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 대학에 저작권 포렌식 분야에 대한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역량강화사업은 국장급, 중간관리자급, 실무자급으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보호 시스템 구축,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년이 아닌 3년 과정으로 1년차 국장급, 2년차 중간관리자급, 3년차 실무자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면 중장기적으로 협력기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다양한 국제협력활동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경찰이 경찰청 등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저작권보호원이나 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지역의 다수 경찰관들이 경찰청과 교류협력이나 경찰대학의 KOICA 사업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을 초청하여 추적·포렌식 기법의 공유와 저작권 침해 단속 협조를 요청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이상에서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서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콘텐츠 중에서도 음악, 방송, 영화에 대한 침해가 컸다. 해외에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하거나 TV패드를 이용하여 방송을 무단 청취하는가 하면 다크웹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법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행정법적, 민사법적 그리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현행 법률을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개별법적 법률상 쟁점 외에도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민사적 대응보다는 형사법적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실태와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특별사법경찰의 선발 및 교육, 직무범위 및 단속 활동을 분석하였다. 저작권 침해 수사 및 포렌식기술에 관한 현황과 불법 저작물에 대한 대응 및 삭제·차단 등 조치 현황도 검토하였고, 저작권 피해 관련 지원 체계 및 주요 해외 소송 지원 사례를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과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대응 활동을 정리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공조 절차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비공식 협력방식으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직을 설계하였다. 현재의 조직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조직을 진단하고, 저작권 침해 전담조직(안)과 사무분장(안)을 도출하였다. 저작권보호과의 특사경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여 저작권수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수사과 소속으로 저작권수사기획계, 저작권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로 편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7장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특사경의 위상제고와 직무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특사경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이 부여되어

수사주체자로서 지위가 향상된 만큼 보다 주도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사경과 검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법률 개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경 등 후속조치도 준비해야 한다. 특사경의 직무는 저작권법과 유사한 게임산업법의 일부범죄까지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저작권수사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경찰청과 협업을 위해 수사관·분석관을 파견받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특사경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 수사에 집중하고, 지역 거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사경에 대한 인사·교육·수당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순환보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특사경을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사·포렌식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사·포렌식 교육훈련에 대한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고,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특사경과 저작권보호원 담당자에게 저작권 포렌식 맞춤형 석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도 제안하였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간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온라인 저작권 범죄 관련 특별수사단을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박탈하여야 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하여 해외 피의자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수배자 검거, 유치장 활용 및 전과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인터폴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경찰청과 저작권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작권 협·단체가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를 발굴하여 직접 인터폴에 수사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터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8가지 착안사항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국내 방문하는 아시아지역 법집행

기관들과도 다양한 교류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해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여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내

○ 저서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교육 교재 개발」

김일수 · 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6.

김정완, 「저작권법 개설(제5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1990.11

이규홍 · 김기영 · 장현진 · 김병국, 「저작권과 침해」, 육법사, 2016

이주원,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20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1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최신용 · 강제상 · 이병기 · 김선엽 · 임영제 · 박천일, 「기획론(제7판)」, 학림출판사, 2018

○ 논문

권미혜, “음악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한 고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21호, 2018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5호, 2009

김기범,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의 범죄실태와 형사정책 개선방안”, 법학연구 19(2), 2019

김득훈 · 정해선 · 광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 주기 모델 개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1(1), 2020

김종원,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대응 기술 현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1(2), 2013

김주호 · 강소연 · 양준성, “DRAM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비균등 오류 정정

- 코드”. 정보과학회지, 36(10), 2018
- 박경자,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15
- 박정흠, “NIST의 디지털 포렌식 도구 검증 체계 소개”, 정보보호학회지 26(5), 2016
- 서영호 · 유원영 · 김영모 · 김원겸,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기술적 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1), 2015
- 서은비 · 김지홍 · 강태운 · 유창석 · 김휘강, “불법사설서버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27(4), 2017
- 소대영 · 이병수 · 이상순,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기술 분류체계 및 요소기술수준 평가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 2015
- 신상철 · 임영호,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56권, 2016
- 연기영 · 손미선,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1), 2016
- 이규대, “토렌트에서의 콘텐츠 저작권보호 방안”,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10(1), 2014
- 이승호 · 신수용, “디지털 워터마킹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극부호의 효율성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5(6), 2020
- 이재은 · 서영호 · 김동욱, “워터마크 및 해상도 적응적인 영상 워터마킹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방송공학회논문지 25(2), 2020
- 이재호 · 김희경, “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6, 2019
- 이충훈,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2), 2017
- 임승빈 · 박종혁, “자치단체 조직진단을 위한 직무분석의 개념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 임이랑 · 정현지 · 이상진, “웹 브라우저 캐시 재조립을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상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0(4), 2020
- 장윤진 · 이도현 · 이채민 · 최혜정 · 손승우, “해외 서버 기반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모델 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14(2), 2020
- 정동기,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1996
- 전세준, “IT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 웹하드 및 TV PAD 침해 단속 실무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조선호, “범죄수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 국외도피 범죄자 조사 및 송환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2010
- 진병동, “국제범죄에 대한 인터폴과 유로폴의 대응 및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경찰학회, 유럽경찰연구 2(1), 2018
- 채명기,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 정보과학회지 30(10), 2012
- 하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 2018

○ 보고서

- Google Korea, 「구글이 저작권 침해에 맞서는 방법」, 2018.11.
- 강수진,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설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10
- 경찰청, 「2016 경찰백서」, 2016
- 경찰청,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1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5-1호), 2020
- 권양섭 · 김기범 · 황성원 · 김형성 · 김승헌, 「효율적인 저작권 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방안」,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보고서, 2018

- 권양섭 등,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교육 교재 개발」, 한국능률협회(저작권보호원 연구용역 과제), 2019
- 김기범 · 조성용 · Emilio C · VLANO, 「사이버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7-01, 2015
- 김대근 · 임석순 · 강상욱 · 김기범, 「신종 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5-01, 2016
- 김병섭, 「05년 진단 · 혁신관리 매뉴얼」, 서울대학교(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 김윤권, 「Post-NPM 시대의 정부조직진단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김현미, 「저작권단체의 불법웹하드 대응 현황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작권기술 동향 Biweekly, 2010
- 닐슨코리아, 「제52차 인터넷 이용자 모집단 추정조사 보고서」, 2019
- 대한민국 정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 연차보고서」, 2019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2021년 소요정원 요구서」, 2020
- 박경래 · 승재현 · 신현기 · 김도우,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2
- 박성호,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책연구), 2018
- 박희영, 「[독일] 영화 스트리밍 포털 운영자, 영리 목적의 저작권침해 범죄단체 조직죄로 유죄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저작권 동향 제7호, 2012
- 신지연 · 박재원, 「WIPO 중단기정책 및 예산·사업운영에 대한 분석연구」, 특허청 연구보고서, 2011
- 유건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 전파통신진흥원(전문가 리포트 31), 2020

- 윤성철, 「인터폴 적색수배서(Red Notice)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보고서, 2007
- 이동희, 「국제 사이버범죄 아카데미 모델 개발」, 경찰청 연구용역 과제, 2010
- 전이슬, 「급변하는 국내 OTT 시장 동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간SW중심사회, 2020
- 정광호 · 양기근 · 최연태,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설계」, 한국정책학회(경찰청 용역보고서), 201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융합활성화정책연구 15-11, 2015
- 정현진, 「위메이드, 중국에서 서브 라이선스 침해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국제협력팀, 해외센터뉴스 제2020-43호
- 탁희성 · 이원상, 「디지털포렌식 통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분석 연구 보고서,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 -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 2018
- 특허청, 「2018 연구용역보고서」, 2018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미디어 이슈&트렌트 리포트_국내외 음원 시장의 변화와 방향」, 2019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8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8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2017년 기준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2018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9
-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0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제안요청서」, 2018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장르포2: 2019 WIPO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 월간 저작권문화, 제297권, 2019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중국 콘텐츠 산업 동향」, 2015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내 웹툰산업의 현황 및 시장발전을 위한 제언」,
2017

○ 판례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0 고단 503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고단854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34942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3.18. 선고 2014카합50121 판결

□ 국외

○ 저서

- SUSAN W. BRENNER, 「Cybercrime - CRIMINAL THREATS FROM CYBERSPACE」, PRAEGER, 2010

○ 보고서

- Europol, 「MULTI-MILLION EURO CRYPTOCURRENCY LAUNDERING SERVICE BESTMIXER.IO TAKEN DOWN」, 2019
- UNODC,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Draft)」, 2013
-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2012
-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Feb. 2019

○ 논문

- Gulick, L. (1937). Notes on the theory of organization. In L. Gulick and L. Urwick. Papers i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chapter 1). New York: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lumbia University
- Meier, K. J., and Bohte, J. (2001). Structure and discretion: Missing links in representative bureaucra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4: pp 455-470

○ 판례

- AG Leipzig, Urteil vom 21.12.2011 - 200 Ls 390 Js 184·11
- (2018)京民辖终119号
- (2018)京民辖终121号
- 见 (2009) 民申字第1065 号民事裁定书
- 见 (2014) 沪一中民五 (知) 初字第22号民事判决书
- 见 (2015) 苏中知民初字第201号民事判决书
- 见 (2017) 沪0115民初77945号民事判决书